# V.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1. 관 학
- 2. 사 학
- 3. 과거제의 정비와 운영
- 4. 과거의 종류

## V.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1. 관 학

조선시대의 교육은 크게 관학과 사학으로 나눌 수 있다. 관학 교육기관으로서 成均館·四部學堂(四學)·宗學·雜學·鄉校 등이 있었으며, 사학 교육기관으로는 書齋·書堂·家塾 등이 있었다.

#### 1) 성균관

#### (1) 명칭과 시설

성균관은 문과시험을 준비하는 조선왕조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다. 성균관은 관학의 최고학부였기 때문에 유생들이 학습·기숙하는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었다. 이 점은 사학·종학·향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성균관의 명칭은 國學·太學·泮宮·賢關·芹官이라고도 하였다.「成均」은 禮樂을 통하여 국가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1)「國學」은 '國의 學'이라는 뜻이요,2)「太學」은 「大學」과 같은 뜻으로 천자의 학을 의미하였으니3)「국학」이 제후의 학이라면「태학」은 천자의 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혼동하여 쓰이기도 하였다. 뒤에 중앙의 관학을 國子學·太學·四門學으로 나누었으나 이 때의 태학은 입학생 등급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였다.

<sup>1)《</sup>文獻通考》권 40, 學校考 1, 太學.

<sup>2)</sup> 위와 같음.

<sup>3)</sup> 위와 같음.

고려 말 이후의 성균관은 두 가지 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국가 의 지배사상인 주자학이념 보급의 근거지로서의 기능이요. 다른 하나는 국가 의 관료를 양성하는 관료양성소로서의 기능이다. 고려 말의 신흥사대부와 신 흥무장이 주축이 된 신귀족들은 불교를 신봉하고 사학에 근거를 둔 구귀족 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주자학과 관학을 일으켰다. 충렬왕 30년(1304) 5월에 安珦이 국왕 이하 백관에게서 돈을 거두어 成均監에 장학재단인 贈學錢을 두고, 박사 金文鼎을 원에 보내어 공자 및 70제자의 상과 문묘제기・악기와 6경·제자·사서를 수입하여 오게 한 것이나,4) 스스로 노비 300구를 시납한 것이나.5) 충숙왕 6년(1319) 6월에 博士 柳衍. 學諭 兪油을 강남에 보내어 송 의 秘閣圖書 10.800권을 사온 것이나. 원으로부터 다시 서적 4.071책을 받아 온 것 등이 그 예이다.6) 權溥・李瑱・權漢功 등의 유학자들은 성균관에 모 여 이러한 책들을 정리 연구하여 주자학 보급에 박차를 가하였다.7) 그리하 여 공민왕 16년(1367) 12월에는 崇文館의 옛터에 불타버린 성균관을 중창하 고 李穡을 兼大司成, 鄭夢周・朴尙衷・朴宜中・李崇仁 등을 兼敎官으로 삼아 성균관 교육을 강화하였다.8) 교과서는 주로《四書集註》가 채택되었으며.9) 이미 이에 대한 倡註까지 나돌게 되었다.10) 이러한 주자학연구는 공양왕대에 구귀족의 불교를 배척하고 이성계 중심의 새 왕조를 개창할 수 있는 이론적 인 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11) 공양왕 3년(1391)에 성균관의 대사성 鄭道傳과 朴礎 등 급진적인 성균관 유생들이 사원을 혁파하여 이성계 세력의 인적ㆍ 물적 기반을 강화시키고자 한 주장이 그것이었다.12)

<sup>4) 《</sup>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sup>5) 《</sup>成宗實錄》권 70, 성종 7년 8월 무신조에 의하면 文籍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安珦(조선 문종의 諱가 珦이라 避諱하여 裕로 고쳤음-필자)이 國學에 노비 300口를 施納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sup>6) 《</sup>增補文獻備考》 권 202, 學校考 1, 太學 1 충숙왕 원년 6월.

<sup>7)</sup> 위와 같음.

<sup>8)《</sup>高麗史》 권 115, 列傳 28, 李穑.

<sup>9) 《</sup>高麗史》 권 117, 列傳 30, 鄭夢周.

<sup>10)《</sup>高麗史》 권 107. 列傳 20. 權明 附 溥.

<sup>11)</sup> 李相佰,〈儒佛兩教 交代의 機緣에 대한 研究〉(《韓國文化史研究論考》, 乙酉文 化社, 1941).

<sup>12)《</sup>增補文獻備考》 권 202, 學校考 1, 太學 1.

조선이 건국되고 유교가 국가의 지배사상이 되자 성균관은 '明人倫 成人 才'13)의 사명을 띠고 태조 7년(1399)에 국도 건설의 일부로 지금의 성균관대학 교가 있는 崇教坊에 明倫堂·文廟·東西齋·正錄廳·養腎庫・식당 등 96카에 이르는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14) 그러나 정종 2년(1400)에 문묘가 불타버려15) 태종 7년(1407)에 중건되었으며16) 동왕 9년에는 예문대재학 卞季良으로 하여금 문묘비를 지어서 세우도록 하였다.17) 그 후 성종 3년(1472) 가을에 문묘 옆에 문묘향사의 일을 담당하는 典祀廳을 지었으며.18) 성종 5년 유6월에는 기존 泮 水의 양안에 석축을 쌓고.19) 성종 9년 7월에 반수를 갖추어 팠다.20) 아울러 성 종 6년 가을에는 명류당 북쪽에 도서관인 奠經閣을 세우고 5경・4서 각 10책과 8도로부터 찍어올린 책 수만 권을 수장하고 司藝‧學正 각 1인씩을 두어 관리 하게 하였다.21) 그러나 연산군 때에 성균관이 왕의 宴樂 장소로 바뀌어 교육기 능을 잃었다가 중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문묘를 중수하고 교육기능을 그 전처럼 복구시키고 명나라의 예에 따라 문묘묘정비를 세웠다.22) 그 후 선조 25년(1592) 에 임진왜란으로 성균관이 불타버려 선조 34년에 문묘를, 선조 39년에 명류당 등을 다시 세웠다.23)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인조 4년(1626)에 李廷龜의 陰記를 더하여 변계량의 문묘비를 다시 세우고 효종 4년(1653)에는 香室을 다시 지었 다.24) 또한 현종 4년(1663)에는 서울의 두 尼院을 헐어 北學을 세우려다가 명륜 당 서쪽에 丕闡堂을 세워 명륜당의 별당학사로 사용하게 하였으며.25) 그 북쪽

<sup>13)</sup> 鄭道傳、《三峯集》 刊 7. 朝鮮經國典, 學校,

<sup>14)</sup> 成均館은 漢陽으로 도읍을 옮긴 다음해인 태조 4년(1395)에 착공하여 3년 뒤인 태조 7년(1398) 7월에 완공되었다(《太學志》상, 권 1, 學舍·廟宇).

<sup>15) 《</sup>定宗實錄》 권 3, 정종 2년 2월 정유.

<sup>16) 《</sup>太宗實錄》권 13. 태종 7년 3월 기해.

<sup>17)《</sup>東文選》 권 121, 有明朝鮮國學新廟碑銘幷序.

<sup>18)《</sup>增補文獻備考》 권 203, 學校考 2, 太學 2.

<sup>19) 《</sup>成宗實錄》 권 44, 성종 5년 윤6월 신축.

<sup>20) 《</sup>成宗實錄》 권 95, 성종 9년 7월 계미.

<sup>21) 《</sup>增補文獻備考》 권 203, 學校考 2, 太學 9 성종 6년 가을.

<sup>22) 《</sup>增補文獻備考》 권 203, 學校考 2, 太學 2 중종 원년・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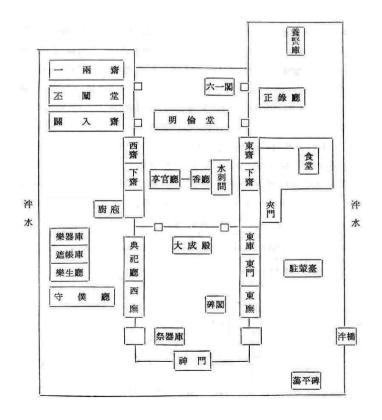
<sup>23) 《</sup>增補文獻備考》 권 203. 學校考 2. 太學 2 선조 34년・39년.

<sup>24) 《</sup>增補文獻備考》권 203, 學校考 2, 太學 2인조 4년·효종 4년·현종 5년 추 9월.

<sup>25) 《</sup>太學志》하, 권 9, 事實 紀蹟. 조闡堂에 대해서는 宋時烈의 〈丕闡堂記〉에서,

에 一兩齋, 남쪽에 關入閣을 지었고,<sup>26)</sup> 영조 19년(1743)에는 大射禮를 행하는 六一閣을 명륜당 동북쪽에 세웠다.<sup>27)</sup>

27) 《增補文獻備考》권 203, 學校考 2, 太學 2 영조 19년 5월.「六一」이란 射가 六 藝(禮·樂·射 御·書·數)의 하나라는 데서 따온 것이다. 한편 成均館의 각 건물의 위치를 《太學志》상, 권 2, 建置泮宮圖에 의거하여 간단히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sup>「</sup>丕闡」이란 말은 朱子가 말한 '丕闡大猷 抑邪與正'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不闡堂은 조선 후기에 과거시험장으로도 쓰였다.

<sup>26) 《</sup>太學志》하, 권 9, 事實 紀蹟 下.「一兩」이란 이단인 불교의 사찰을 헐어 유학의 학사를 지었으니 '一擧而兩得'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朱子),「關入」이란 '關之而後 可以入道'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程子).

#### (2) 문묘종사와 석전

문묘의 주향은 文宣王 孔子였다. 공자는 당나라 이전까지는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나 당 玄宗 開元 27년(739)에 문선왕으로 불렸고 명 世宗 嘉靖 9년 (1530) 이후로는 至聖先師라고만 불렸다. 그러나 조선왕조에서는 원 武宗 大德 11년(1307)에 정한 大成至聖文宣王이라는 시호를 준용하였다. 왕이 아니면서 왕의 칭호를 받은 사람은 공자가 유일하였는데 이는 후세에 끼친 교육의공로가 컸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성균관 문묘에 종사된 명현은 모두 133인이다. 이 중 崔致遠・薛聰・安珦・鄭夢周・金宏弼・鄭汝昌・李彦迪・趙光祖・李滉・金麟厚・李珥・成渾・金長生・金集・趙憲・宋浚吉・朴世采 등 18인이 한국의 儒賢이다.

성균관은 유교이념의 전당으로서 학통과 학문의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선현을 문묘에 종사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朱熹를 비롯한 宋儒들을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문묘와는 별도로 啓聖祠가 있어 공자의 부 叔梁紇을 정위에, 顏子의 부 顏無繇와 子思의 부 孔鯉는 동위에, 曾子의 부 曾哲과 孟子의 부 孟孫은 서위에 모셔 석전 전날 밤에 제사하였다. 이것은 선조 7년 (1574) 조현의 건의에 따라 명나라 洪武禮制를 본뜬 것이다.28)

문묘의 제향을 釋奠祭라 하는데 정규적인 석전제는 봄·가을 仲月(3·9월) 上丁日(최초의 丁字가 든 날)에 행하게 되어 있었다. 정규 제향인 석전제 이외에 일이 있을 때마다 행하는 朔望祭(임진왜란 이후에는 폐지되어 분향만 하였음)·告由祭·慰安祭·移還安祭·禮成祭 등이 있었으며, 3년마다 한번씩 국왕이 참여하는 親臨酌獻이 있었고, 왕명에 의하여 특별히 실시되는 親臨釋奠이 있었다.

석전제의 獻官은 정2품, 亞獻官은 정3품 당상관, 終獻官은 정3품, 殿內東·西從享分獻官 각 1명은 4품, 兩無從享分獻官 각 10명은 5~6품의 관원이 맡았으며, 국왕의 친행석전에서는 국왕이 헌관, 왕세자가 아헌관, 영의정이 종헌관, 정2품 각 1명이 전내동·서종향분헌관, 정3~4품 각 10명이 양무종향

<sup>28) 《</sup>增補文獻備考》 권 204, 學校考 3, 文廟 선조 7년.

분헌관을 맡았고, 왕세자 석전에서는 왕세자가 헌관, 정2품이 아헌관, 정3품 당상관이 종헌관을 각각 맡았고, 분헌관은 常時釋奠과 같았다.<sup>29)</sup> 그리고 석전의식은 중국 州縣의 석전의 예에 따랐으며 고려시대의 塑像을 쓰던 것을 조선시대에는 位版을 썼다. 석전제 이외에도 성균관에서는 대사례와 양로연, 국왕·왕세자의 幸學·視學을 행하기도 하였다.

#### (3) 입학 및 교육

성균관 유생의 정원은 국초에 200인(《經國大典》)이었는데 흉년 때문에 때때로 그 수를 줄였다가 세조대에 복구하였으나 뒤에 75인으로 줄였으며 영조 7년(1742)에 100인으로 늘렸다.30)

정균관 유생은 생원·진사인 上齋生(정규생)과 상재생이 모자랄 때 幼學으로서 보충하는 寄齋生으로 구분되었다. 기재생은 4학에서 陸補試를 거쳐 올라온 4학 승보생과 문음 자제들 중에서 뽑는 문음 승보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문음 승보생의 대상은 태종대에 2품 이상의 자제에게만 한하던 것을 세종대에는 4조 내에 3품 이상 관을 지낸 사람이나 의정부·6조·대간직을 지낸 사람의 자제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들은 생원·진사시를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기재생의 대부분이 문음 승보생으로 채우게 될 우려가 있어 세종 15년(1433) 9월에는 문음 승보생의 수를 30인으로 제한하고 세종 18년부터는 《小學》에 통하지 않으면 누구나 기재생이 될 수 없게하였다. 상재생은 원칙적으로 생원·진사에 한하였으나 점차 완화되어 문과의 鄕試・漢城試에 한 번 합격한 자, 생원·진사시의 향시·한성시에 두 번합격한 자, 현직관료 참상·참하관도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31) 그리고 왕세자도 성균관에 元子學宮을 지어 유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하였다. 왕세자는 8세가 되면 길일을 택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며 입학례의 주례인 박사는 예문대제학이 맡게 되어 있었다.

<sup>29)《</sup>增捕文獻備考》刊 204. 學校考 3. 文廟 齋宮釋尊‧親行釋奠‧王世子釋奠.

<sup>30) 《</sup>太學志》하, 권 7, [編集 供給. 영조 7년에 유생 100인 외에 寄齋生 20인, 掌 議 2인, 色掌 4인을 합쳐 정원이 총 126인이었다.

<sup>31)</sup> 李成茂,〈鮮初의 成均館 硏究〉(《歷史學報》35·36, 1967), 256~257쪽.

재학 연한은 제한되어 있지 않았으며 圓點 300을 따서 문과 초시의 응시자 격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원점은 매일 아침ㆍ저녁 식당에 참석하는 것 을 원점 하나로 계산해 주었다.32) 유생들이 식당에 들어갈 때 井字로 된 칸 안에 이름을 써넣게 되어 있었으므로 원점을 食堂到記라고도 불렀다. 유생들 은 4서 5경과《近思錄》・《性理大全》・《通鑑》・《左傳》・《宋元節要》・《經國 大典》・《東國通鑑》등 과거과목, 그리고 製述을 아울러 공부하였다. 그리하 여 공부한 결과를 學官日講・學官旬製、禮曹月講、의정부・6조・제관 당상관 들의 3월 3일·9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제술시험인 年考를 통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었다.33) 학관일강과 예조월강은 講經시험(Oral Test)이었고. 학관순제<sup>34)</sup>의 춘추년고는 제술시험(Written Test)이었다. 이 시험의 결과는 分數로 계산되어 우수한 자를 추천하여 서용하거나 문과시험을 볼 때 참작 하였다. 경서를 공부하는 기간은《대학》1개월,《중용》2개월,《논어》·《맹 자》 각 4개월.《시경》·《춘추》각 6개월.《주역》·《예기》각 7개월이었으며 강경의 점수는 「通ˌ·「略ˌ·「粗ˌ·「不ˌ로 구분하였다.35)「통ˌ은 2분,「약ˌ은 1분、「조」는 반분을 주었으며 句讀와 訓釋이 정통・능숙하고 글의 뜻을 완전 히 이해하여 꿰뚫었으며 변설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자는 「통」, 구두와 출석 이 모두 분명하고 비록 대의를 통하기는 하나 아직 완전히 이해하여 꿰뚫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자는 「약.. 구두와 훈석이 모두 틀림이 없으며 강론이 비록 해통하지는 못하나 일장의 대의를 잃지 않은 자는 「조」, 불합격자는 「불\_을 주었다.36) 나아가서 제서에 융회관통한 자에게는 특별히「大通」(또는 「純通」)을 주기도 하였다.37)

<sup>32) 《</sup>世宗實錄》 권 2. 세종 즉위년 12년 무자.

<sup>33)《</sup>經國大典》 권 3, 禮典 獎勵.

<sup>34)</sup> 초순에 疑義・論, 중순에 賦・表・頌, 하순에 對策・記를 시험보였다(《太學志》 상, 권, 章甫 學令).

<sup>35) 《</sup>京外學校節目》(명종 원년). 세종 3년(1459)에는 고려 말의 예를 따라 성균관에 「大學」・「中庸」・「論語」・「詩經」・「書經」・「春秋」・「禮記」・「周易」 등 四書 五經齋(九齋)를 두어 차례로 승급하게 하고 이 과정을 다 마친 자에게는 문과시험의 會試나 殿試에 直赴하는 제도를 두기도 하였다(《太學志》상, 권 7, 造土).

<sup>36)《</sup>經國大典》 권 3, 禮典 諸科 講書.

<sup>37) 《</sup>太學志》 상, 권 5, 章甫 學令.

그리고 제술의 평점은 상상에서 하하까지의 9등급을 두어 상상에 9분, 하하에 1분을 주었다.<sup>38)</sup>

한편 성균관의 각종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는 문과 初試・ 會試・殿試에 直赴하거나 합격시키는 특전을 주었다. 節(日)製・通讀・到記 (科)・殿講・應製・謁聖試・館試 등의 시험이 그것이었다.

節製에는 매년 정월 7일(人日)에 보이는 인일제, 3월 3일에 보이는 삼일 제, 7월 7일에 보이는 칠일제, 9월 9일에 보이는 구일제의 四製가 있었다. 이 중 인일제와 칠일제를 儒生上旬輸次, 삼일제와 구일제를 儒生課試라고도 불렀다.39)

通讀은 숙종대부터 실시된 시험으로《續大典》에 의하면 매년 성균관 대사성이 경향의 유생들에게 강경과 제술시험을 각각 11번씩 실시하여 두 가지시험에 성적이 우수한 자 각 5인씩 10인을 문과 회시나 전시에 직부하게 되어 있었다. 이 때의 제술시험에는 賦 1편과 表・箋・論 중 1편을, 강경시험에는 4서 3경을 背講으로 시험보였다.40)

到記(科)는 관학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실시된 시험으로 왕의 特旨가 있을 때 불시에 그 당시 식당도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유생을 대상으로 강경이나 제술시험을 보여 이 중 성적이 우수한 자 약간명을 문과 회시에 직부시키거나 給分하는 특별시험이었다. 이 시험은 성균관 유생뿐 아니라 4학 유생들도 응시하였는데 성적이 우수한 성균관 기재생이나 4학 유생들은 생원·진사시 회시에 직부할 수 있었다.

殿講도 조선 후기에 역시 관학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매 4仲朔(2·5·8·11월) 16일에 그 전날 저녁의 식당도기에 올라 있는 성균관·4학 유생을 선발하여 실시한 강경시험이었다. 이 시험에도 기재생·4학 유생이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들 중 우수한 자는 생원·진사시 회시에 직부되었다.41)

<sup>38)《</sup>經國大典》권 3, 禮典 諸科 製述.

<sup>39) 《</sup>太學志》 하. 권 8. 選舉 節製.

<sup>40)《</sup>續大典》 권 3. 禮典 諸料 通讀.

<sup>41) 《</sup>太學志》하, 권 8, 選舉 殿講. 「太學成典」에는 殿講이 每 四孟朔(1·4·7·10년) 15일에 生·進 4~5인, 寄齋生 2인, 四學儒生 1인을 왕의 落點을 받아 시험보도록 했다고 하였다.

應製는 節製 이외에 왕의 특명으로 왕 자신이나 대제학이 출제하여 궁중에서 성균관·4학 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출시험이었다. 이 시험은 관학유생의 수준을 국왕이 직접 테스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때로는 우수한 자를 급제시키기도 하였다42)

渴聖試는 국왕이 친히 성균관 문묘에 행차하여 酌獻禮를 행한 직후에 실시하는 제술시험으로서 단 한번의 시험으로 급제자를 정하는 即日放榜의 특별시험이었다. 뽑는 숫자는 그때그때 정하였고 장원에게만 급제를 주기도 하고, 혹은 수인, 많을 때는 55인에게 급제를 준 적도 있다.

館試는 성균관시의 준말로 성균관 유생들만 시험을 볼 수 있는 문과 초시의 일종이다. 관시의 試取 정원은 50인으로 성균관 유생으로서 원점 300이 찬 사람에 한하여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원점 300을 딴 유생이 모자랄 때는 원점수를 그때그때 하향 조정하기도 하였다. 관시는 성균관 유생이 목표로 하는 가장 중요한 정규 문과시험이었다.43)

한편 오랫동안 성균관에서 수학하고 학문과 행실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50세가 된 자나, 학관일강·순과(제), 예조월강의 성적이 우수한 자, 문과관시·한성시에 일곱 번 합격하고 나이가 50이 된 자는 왕에게 천거하여 벼슬을 주기도 하였다.44)이를 公薦이라 하는데 掌議들이 洋宮齋會를 열어 원점을 많이 받은 3인을 이조에 추천하여 벼슬을 주게 되어 있었다.

#### (4) 관 학

《경국대전》에 의하면 성균관 學官의 수는 37인이었다.45) 그러나 성균관학관의 수는 점차 늘어서 《태학지》가 만들어진 조선 후기에는 56인이 되었으며, 유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훌륭한 자질을 가진 관료들을 겸교관으

<sup>42) 《</sup>太學志》하, 권 8, 選擧 應製. 세조 3년(1457)에 세조가 忠順堂에서 성균관 4학 유생 56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應製에서 진사 成俔에게 급제를 준 바 있다.

<sup>43) 《</sup>太學志》 하. 권 8. 選舉 館試.

<sup>44)《</sup>經國大典》 권 3, 禮典 獎勸.

<sup>45)</sup> 조선 초기와 조선 후기의 成均館 學官의 職官表를 비교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太學志》상, 권 5, 職官; 李成茂, 앞의 글, 253쪽).

로 임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 후기의 知館事·大司成·祭酒(좨주)·司業 등의 고위 직책은 대제학 또는 학식이 높은 관료들로 겸임하게 하였고 無博士·無學正·無學錄·無學諭 등 참하관의 하위직도 奉常寺官이나 4학 훈도가 겸임하게 하였다. 예컨대 여말 선초에 이색·정몽주·권근·변계량 등의 석학들이 겸교관이 된 바 있으며, 조선 후기에는 김장생을 사업, 이준경·송준길 등을 좨주에 임명하여 사림의 宗長들이 성균관직을 맡는관례를 만들었다.

개정 년도	태조 원년 (1392)	태종 원년 (1401)	세조 12년 (1466)	《경국대전》	《태 학 지》
정 1 품					知事1 (大提學 兼)
종 1 품					同知事 2
정 2 품	知館事 1	知館事 1	知事 1	知事 1	(他官 兼)
종 2 품	同知館事 1	同知館事 1	同知事 1	同知事 1	L
정 3 품 (당상관)			大司成 1	大司成 1	大司成 1   (兼官時 정3   ・
정 3 품 (당하관)	大司成 1	大司成 1			품~종1품) 祭酒 2(종1 품~정3품
종 3 품	祭酒 1	司成 1	司成 2	司成 2	司成 1
정 4 품	樂正 2	司藝 2	司藝 4	司藝 4	司藝 2 司業 2(學行人)
정 5 품	直講 1	直講 1	直講 4	直講 4	直講 4 兼直講 1
정 6 품	典簿 1	主簿 1	典籍 4	典籍 13	典籍 13 養賢庫兼主簿 (典籍兼)
정 7 품	博士 2	博士 2	博士 1	博士 3	
종 7 품	諄諭博士 2	諄諭博士 2			
정 8 품	進德博士 2	進德博士 2	進德博士 2		博士 3 兼博士 3 學正 3 兼學正 3
정 9 품	學正 2 學錄 2	學正 2 學錄 2	學正 1 學錄 1	學正 3 學錄 3	
종 9 품	進學 2 學諭 4	進學 2 學諭 4	直講 2 學諭 4	學諭 3	學錄 3 兼學錄 3 學諭 3 兼學諭 3
					兼直長 1 (博士以下兼) 兼奉事 1 (學正以下兼)
계	24	24	28	37	56

성균관 학관은 4학이나 종학의 교관을 겸임하기도 하였다. 성균관 학관이 종학 교관을 겸임하기 시작한 것은 세종 2년(1430) 3월부터였다.46) 그러나 때로는 集賢殿官 등 동반의 顯官이 겸임하기도 하고 군직을 겸대하기도 하였다. 세종 18년에는 성균관 학관과 집현전관이 반반씩 종학 교관을 겸하기도 하였다.47) 그러나 세조 12년(1466)에는 導善(정4품)・典訓(정5품)・司誨(정6품) 등 종학의 전임 교관을 두기에 이르렀다.48)

국가에서 성균관 교육을 계속적으로 장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균관 학관은 인기가 그리 없었다. 권력의 핵심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주 교체되었다. 겸교관제를 활용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으며 直講을 久任職(30개월)으로 하여 성균관 교육을 활성화하려고 하였던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성균관 참외(하)관은 1년 兩都目에 임기는 30개월이었다. 그런데 7품에서 6품으로 올라갈 때 세밑 도목(12월)에 거관하는 사람은 경관 6품을, 6월 도목에 거관하는 사람은 외관 6품을 주었다. 이는 三館(成均館・承文院・校書館) 참하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조에서는 한때 6월 도목을 폐지하였으나 行 守法이 실시된 뒤로는 선・후진의 질서가 문란하여져서 6월 도목을 부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문종 즉위년(1450) 4월부터 殿最에 의한 승품규정으로 바뀌었다. 49) 성균관 書東는 1년 양도목에 매년 1~2인씩 8품으로 거관되었다.50)

## (5) 성균관의 경제적 기반

성균관의 경제적 기반은 성균관 학전의 稅收와 성균관 노비의 身貢에 있었으며, 釋奠祭物과 酒米는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하였다.

성균관의 學田은 국초의 1,035결에다가 세종 13년에 준 965결을 합치면 2,000결이었다. 거기에다가 세종 29년에 내려준 학전 약간과 성종 15년(1484)

<sup>46) 《</sup>世宗實錄》권 14. 세종 12던 3월 병오.

<sup>47) 《</sup>世宗實錄》권 38. 세종 28년 정월 임오.

<sup>48) 《</sup>世祖實錄》 권 38, 세조 12년 정월 무오.

<sup>49)</sup> 李成茂, 앞의 글, 254쪽.

<sup>50)</sup> 위와 같음.

의 400결, 중종 6년(1511)의 100결 등 2,500여 결에 이르렀고 그 후에도 가끔 학전을 더 지급하였다. 학전의 1년 세수입은 세조 4년에 600석이라 하였는데 성균관 유생 200인을 기르기 위하여는 960석이 든다고 하였다. 그러니 360석 이 모자라 학생수를 줄이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성종 15년(1484)에 400결을 더 준 것은 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51)

그리고 성균관의 油炭・鋪陣・席子・地衣 등은 성균관 외거노비의 신공으로 충당하였다. 성균관 노비는 관내노비와 외거노비로 구분되는데 관내노비는 관내의 잡역과 문묘제향, 유생의 조석공급 등을 맡았고 외거노비의 신공은 앞에 말한 용도로 쓰였다. 성균관 노비는 소위 고려시대에 안향이 시납한 300구와 세종 원년(1419)에 더 지급한 100구 및 그 이후에 늘어난 약간의 노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성균관 노비는 종종 시녀나 他司노비・공신노비로 전속되거나 다른 역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차례의 금령이 내려졌으나 제대로 실현된 것 같지는 않다. 성균관의 학전이나 노비가 자주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게 된 것도 성균관 교육을 부실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52)

성균관의 전곡출납은 양현고에서 맡았다. 양현고는 고려 예종 14년(1119)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53) 그러나 출납되는 전곡은 호조에서 수령하였다. 국초에는 학당의 경비를 전적으로 양현고에서 맡아 왔으나 세종 17년부터는 豊儲倉에 그 업무를 이관하였다. 그런데 세조 10년(1465)에는 계속되는 흉년으로 양현고를 일시 풍저창에 합속시키고 성균관 녹관 중에서 참상 1인과 참외 2인을 풍저창에 파견하여 전곡을 출납케 하였다. 그러나 양현고가 풍저창에 귀속된 뒤로 여러 가지 불편이 생겨 성종 14년 12월에 양현고를 복설하였다. 양현고에서는 유생들의 飯米・助饌・氷・油炭・紙筆墨・香・席子 등일체를 공급하였다.54)

<sup>51)</sup> 李成茂. 위의 글. 263쪽.

<sup>52)</sup> 李成茂, 위의 글, 264쪽.

<sup>53) 《</sup>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sup>54)</sup> 李成茂, 앞의 글, 264~265쪽.

## 2) 4부 학당(4학)

#### (1) 학당의 설치

학당은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던 고려 원종대부터 설치되었다. 즉 원종 2 년(1261) 3월에 원의 제도를 모방하여 동·서학당을 설치하고 각각 別監·敎學·敎導를 두었던 것이 학당의 시초였다.55) 그러나 동·서학당은 고려 말의 내우외환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가 공양왕 2년(1390) 2월에 이르러 경중 5부에 각각 학당을 설치하게 되었다.56) 그런데 이 때의 학당은 고려의 사학 12도를 없애고 대신 세운 것에 지나지 않았다.57) 그러나 이 때의 5부 학당은 이름뿐이고 학사조차 없어서 불사를 빌려 쓰는 실정이었다.

조선왕조의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뒤인 태종 11년(1411) 6월에 남부학당, 세종 4년(1422) 12월에 중부학당, 세종 17년 11월에 서부학당, 세종 20년 3월에 동부학당의 학사를 각각 마련하였다.58) 이리하여 조선 초기부터 5부 학당가운데 북부학당을 제외한 4부 학당이 운영되게 되었다. 그러나 북부 학당은 끝내 설치되지 못하였다.

4부 학당은 송의 三舍法(外舍·內舍·上舍) 중 외사에 해당하는 학제였다. 3 사법은 학생들이 우선 외사에 들어가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좋으면 내사로, 내사에서 상사로 올라가 상사에서 직접 관리로 임명되는 제도였다.59) 4부 학 당의 생도들은 8세가 되면 입학하여 15세가 되어 《소학》과 「4서」를 시험보 이는 승보시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할 수 있었다.

## (2) 4부 학당의 교육

4부 학당에는 양인 이상의 신분이면 누구나 8세에 입학하여 생원ㆍ진사

<sup>55) 《</sup>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sup>56)</sup> 위와 같음.

<sup>57)</sup> 李光麟,〈鮮初의 四部學堂〉(《歷史學報》16, 1961), 32\.

<sup>58)</sup> 李光麟, 위의 글, 38~39쪽.

<sup>59)</sup> 李光麟, 위의 글, 36쪽.

시를 준비하는 교육에 임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學區制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지방학생들도 각 도의 추천을 받아 입학할 수 있었다. 각 학당의 정원은 100명씩으로서 모자라는 경우에는 동몽들로 보충하게 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입학시험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학당의 시설과 교육이충실하지 못하여 정원 100명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흉년이 들면 방학을 하기도 하였다.

학당의 교과목은 소학과 4서가 중심이었으며 교육평가는 경서를 배강케하는 강경과 논술시험인 제술로 나누어져 있었다. 특히 학당의 교육에서는 향교와 마찬가지로 소학이 중시되었다. 소학이 유교의 기초적인 실천윤리를 간추려 놓은 윤리교과서였기 때문이다. 학당에서 소학교육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4학 유생들이 목표로 하는 성균관 진학시험인 승보시와 생원·진사시에는 소학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었다.600

소학 이외에도 4서와《孝經》·《三綱行實》·《朱子家禮》·《史略》등이 학당의 교과서로서 널리 쓰였다. 성균관에서는 여기에《근사록》·《성리대전》등의 性理學에 관한 책,《通鑑》·《좌전》·《宋元節要》등의 역사책과,《古文眞寶》·《文選》·《唐宋八家文》·《東文選》등의 역사책과,《東國正韻》·《경국대전》등도 교과서로 쓰였다. 이러한 책들을 찍기 위하여 태종 3년(1403) 2월에 주자소가 설치되고 여기에서 활자를 개발하여 많은 책을 찍어 냈다.

학당의 교육평가에는 학관일강, 예조월강, 매 6월마다 남부학당에서 실시하는 四學合製, 승보시와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謁聖試·黃柑試·春塘臺試 등의 별시, 왕궁에서 실시되는 전강·친시 등이 있었다. 학관은 5일마다 각 학당에서 강경시험(배강)을 보였으며, 예조에서는 달마다 역시 강경시험을 쳐서두 시험의 성적은 연말에 종합하여 왕에게 보고하고 승보시나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때 참작하였다.61)

## (3) 4부 학당의 교관

4부 학당의 교관은 국초에 각 학당에 敎授官(6품) 2인, 訓導官(7품 이하) 5

<sup>60) 《</sup>太宗實錄》권 13, 태종 7년 3월 무인(權近의 勸學事目).

<sup>61)</sup> 李光麟, 앞의 글, 53쪽.

인씩을 두고 성균관 학관이 겸임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균관 녹관의 수가 부족하여 정원수대로 파견할 수 없어 그 일부를 軍職遞兒(4학에 攝司直 각 1인, 攝副司直 각 1인)로 대체하여 녹봉을 지급하였다. 그러자 학당교육이 부실하게 되고 교관에 대한 처우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일어세종 19년(1437)에는 성균관에 司藝(정4품) 이하 主簿(정6품) 이상의 품계에 각 2인씩의 학관을 증설하여 동ㆍ서학당에 각 2인, 남ㆍ중학당에 각 3인씩을 파견하였다. 4학의 교관수가 줄어든 셈이었다. 그러나 교관수가 줄어들면 학당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서 세종 20년에는 각 학당에 훈도 1인씩을 더파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세조 12년(1466)에는 4학에 전임교관을 두기로 하고 겸교수관을 교수, 겸훈도관을 훈도라 개칭하여 군직을 겸대하도록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에는 4학에 교수(종7품) 2인, 훈도 2인씩을 두고성균관 전적 이하의 학관이 겸임하도록 되었다.62) 그 후 효종대에는 성균관에 학문이 깊은 사림 출신의 사업 4인을 두어 각 학당을 하나씩 맡도록 하고 성균관 좨주가 돌아다니며 교육을 독려하도록 하였다.63)

## (4) 4부 학당의 경비

4부 학당의 경비는 학전·어장의 세수입과 노비신공에 기본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학전으로는 태종 12년(1412)에 국가에서 내려준 100결, 세종 6년에 각 학당에 내려준 菜田 각 1결 20부, 명종 2년(1547)에 내려준 15결이 있었으며, 명종 20년에 떼어준 扶安·萬頃·古群山의 漁箭(어살) 등이 있었다.64) 그리고 학당노비로는 태종 11년에 학당에 준 崔沖의 9재노비와 그 후에 이속된 혁거사찰노비·죄인속공노비, 문종대에 가급한 약간의 노비, 명종 2년에 사여한 노비 15구 등이 있었다.65) 그러나 이들 학전과 노비는 자주 다른 곳으로 이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학당 운영경비가 모자라 흉년이 되면 방학하거나 常養 액수를 줄이는 경우도 있었다. 학당의 경비는 호조

<sup>62)</sup> 李光麟, 위의 글, 47~49쪽.

<sup>63) 《</sup>太學志》 하. 권 13. 附編 四學.

<sup>64)</sup> 李光麟, 앞의 글, 43~45쪽. 《增補文獻備考》권 209. 學校考 8. 四學 참조.

<sup>65)</sup> 위와 같음.

에서 수납하여 매달 풍저창에서 생도수에 따라 타 오도록 하였는데 1인당매일 쌀 1되 정도가 지급되었다.66)

#### 3) 종 학

#### (1) 종학의 설치와 교육

宗學은 종실의 교육을 담당하는 정4품 아문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종실 은 종친과 마찬가지로 왕의 玄孫(4대손)까지의 자손을 의미한다.67) 단 왕세자 나 원자는 성균관에 원자학궁을 세워 별도로 교육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종학과 같은 종실 자손에 대한 별도의 교육기관은 없었으나 충선왕이 諸王子府를 개편할 때 그 요속으로서 伴讀(정6품)・直講(종6품)을 두었는데 이것이 그러한 일을 담당한 관직이 아니었나 한다.<sup>68)</sup> 조선시대의 종학은 세종 10년(1428) 7월에 대군 이하 종실 자제들의 교육을 위하여 처음으로 설립되었고, 이듬해 10월에 景福宮의 建春門 밖에 학사를 세우는가 하면, 동왕 12년 3월에는 종학의 학칙인 宗學式略을 상정하였다.<sup>69)</sup>

종실 자제들에 대한 교육은 그들이 문장을 잘 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문을 닦아 몸가짐을 신중히 하고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종친들은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고 부귀를 누리는 존재들이어서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들은 무뢰배들과 어울려 갖은 비위를 저지르기 일쑤였으며 공부하는 데 관심이 적었다. 종친들은 고려시대부터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특히 태종대의 사병혁과 이후로「宗親不任以事」가 강화되었다. 물론 세조대에는 능력있는 종친에게 파격적으로 관직을 주었으나 성종대 이후에는 「종친불임이사」가 강화되었다.70) 종친들에게 관직을 주지 않은 것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친들을 권력으로

<sup>66)</sup> 李光麟, 앞의 글, 43~44쪽.

<sup>67)</sup> 韓沽劤 外、《譯註 經國大典》註釋篇, 吏典 宗親府(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10쪽. 同姓을 宗이라 하고 父藁(父系)를 親이라 한다.

<sup>68)</sup> 金成俊, 〈朝鮮初期의 宗學〉(《韓國中世政治法制史研究》, 一潮關, 1985), 352\.

<sup>69)</sup> 金成俊, 위의 글, 353쪽.

<sup>70)</sup> 金成俊, 〈朝鮮初期의 宗親府〉(앞의 책, 1985), 316~318쪽.

부터 소외시키려는 의도와 아울러 문신정치 시대에 있어서 관료들이 왕실의 권한 비대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71) 중친들의 사환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종학을 허소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세종은 이러한 풍조를 바꾸기 위하여 세종 12년 5월에 晋平(首陽)大君 瑈・安平大君 瑢・臨瀛大君 璆등을 종학에 입학하게 하고 종학에 나아가지 않는 종친들을 처벌하였으나 큰실효는 거두지 못하였다.72) 그리고 태종대부터 실시되어 오던 종친의 과거응시도 성종 초에는 금지되었다.73) 그러나 왕의 五服親(현손까지) 이외는 문무관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응시할 수도 있었고 관직을 가질 수도 있었다.74)

이와 같이 종학은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략하여 명맥을 유지하여 오다가 연산군 11년(1505) 11월에 종친이 문사와 교통한다고 하여 일시 혁파되었다 가, 중종 6년(1511) 7월에 복설되었으며, 중종 19년 3칠에 결국 흉년으로 다 시 혁파되었다가, 숙종 2년(1676) 정월에 부활되었다.<sup>75)</sup> 그러나 《속대전》에는 「今革」이라 하여 종학이 없어졌음을 명기하고 있다.<sup>76)</sup>

#### (2) 종학의 교관

종학의 교관은 처음에 종학교수관이라 하였는데, 세종 9년 9월 예조에서 종학의 설치를 건의할 때에는 종학교수관이 2인이었다가, 종학이 창설된 뒤인 세종 11년 2월에는 4인으로 늘어났으나, 그 중 2인은 實差敎官, 2인은 預次敎官으로 하였다.77) 이 때의 종학교수관은 성균관의 사성(종3품)·사예(정4품)·직강(정5품)·주부(정6품)가 겸임하였다. 그런데 세종 11년 3인에 종학식략이 제정되고 세종 12년 5월에 왕이 진평대군 등 왕자들을 종학에 입학시키고 다른 종친들의 입학을 독려하자 교관 4인 전부를 실차하게 되었다. 입학종친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세종 15년 8월

<sup>71)</sup> 金成俊, 앞의 글, 356쪽.

<sup>72)</sup> 金成俊, 위의 글, 355쪽.

<sup>73)</sup> 金成俊, 위의 글, 357쪽.

<sup>74) 《</sup>經國大典》권 1. 吏典 宗親府.

<sup>75)</sup> 金成俊, 앞의 글, 358쪽.

<sup>76)《</sup>續大典》 권 1, 吏典 京官職 宗學.

<sup>77)</sup> 金成俊, 앞의 글, 359쪽.

에는 종학교수관을 종학박사로 개칭하고 정원을 2인 더 늘려 6인으로 하고 동·서반 3품 이하 6품 이상이 겸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10년 뒤인 세종 25년 2월에는 다시 4인을 늘려 종학박사는 10인이 되었으나, 세조 2년(1456) 4월에는 다시 2인이 줄어 8인이 되었다. 이 때의 종학박사는 비단 성균관 학관뿐 아니라 집현전 녹관이 겸대하기도 하고, 일부는 군직으로 겸대하게 하기도 하였다.78)

그러나 종학 교관의 타관 겸대는 종친사환의 금지와 함께 종학교육을 부진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세조는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종친에게도 사환의 기회를 확대하고, 세조 12년 정월에 종학의 겸박사제도를 없애고 導善(정4품) 1인, 典訓(종5품) 1인, 司誨(정6품) 2인 등 4인의 전임교관을 두어교육에 전념토록 하였다.79) 이것은 세조가 관료세력을 누르고 왕실 중심의 강력한 통치체제를 확립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세조가 죽은 직후인 예종 원년(1469) 7월에는 도선은 성균관 사성이, 전훈과 사회는 성균관 사예·직강·전적이 겸대하는 것으로 환원되었다.80) 그리하여 《경국대전》에도 이대로 법문화되었다.81)

## 4) 잡 학

## (1) 10학의 설치

조선왕조는 집권적 관료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각종 관학을 설치하였는데 10학이 그것이다. 10학은 儒學·武學·譯學·醫學·陰陽學·算學·律學·畵學·道學·樂學 등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전문관리를 양성하던 조선시대의 관학이었다.

10학 중에도 유학이 가장 우위에 있었다. 조선왕조는 사대부들이 통치하던 유교국가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학은 성균관·4학·향교 등 별개의 교육

<sup>78)</sup> 金成俊, 위의 글, 359~362쪽.

<sup>79)</sup> 金成俊, 위의 글, 362쪽.

<sup>80)</sup> 金成俊, 위의 글, 363쪽.

<sup>81)《</sup>經國大典》 권 1, 吏典 京官職 宗學.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양반들이 입속하는 유학과 무학을 제외한 나머지의 제학은 잡학이라 하여 천시되었다.

조선왕조의 건국과 더불어 우선 10학 중 유학과 병학(무학)·율학·자학·역학·의학·산학 등 6학이 설치되었다. 유학은 국가의 지배사상으로서 별도의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유신들은 유학을 다른 제학과 구별할 것을 주장하였다. 유학이 포함되어 다른 잡학, 특히 악공천예들과 더불어 四仲朔取才를 치룬다는 것은「尊儒待士」의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대부들의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태종은 유학을 6학 중에 포함시키라고 하였다. 태종은 유학의 三館考講法조차 없앤다는 것은 10학 중의 하나를 없애는 것이요. 吏科・陰陽科・譯科와 같은 제과는 천예가 맡는 것이 아니며 천예가 맡는 악학이 비록 10학 속에 포함되어 있으나 맡은 바 업무가 다르니 유학을 10학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태종 6년(1406)의 10학은 국가의 하급관리를 양성・선발하는 취재교육으로서 전통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10학은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 편성이 달라지기도 하였는데 《경국대전》에는 유학・무학・역학・의학・음양학・산학・율학・화학・도학・악학 등이 10학에 포함하게 되었다.

그런데 10학 중에서 유학과 무학은 양반들이 입속하였고, 나머지 8학은 잡학이라 하여 기술관이 담당하였다. 8학 중에서도 악학의 樂生·樂工, 화학의善書書·善繪·繪史 등은 천예들도 종사할 수 있는 잡직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10학 중에는 양반들이 종사하는 유학·무학과, 기술관들이 종사하는 역학·의학·음양학·율학·산학·화학·도학·악학 등이 있었으며 그 중화학·도학·악학에는 양인 및 천인이 종사할 수 있었다.

## (2) 잡학 교육

잡학 교육은 중앙에서는 해당 관아에서, 지방에서는 지방관부에서 실시되었다. 잡학생도의 총원은 경·외 유학생도의 총원인 15,550인의 43.32%가 되는 6,736인이었다.82) 이것만 보아도 조선시대의 교육은 유학교육이 중심이었

<sup>82)《</sup>經國大典》 권 1, 吏典 外官職條에 府 4, 大都護府 4, 牧 20, 都護府 44, 郡 82,

고 잡학 교육은 부차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술직<sup>83)</sup>이 국가운영에 꼭 필요하였기 때문에 잡학교육을 도외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조선시대의 지배층이 유교교양을 바탕으로 하는 유자들이었기 때문에 기술학을 잡학으로 대우하여 천시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면 어떠한 부류들이 잡학 생도가 되었는가. 이것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신라 말에는 일부 6두품 귀족들이 잡학에 종사하였고 고려시대에는 양반 자제들도 잡학을 배웠다. 그러나 고려 말 조선 초기부터 잡학은 천시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초기만해도 양반 자제들도 잡학에 입속하였다. 그러나 잡학은 점차 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 까닭은 첫째로, 유교의 기예에 대한 관념적인 차별의식 때문이었다. 유교에서는 「君子不器」라 하여 유자는 세부적인 전문기예에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董越의《朝鮮賦》에서도 "兩班子弟 止許讀書 不習技藝"라 하여 조선의 양반유자들이 기예를 천시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로, 조선 초기 지배신분의 양분화로 생긴 결과이기도 하다. 조선 초기에는 지배신분이양분화하여 상급 지배신분층인 양반은 정책입안에 종사하고, 하급 지배 신분층인 중인은 행정실무나 각종 기술직에 종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술관에대한 처우가 격하되었다. 기술관에게는 체아직을 주고 체아직에는 職田조차주지 않았던 것 등이 그것이다. 셋째로, 기술직에 종사하면 門地가 낮아져양반가문과 통혼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기술관은 기술직을 세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양반 자제들은 기술직을 기피하였다. 따라서 양반 자제들은 잡학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였다.

양반 자제들이 잡학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자 양반의 庶孽이나 양반에는 미치지 못하고 양인 중에 넉넉한 자들이 여기에 입속하게 되었다. 문・무관 2품 이상의 첩자손들이 잡학에 들어가 기술관이 될 수 있었으며,850 모자라는 경우에는 교생, 향리의 3정 1자, 지방의 역・의・율생도 중에서 선상하도록 하였다.

縣 75를 기준으로 생도수를 산출한 것이다.

<sup>83)</sup> 雜職이라고도 하였으나 賤隷들이 담당하는 流外職인 잡직과는 구별된다.

<sup>84)</sup> 李成茂, 앞의 글, 202~203쪽.

<sup>85)《</sup>經國大典》 권1, 吏典 限品敍用.

校生은 본래 양반 자제들도 입속하게 되어 있었으나 15세기 후반부터는 이미 양인 자제들이 군역을 피하기 위하여 많이 입속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는 安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額內生은 양인 자제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들은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잡학 생도로 歲貢되는 길을 택하기도 하였다. 잡학생도에는 중인이 입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생이나 향리 자제라고 해서 누구나 잡학생도로 세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넉넉하고 똑똑한 교생이나 세력있는 향리 자제만이 여기에 세공될 수 있었던 것이다.86)

잡학에는 문신・생원・진사 등 양반이 입속하는 習讀官이 있었다. 습독관은 유직자를 「講肄官」, 무직자를 「학생」이라 불렀다. 양반 자제들이 잡학에들어가는 것을 꺼려 침체하게 되자 이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이 제도를 둔것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습독관의 수는 漢學 30인, 醫學 30인, 東文 20인, 天文學 10인이었으나 다른 분야에도 있었던 것 같다. 무직자는 매일 상근하였고 유직자는 매월 10~15일만 해당관청에서 공부하도록 하였다. 습독관에게는 여러 가지 특전이 주어졌다. 丘史를 넉넉히 주고, 군직체아를 주며, 성적이 우수한 자는 현관에 임명하고 생원・진사에게는 習讀仕日을 성균관원점으로 간주해 주는 것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잡학에 대한 천시 관념때문에 양반 자제들이 습독관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임명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려고 애썼다. 그리하여 습독관제도가 잡학진흥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였다.87)

잡학생도들은 중앙의 소관 아문이나 지방관부에서 전문서와 《경국대전》 등을 교육받았으며 일강·월강 성적은 연말에 종합하여 취재의 자료로 삼았다. 지방의 잡학 생도는 한두 명씩 중앙관아에 뽑혀 올라와 교육을 받고 내려가는 제도가 있었으며 의·역·악 3학 생도는 명에 유학을 보내려 하기도하였다. 그러나「遣子弟入學」은 명이 정보가 유출된다하여 반대하였기 때문에 좌절되고 말았다.88)

<sup>86)</sup> 李成茂, 앞의 글, 204~205쪽.

<sup>87)</sup> 李成茂, 위의 글, 205~206쪽.

<sup>88)</sup> 李成茂, 위의 글, 207쪽.

#### (3) 잡학 교관

잡학 교관은 종6품인 교수와 정9품인 훈도가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 문신이나 생원·진사가 맡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들이 달가워하지 않자 한학교수 2인, 의학교수 1인을 빼고는 모두 기술관이 교관직을 담당하게 하였다.

지방의 잡학훈도는 중앙에서 파견되는데 임기는 30개월이었고 察訪‧審藥・檢律・驛丞과 마찬가지로 무록관이었다. 역학의 경우는 地方譯學院이 있는 도에 역학훈도 자리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의학의 경우는 태조 2년 (1393)에 계수관마다 醫院을 세워 의학교수를 두었는데 태종 16년(1416)에 醫學敎諭로 고쳤다가 뒤에 혁파되었고 유학교수・훈도가 이를 겸임하게 되었다.89)

#### 5) 향 교

#### (1) 향교의 설치와 교육

鄕校의 연원은 삼국시대로 소급되는데 신라에는 淸州 등지에 지방학교가 있었다고 한다.90) 그리고 고려가 건국되면서 태조 13년(930)에 西京에 학교를 설치하였으며 성종 8년(989)에 12목을 비롯한 여러 주・부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한 바 있었다.91) 이로 미루어 보아 고려 초기부터 지방 학교인 향교가 형식적이나마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의 지배사상이 불교였는 데다가 군현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크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예종・인종대에 문운이 일어나면서 특히 인종대부터는 향교기록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무신정권이 들어서자 그나마 부진해졌다. 그 후 공민왕대의 문교부흥운동과 군현제 정비의 추진으로 향교 설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곧이어 몰아닥친 내우외환으로 1군

<sup>89)</sup> 李成茂, 위의 글, 208쪽.

<sup>90)</sup> 金光泆、〈羅末麗初의 地方學校問題〉(《韓國史研究》7, 1972), 130쪽.

<sup>91) 《</sup>高麗史》 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1향교가 이룩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sup>92)</sup> 그러므로 1군 1향교의 설치는 인구와 토지비례에 의한 군현제가 갖춰진 조선 초기까지 기다려야만 되었다.

태조는 그의 즉위교서에서 이미 외방 향교의 설치를 강조한 바 있었으며 (193) 태종은 「修明學校」를 守令七事(4)의 하나로 넣어 그 성과 여부에 따라 수령의 포펌 기준으로 삼았다. 조선 초기에는 중앙에서 수령과 교수관을 파견하여 이들에게 향교의 설치와 향교 교육을 진흥시킬 책임을 지웠다. 뿐만아니라 지방의 토호를 비롯한 유지들도 향교 설치에 공현하였다. 다시 말하면 향교의 설치는 수령·교관·지방유지 3자의 협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군현에 향교가 일시에 다 설치된 것이 아니라 지방의 여건에 따라 빨리 설치된 곳도 있고 늦게 설치된 곳도 있었다. 처음에는 학사를 지을 경비가 없어 불사를 빌려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국가에서는 불교사찰을 혁파하는 대신 향교를 세우도록 하였으며 혁파된 사찰의 토지와 노비의 일부를 향교에 지급하기도 하였다. 태종 13년(1413)에 향교에 일제히 지급한 토지와 노비 등은 혁파된 사찰의 토지와 노비였다. 이와 같이 「수명학교」를 수령 7사의 하나로 넣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향교 설치를 독려한 것은 국가의 지배사상을 불교에서 유교로 바꾸는 정책의 일환이었다.(55)

향교 교육은 명륜당에서 실시되었다. 향교에는 공자를 모시는 대성전과 선현을 봉안하는 東·西廡로 구분되는 문묘와 향교 생도의 講學所인 명륜당과그들이 기숙하는 동·서재로 구성되는 학사가 있었으며 그 이외에 제사를 관장하는 典祀廳 등이 있었다. 향교 생도들은 중앙 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공자와 선현을 모신 곳에서 유교예절과 유교경전을 익혔다.

향교 생도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들로서는 4서 5경 이외에 《소학》·《효 경》·《성리대전》및《삼강행실》등 초등교과서와《근사록》·《가례》등 유

<sup>92)</sup> 朴贊洙,《高麗時代 教育制度研究》(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91), 143~197\.

<sup>93) 《</sup>太祖實錄》권 1. 태조 원년 7월 무신.

<sup>94)</sup> 守令七事는 存心仁恕・行己廉謹・奉行條會・勸課農業・修明學校・賦役均平・決訟明允이었다(《太宗實錄》 권 12, 태종 6년 12월 을사).

<sup>95)</sup> 李成茂,〈朝鮮初期의 鄉校〉(《漢坡李相玉博士回甲紀念論文集》, 1970), 235~239等.

학서,《통감》·《송원절요》등 사서,《文選》·《楚辭》·《柳文》·《韓文》·《고 문진보》등 문학서가 쓰였으며 莊子·老子 등 제자백가서는 금서로 되어 있 었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소학》·《가례》·4서 5경이 주된 교과서였다. 소학은 이미 權近의 勸學事目에서 관학 일반의 필독서로서 권장된 바 있었 다.97) 소학은 經史子集 중에서 유교사회의 도덕규범이 될 만한 어구들만 골 라 놓은 입문서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학은 성균관 입학시험, 생원시의 先修科目으로 되어 있었다.%) 소학의 정신은 學令의 기초로 반영되어 있었던 것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향교의 교과과정은 학령에 준하였다. 다만 항교의 학령은 성균관의 학령을 약간 손질하여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었다. 향교의 교육평가도 강경과 제술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제술에 역점을 두었던 고려시대와는 달리 강경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강경은 매일 실시되는 일강이 있었는데 비하여 제술은 수령이 직접 한달에 望前・望後에 한 번씩 두 번 실시되는 月課가 있었을뿐이었으며 우등자는 월말에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戶役(잡역)을 덜어주고 교육의 성과 여부에 따라 교관을 인사할 때에 참고하였다. 99) 그리고 매년 6월都會에는 강경・제술시험을 보여 우등자를 생원・진사시 복시(회시)에 직접 응시할 수 있게 하는 특전을 주었다. 100) 이 때에 문관출신 교수, 閑官 중 3인이 시관이 되었으며 경상・전라・충청도는 각 5인, 나머지 도는 각 3인씩을 뽑았다. 또한 생도 중에 품행이 단정하고 학문이 해박하며 시무에 통달한한 두 사람을 관찰사를 통하여 천거하여 임용하기도 하였다. 101)

한편, 일강·월과의 성적이 좋지 않은 자는 역·의·율생이나 書吏로 세공 되었다. 유학을 연마시키기 어려운 자들을 잡학생도로 편입시킨 것이다. 특히 왜학생도의 경우는 바다를 건너 멀리 왜국에 왕래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

<sup>96)《</sup>慶北鄉校資料集成》1, 慶州學令(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1992), 26~30\,\(30\)

李成茂, 위의 글, 239쪽 참조.

<sup>97) 《</sup>太宗實錄》 권 13, 태종 7년 3월 무인.

<sup>98)</sup> 위와 같음.

<sup>99)《</sup>經國大典》 권 3, 禮典 獎勸.

<sup>100)</sup> 위와 같음.

<sup>101)《</sup>慶北鄉校資料集成》1, 慶州學令.

원자가 없어 정원 30인 중 연해의 향교생도 중에서 세공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세조 8년(1462) 4월에 제정된 倭學勸勵條件에서는 경상도 연해와 여러고을 향교에서 연소한 교생 20인을 올려 보내게 하였다. 그리고 3년마다 교생 중 나이 많고 재주없는 자는 서리로 세공하기도 하였다.102) 교생이 기술관이 되거나 서리가 되는 것은 양반에게는 신분이 하락되는 반면에 양인에게는 신분이 상승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반은 교생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대신 양인은 교생이 되는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생은 점차 양인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향교 교육은 날이 갈수록 부실하게 되어 갔다. 이에 향교는 지방의 유학교육 기관이라기 보다 군역을 피하거나 기술관·서리 등중인이 되기를 원하는 양인들로 가득차게 되었다. 건국 초기에 활발했던 향교 교육은 크게 부진하게 된 셈이다.

군역을 면제받으러 몰려드는 양인 교생들을 줄이고 군액을 늘려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세조대에는 校生落講定軍法을 마련하여 강경시험에 떨어진 교생은 무조건 군역에 충당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군 교생의 정원을 정하여 부·대도호부·목은 50인, 도호부는 40인, 군은 30인, 현은 15인으로하고 그 이외의 교생은 군역에 충당되었다. 교생의 연령은 40세 미만으로 정하고 이들 중에도 재주가 없는 자는 충군하도록 하였다. 연령 제한은 그 후더욱 강화되어 15~20세로 한정하기도 하였다.103) 그러나 낙강정군의 충격이큰 데다가 교생들의 불평이 늘어가자 성종 2년(1471) 6월에는 각 향교의 정원을 늘여 부·대도호부는 90인, 도호부는 70인, 군은 50인, 현은 30인으로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 되었다. 단 16세 이하의 童蒙은 군역과 관계가 없으므로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다.104)

## (2) 향교의 문묘

향교에도 학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기능과 문묘를 중심으로 하는 교화기 능이 분화되어 있었다. 향교의 교육기능은 국가의 경비지원 의지가 약화되

<sup>102)</sup> 李成茂, 앞의 글, 247쪽.

<sup>103)</sup> 李成茂, 위의 글, 248쪽.

<sup>104)</sup> 李成茂, 위의 글, 249~250쪽.

자 교생 낙강정군, 향교 교관의 질적 저하 등으로 인한 양반들의 외면 때문에 날로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문묘를 중심으로 한 교화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 갔다. 지방 양반들이 향교를 향촌교화의 중심기관의 하나로서 계속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왕명을 받아 부임하는 수령도 到任・遞任 때는 먼저 문묘에 배알하여야 하였으며 석전제의 현관이 되어야만 하였다. 과거 급제자들도 고향에 돌아와 家廟에 告由하기 전에 문묘에 먼저 배향하게 되어 있었다. 지방 양반들도 교생이 되는 것은 기피하면서도 靑衿錄을 만들어 그들만이 입록하고 향교제향을 독점하여 왔다. 지방 양반들은 留鄕所의 鄕案과 향교의 청금록을 통하여 향촌사회의 지배권을 장악하여 온 것이다. 문묘에서 행해진 석전제・삭망분향제・위안제・환안제뿐 아니라 社稷祭・城隍祭・祈雨祭・勵祭・養老宴・鄕飲酒禮(10월)・鄕射禮(3월 3일, 9월 9일)・投壺禮 등이 향교에서 양반들의 주도 아래 아울러 행해졌던 것도 그때문이었다.105)

향교 문묘에 봉안하는 선현의 범위는 군현의 격에 따라 달랐다.《大典續錄》에 의하면 개성부와 도의 계수관은 성균관 문묘와 배향인물이 같았으나, 주・부・군은 兩應 제현을 봉사하지 않았고, 현은 宋儒 周敦頤・程顥・程頤・朱熹와 薛聰・崔致遠・安珦 만을 배향하였다. 그 후 숙종 40년(1714)에 張載・邵雍이 성균관 문묘에 배향되면서 개성부와 도의 계수관에 한하여 배향하던 것을 영조 22년(1746)에는 이들을 주・군・현에도 다 배향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의 향교는 초기에 비하여 교육기능보다 제례기능이 강화되었다. 이것은 주자학의 정착과 향교를 통한 지방 양반들의 대민교화의 필요성이 늘어난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민교화의 중심지는 문묘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따라서 조선 후기 향교의 존립 의미는 교육기능보다는 오히려 제례기능을 통한 향촌지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하였다.106)

향교의 제례가 강화되자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기도 하였다. 가중되는 제

<sup>105)</sup> 尹熙勉,《朝鮮後期鄉校研究》(一潮閣, 1990), 199쪽.姜大敏,〈韓國의 鄉校研究》(慶星大出版部, 1593), 161쪽.

<sup>106)</sup> 尹熙勉, 위의 책, 201~202쪽.

수의 조달을 위하여 지방민을 착취하거나 執事校生의 수를 늘려 이들로부터 군역을 면제해 주는 대신 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금록에 등재된 양반 유생의 수가 늘어나고 이들은 모두 제례에 참 석할 수 있었으므로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도 다른 하나의 폐해였 다. 더구나 空名帖의 남발, 納粟補官 등으로 新鄕의 수가 늘어나고 이들도 청금록에 들기를 원하고 제례의 校任이 되거나 참여하고자 하여 신・구향 간에 鄕戰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이에 향교는 모름지기 鄕權의 쟁탈지로 바 뀌어 가게 되었다.107) 향전은 신ㆍ구향 간의 대립뿐 아니라 당쟁의 성격을 띠고 행해지기도 하였다. 향교는 공론의 소재지로서 통문을 발하여 당론에 입각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이들의 여론 수렴은 儒會를 통하여 정했다. 유회에서는 교생의 입속ㆍ교임의 선출, 향교 건물의 관리, 향촌의 교화 등 향내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漸文義理・討逆・정부정 책 비판 등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문제를 다루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통 문・상소를 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校保・除役村을 두거나, 집사 교 생에 대한 뇌물수수. 제수를 빙자한 지방민의 착취 등 지방사회의 이권집단 으로 탈바꿈해 가게 되었다. 따라서 향교는 지방 양반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교두보로서 이용되었다.108)

#### (3) 향교의 교관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유교정치 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군현마다 향교를 세우고 향교마다 교관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 태조는 즉위하자 곧 각 도의 유학교수관을 본직에 머물러 있게 하고 교관이 없는 곳에는 70세 이상된 한 량관들을 향교 교도로 임명하여 수령으로 하여금 그들의 득실을 보고하도록 하였다.109) 그러나 태종조에 이르러서는 중앙에서 향교 교관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그 우선적인 대상으로는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성균관・교서관에 분관되어 있는 三館權知들이었다. 3관 권지는 입관 순서에 따라 각관의 유학

<sup>107)</sup> 尹熙勉, 위의 책, 204~208쪽.

<sup>108)</sup> 尹熙勉, 위의 책, 203~217쪽.

<sup>109)</sup> 李成茂, 앞의 글, 242쪽.

교수관에 임명되어 관찰사의 감독과 포펌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모든 군현에 문과 급제자인 3관 권지를 한꺼번에 파견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우선주·부에만 3관 권지를 교수관으로 파견하고 나머지 군현에는 그 지방에서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아 學長이라는 직책을 주어 향교 생도를 가르치게하였다. 그러나 이들 학장에게는 녹봉이 지급되지 않아 질좋은 교관을 구할수가 없었으며 이들마저 교육보다는 피역에 목적이 있어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다.110)

대종 16년(1416)에는 전국의 군현을 재정비하여 주·부를 비롯한 큰 군현에는 문과출신인 교수관을, 그 이외의 군현에도 참외 문신인 훈도관을, 생원·진사를 교도로 임명하여 향교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생원·진사들이 교도가 되는 것을 기피하거나 자기들의 승진을 위한 도구로여기자 세종이 즉위하면서 일시 교도직을 없앴다가 다음해부터는 500호 이상 되는 군현에 한하여 교도직을 두기로 하였다. 이것은 조선 초기의 향교교도의 보임이 하나의 정식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때의 향교 교관이 될수 있는 사람은 문과 급제자(교도관), 참외 문관(훈도관), 생원·진사(교도), 지방 지식인(학장) 등이었다. 한편 생원·진사들이 교도직을 출세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도 취재시험을 보이기도 하고 교도가 될수있는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이들에게는 원점에관계없이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주기도 하고 면역의 특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문과 출신자들이나 생원·진사들이 향교 교관이 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교관직은 寒職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문과 회시의 초장 입격자도 교관에 임명하고 咸興·安州 이북의 양계 교도에게는 부임즉시로 加資하며, 종래에 30개월이었던 거관 가자기간을 15개월로 단축하고, 학장에게도 녹봉을 지급하고, 성과있는 학장에게는 산관직을 주는 등의 조처를 취하였다. 반면에 이유없이 3개월간 부임하지 않는 자는 杖 100에 파직하여 서용하지 않고, 辭避者는 3년 동안 서용하지 않기로 하였다.111)

<sup>110)</sup> 李成茂, 위의 글, 242~243쪽.

<sup>111)</sup> 李成茂, 위의 글, 244~245쪽.

그 후 성종대에 이르러 향교 교관의 명칭은 교수(職高 문과출신자)·훈도 (秩卑 문과출신자)·교도(생원·진사·유학)·학장(기타)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향교 교관은 한직이어서 문신 좌천자들의 유배직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향교 교관은 무자격자·무능자로 채워지게 되었다.112)

《경국대전》에 의하면 전국의 교수는 72인, 훈도는 257인, 합계 329인으로 이 인원수는 전국의 군현수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명목상으로는 부·목·대도호부에 교수, 군현에 훈도 1인씩이 파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문과 출신자들이나 생원·진사들이 교관이 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자격있는 사람을 뽑아 쓰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교관의 자질부족 문제가 향교 교육에 심각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었고, 자질은 부족하더라도 녹봉도 제대로주지 못하는 학장을 두어 교육에 임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향교 교육이 쇠퇴하고 교관도 천시되어 임명되기를 꺼려하자 17세기 이후에는 국가에서 교관을 파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향교는 청금록에 입안된유생대표인 교임(儒任·齋任·執綱)들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향교의 교임에는교장(都有司·齋長·齋首·首任) 1인, 掌議(校貳·次任) 1인, 色掌(任末) 2인이 있었다. 양반들의 東齋와는 별도로 西齋에는 교생 가운데서 堂長(堂掌)을 두어향교의 수직과 제향의 집사를 담당하고 동재 교임을 돕게 되어 있었다. 서재재임 이외에 또 典穀(典任)을 두어 향교재정을 출납하게 하였다. 교임은 自代하거나 三望으로 유림들이 선출하여 수령의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113)교임들은 훈장을 임명하여 향교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일정한 기간만모여서 시험을 보게 하였으므로 향교의 교육기능이 약화되어 유명무실하였다.1140 향교가 향혼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양반출신의 청금록 유생들에 의한지방교화의 중심지로 되고 양반출신이 아닌 교생들은 군역을 피하는 것이목적이었기 때문에 향교의 교육기능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의 향교는 교육기능을 상실하고 교화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흘러가게 되었다.

<sup>112)</sup> 李成茂, 위의 글, 245~246쪽.

<sup>113)</sup> 尹熙勉, 앞의 책, 152~156쪽.

<sup>114)</sup> 尹熙勉, 위의 책, 153쪽.

#### (4) 교생의 신분

조선사회는 신분사회였으므로 관학에서 유교교육을 받아 과거를 통하여 관료가 되는 데는 당시의 지배층이던 양반이 가장 유리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에는 양반 자제들이 많이 향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다. 국가에서 도「與學校」를 수령 7사의 하나로 넣어 향교의 건립과 향교 교육을 장려하였으므로 양반 자제들이 향교에 들어갈 만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향교에 대한 관심이 줄고 향교의 시설이나 교관들의 수준이 떨어짐에 따라 양반 자제들은 향교에 들어가기를 꺼려했다. 이들은 향교에 들어가 양인 교생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싫어하였다. 국가에서는 전적으로 국비로 지급하는 관학에 유교 교육을 전담시키기 보다는 양반들의 서재나서당 같은 사학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한편 양반들은 그들의 사학에서 자기들만이 따로 과거준비를 교육시킴으로써 일반 양인들보다 관료가 되는 유리한 고지를 오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래는 관학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과거시험을 사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에게도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수 있게하였다. 이 때문에 명·청의 제도처럼 학교시험의 최종시험이 곧 과거시험이되도록 하는 제도는 실시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학교제와 과거제가 일직선상에 연결되어 있지 않게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115)

교생은 출신신분에 따라 上額・中額・下額으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상액은 액내로 靑衿錄・赴擧案에 수록되고 중・하액은 校生案에 수록된 사람들이었으나 뒤에는 액내생이 교생으로 채워졌다.116) 양반들이 교육을 받을 생각도 없으면서도 굳이 향교 청금록에 등록하고자 한 것은 학교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으면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한 규정과 확고한 지방 양반의 지위를 인정받아 향촌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동재유생에는 정원이 없었다.117) 청금록에 등재되는 동재유생은 춘추 석전제 때에 유생들이 내외 현족자 중 유교경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자를 천거하게 되어 있었다. 이 때 경전

<sup>115)</sup> 李成茂, 앞의 글.

<sup>116)</sup> 尹熙勉, 앞의 책, 10~20쪽.

<sup>117) 《</sup>大典會通》 권 3, 禮典 諸科.

시험을 보여 3하 이상의 성적을 받은 자에 한하여 뽑았다. 따라서 청금록은 향안과 함께 양반자격을 보증받는 중요한 문적이 되었다. 다만 향안은 내외현족의 여부만을 따지는데 반하여 청금록은 현족 중에서도 유교지식의 유무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장차 과거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었으므로 청금록이 향안보다 어느 의미에서 더욱 중요하였다.118)

교생의 수는 《경국대전》에 군현 등급에 따라 부·대도호부·목은 90인, 도호부는 70인, 군은 50인, 현은 30인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지켜지지 않고 군현의 교생수가 수백·수천·수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군역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는 邑誌나 戶籍臺帳에 규정된 교생수만 적어 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법적으로 교생이 된 사람들이 많았다. 액내교생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서재교생 중에서 액내생을 정하였다. 그러나 군역을 피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백의교생의 수는 제한이 없었다.119》) 국가에서도 교화를 목적으로 체제에 순응하는 백성들을 만들고자 액외교생의 존재를 묵인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기술직이나 書吏로 진출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 주기도 하였다.120〉 국가보다도 지방관아나 향교에서는 돈을 받고 액외교생을 시켰으므로 수령의 치부수단이나 향교재정의 보완을 기할 수 있었다. 이들을 願納校生이라 하였다. 액외교생이 불법적이면서도 없애지 못하였던 것은 이때문이었다.121〉

액내교생은 평민의 상층부와 서얼·서족 등 중인층에 속하였고 그 신분은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16세부터 60세에 除役될 때까지 향교의 여러가지 업무를 맡았으며 군역과 잡역이 면제되었다. 액내교생은 정원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別監・農有司・鄕任・風憲・군관 등을 맡을 수도 있었다. 교

<sup>118)</sup> 尹熙勉, 앞의 책, 27~28쪽.

<sup>119)</sup> 향교에서는 守直이나 각종 祭禮의 執事, 兵營에 兵符傳達, 국가의 경사 때 赦 文(赦免令)을 監營에 전달하는 일, 赦文을 읽는 일, 勅書의 보관과 감시, 香祝의 보관 養老宴의 시중, 戶籍臺帳의 淨書 등 잡일을 맡기기 위하여 額外校生을 뽑았다. 이들 日直校生・執事校生・兵符費去校生・赦文校生 등은 향교의유지와 관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존재들이었다(尹熙勉, 위의 책, 52~58쪽).

<sup>120)</sup> 尹熙勉, 위의 책, 109쪽.

<sup>121)</sup> 尹熙勉, 위의 책, 121·127쪽.

생의 입교는 교임의 차출, 유희에서의 심사, 관에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교생안(西齋案)에 입안되었다. 교생안은 청금록이 없어진 19세기 이후까지도 계속 존속되었다. 액외교생은 평민으로 구성되었으며 군역이 면제되고 잡역은 본인만 면제되었다.

#### (5) 향교의 경제기반

향교를 운영하는 데는 일정한 재정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재정은 지방관아의 지원이나 鄕校田의 수입, 향교노비의 신공 등으로 충당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적어도 그러하였다.

향교전은 태종대에 처음으로 지급되었다. 성균관·4학·향교의 學田은 대체로 혁파된 사원노비로 충당되었다. 즉 태종 6년(1406) 3월에는 전국의 사원중 12종 242사만 남기고 나머지 사원의 토지와 노비는 모두 국가에 귀속시켜 軍資田과 典農寺의 노비로 삼고 여기에서 일부를 향교에 할당했던 것이다. 이것은 불교사원의 경제기반을 유교의 교육기관에 옮김으로써 유불 교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 조처이다.122)

향교전에는 유토전과 무토전이 있을 수 있는데 유토전은 향교노비나 향교 촌의 양인이 경작하여 소작료(花利 또는 禾利)를 내는 토지요, 무토전은 실제 토지는 지급하지 않고 일정한 토지의 양에 해당하는 什一租(생산물의 10분의 1)만을 관에서 지급하는 토지이다. 태종조의 향교전은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었다. 노비의 신공은 일반노비의 신공과 마찬가지로 2필이었다.

향교전과 향교노비가 각관 향교에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그대로 유지된 것 같지는 않다. 향교전과 향교노비가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간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유력한 군현에는 토지와 노비가 많고 무력한 군에는 토지와 노비가 적거나 없게 되었다. 이에 전국 향교에 학을 지급하는 문제가 논란되어 성종 15년(1484) 12월에 성균관에 학전 400결, 4학에 각 10결, 각급 향교에는 군현 등급에 따라 10~5결씩의 학전이 지급되었다.123) 이것은 《속대전》에 성균관에 400결, 4학에 각 7결, 군현 향교에 각 5결

<sup>122)</sup> 李成茂, 앞의 글(1970), 250쪽.

<sup>123) 《</sup>大典續錄》 권 2, 戶典 諸田.

씩 급하는 것으로 재조정되었다.124) 이 때의 학전은 물론 수조지였다. 그러한 학전 규정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향교노비는 태종 17년(1417)에 각급 향교에 할당된 수가 그대로 《경국대전》에 반영되어 부에 30인, 대도호부·목에 25인, 도호부에 20인, 군현에 10인씩 배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大典會通》까지 그대로 존속되었다.125) 이들 향교노비는 좀처럼 면천될 수 없도록 향교에 긴박되어 있었다.126) 그러나 향교노비도 향교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감소되어 향교운영이 잘되지 못하였다. 타인의 침탈·도망, 奴良妻所生從母從良法의 실시, 불법적인 면천·매매·속량 때문이었다. 각급 향교에서는 모자라는 노비를 관에 더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양인이나 사노비를 雇立할 수밖에 없었다.127)

각급 향교에서는 교보를 설정하여 재정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세조 5년 (1459)에 保法이 생긴 이후 납포제가 일반화되어 군보 이외에 각종의 보가 생겨나게 되었다. 교보도 그 중의 하나였다. 교보는 처음에 정원이 없었으나숙종 39년(1713)에 서원의 원보가 賜額書院에 20인, 未賜額書院에 10인으로 정해지면서 40인으로 정하여졌다. 교보는 매년 춘추로 1냥씩 2냥을 향교에 내게 되어 있었다. 교보는 京案에 등록된 군액이 아니고 군현에서 사사로이정한 邑軍이었다. 군현에서 교보를 책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保錢을 향교에 진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除役村인 향교촌(校村 또는 校下村)이 군현마다 있었다. 향교촌은 군역·잡역이 면제되는 대신에 향교의 수직·수리·사환 등의 일 을 맡아보았다.

향교재정을 보충하는 방법으로는 일정한 기금을 마련하여 그 이식을 활용하는 殖利錢이 있었다. 이러한 식리전은 향교뿐 아니라 書院・司馬所・養士齋・鄕約・洞約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 식리전은 고율의 이자를 받는

<sup>124) 《</sup>續大典》권 2, 戶典 諸田.

<sup>125) 《</sup>經國大典》 권 5, 刑典 外奴婢.

<sup>《</sup>大典會通》 권 5, 刑典 外奴婢.

<sup>126)《</sup>受教輯錄》 권 5, 刑典 公賤.

<sup>127)</sup> 尹熙勉, 앞의 책, 231~239쪽.

고리대(1년에 1할 이상 5할까지 다양함)로 운용되었다. 식리전의 본전은 관에서 마련해 주기도 하고, 향교 자체에서 마련하기도 하였다. 식리전은 집안 형편이 넉넉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보통이었다.128)

그리고 각종 제례의 제수를 비롯한 제기·제복, 향교의 중건·중수비를 관에서 보조해 주었다. 향교전·향교노비·교보·식리전도 관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음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향교는 군현의 주관 아래 운영되는 군현의 학교였던 것이다.129)

그러나 향교는 군현의 것만은 아니었다. 지방 양반들의 중요한 활동무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儒錢 거두어 향교 재정을 튼튼히 하고자 하였다. 양반뿐 아니라 향교(서원・향청・작청에서도)마다 屬寺가 있어서 향교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종이・신발 등)를 헐값에 공급하게도 하였다. 속사뿐 아니라 店村에서도 鐵器・柳器・瓮器・器血・紫木・黑炭・灰石 등을 헐값에 공급하게도 하였다. 또한 竹田・賜山・漁箭을 소유하여 그 수익을 향교재정에 보태 쓰는 경우도 있었다.130)

이상의 향교수입 중 가장 큰 것은 학전·교전의 수입이며 교보·제역촌· 식리전·官補는 보완적인 수입이었다. 지출은 제례비용이 대종을 이루었으며 나머지는 기타 잡비에 쓰였다. 관에서는 향교재정이 교육·교화에 집중적으 로 쓰이기를 바랐으나 지방 양반들은 향교를 그들의 향혼지배의 근거지로 운영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 향교재정의 출납은 교임이 수행하되 관에서 검 사하게 되어 있었다.[31]

## 2. 사 학

조선시대의 사학으로는 書齋와 書堂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이외에도 家

<sup>128)</sup> 尹熙. 위의 책. 251~256쪽.

<sup>129)</sup> 尹熙勉, 위의 책, 256~258쪽.

<sup>130)</sup> 尹熙勉, 위의 책, 259~263쪽.

<sup>131)</sup> 尹熙勉, 위의 책, 263~269쪽.

塾이 널리 유행하고 있었으나 공식적인 교육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려·조선 초기에는 서재와 함께 귀족들의 사학으로서 12도가 있었고 산사에서 공부하거나 마을의 鄕先生에게 공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산사 교육은 빛을 잃게 되었으며 향선생은 서재나 사당에 용해되어 갔다.

#### 1) 서 재

고려 말에는 사원·精舍와 아울러 개인농장에 개설된 서재에서 사학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 말에 중국으로부터 강남농법이 도입되어 농업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지방에 많은 농장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농장에는 서재가 설치되어 사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32] 더구나 고려 말에는 홍건적·왜구의 침입과 무신들의 정권쟁탈로 문사들이 지방의 농장으로은둔하는 경우가 많아 서재의 발달을 촉진하게 되었다. 고려말 문신·유사들의 號에 隱字가 많이 들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33] 이들 중에는 주자학을 신봉하고 이를 교육시키는 사람도 있었다. 吉再·安輔과 같은 사람들이그러하였다. 서재는 후·樹·軒·菴·室 등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34] 서재는 가숙의 다른 형태로서 발달한 사학이었다.[35]

이러한 서재는 조선 초기에도 널리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초에는 역불승유책의 일환으로 군현마다 향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서재의 師儒와 유생을 강제로 향교의 유학교수관이나 교도로 임명하였다. [136] 이것은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본인의 뜻과는 달리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고 생업을 버려야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태종 7년(1407) 3월 권근은 권학사목을 만들어사학 서재의 사유들을 강제로 다른 군현의 교수로 데려가지 않도록 하고 오

<sup>132)</sup> 柳洪烈、〈麗末鮮初の私學〉(《青丘學叢》24, 1936), 92~95쪽.

<sup>133)</sup> 牧隱(李穡) · 圃隱(鄭夢周) · 陶隱(李崇仁) · 冶隱(吉再) 등이 그러한 예이다(위 와 같음).

<sup>134)</sup> 위와 같음.

<sup>135)《</sup>東文選》 권 76, 復齋記.

<sup>136) 《</sup>增補文獻備考》 권 202, 學校考 1, 太學 1 공양왕 원년 大司憲 趙浚 上疏.

히려 서재교육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바꾸었다. 137) 서재교육도 유교 진흥에 큰 몫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학도 관학과 아울러 보완적으로 유교 교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세종 조에서 사사로이 서재를 세워 생도를 교육하는 것을 권장하고 여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은 포상하였다. 138) 조선 초기의 서재는 서원·사당 등으로 불리웠으나 동명이칭에 지나지 않는다. 서재 이외에 독립된 교육기관은 아니지만가숙도 널리 유행하고 있었다. 가족이나 가문의 자제들을 집에서 초학교육을 시켜 서재나 사학 12도·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보통이었다.

#### 2) 서 당

학말 선초의 서재는 16세기 이후 士林의 성장과 향촌사회의 발달로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림의 근거지로서 서원이 발달하고 군현제의 정비로 향혼사회의 조직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서재는 道學과 과거준비를 목표로 하는 서원에 재편되는가 하면 賤庶를 가리지않고 교육하는 향혼의 소규모 초학 교육기관으로 분립하게 되었다. 서원에 부속된 書院書堂과 향촌의 독자적인 유학교육기관인 鄕村書堂의 성립의 그것이다. 서재가 신분적인 차별에 근거하여 양분화된 것이다. 그리고 조선왕조의 유교 교화정책이 향촌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교화의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산조 이후 급격히 쇠퇴해 가는 관학의교육기능을 사학이 대신하게 된 것도 서당 발달의 다른 하나의 이유였다. 이에 과거에는 서재·서원·서당으로 불리던 서재의 명칭도 사당으로 일원화되어 갔다. 서원이라는 명칭은 이제 학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사적인 유교 교육기관만이 아닌 도학을 추구하고 선현을 봉사하는 祠宇의 기능까지를 정하는 존재로서 재정립되었고 여기에 서당을 부설한 데 지나지 않았으며 향촌의 서당은 지배층만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서재와는 달리 향촌의

<sup>137) 《</sup>太宗實錄》 태종 7년 3월 무인.

<sup>138) 《</sup>世宗實錄》 권 2, 세종 즉위년 11월 기유.

하층민까지도 교육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재는 서당이라는 명 칭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서원은 자제를 교육하는 서재와 先師・先賢을 봉사하는 사은의 기능을 합쳐 놓은 것이었다. 서원이 서재(또는 서당)나 사우를 바탕으로 생겨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139] 16세기에 이르러 사람들에 의하여 조선의 주자학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 도학을 추숭하고 선현・선사를 봉사하는 그들의 새로운 근거지가 필요하였다. 양반 사람들은 향촌사회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원을 발생케 한 것이었다. 서원은 이들의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양반 사람의 집합체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16세기 이후의 서원은 과거의 서재적 성격의 서원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周世鵬이 중종 38년 (1543)에 처음으로 세운 白雲洞書院 이전에 세워졌다는 道川書院・川谷書院・道洞書院・百源書院・慕巖書院도 실상은 그 이후에 중창된 것이었다.[40] 물론 16세기 이후에 세운 서원도 주자의 白鹿洞書院의 예에 따라 건립된 것이었다.

서원에는 서당이 별설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서원은 양반 자제들이 수학하는 초학 교육기관이었고 도학과 학업이 목표였다. 양반 사람들은 그들의 세력을 이용하여 서원을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지원받는 기관으로 만들었다. 사액서원은 그러한 증표였다. 사액서원은 국가로부터 扁額과 아울러 토지·노비를 하사받았다. 마치 고려시대의 사원과 같은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였고 조건시대에는 유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되었을 뿐이었다. 사람은 국가의 正脈이요, 운영자였기때문에 그들의 집합체인 서원이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조선왕조의 정치는 사람의 여론정치였으므로 서원의 발언권은 대단하였다. 서원서당은 여론정치를 담당할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교육기관이었다. 조선왕조의 서원의 수는 594개에 이르게 되었고 그 중의 사액서원만도 264개에 이르렀다.

17세기 이후에는 향촌서당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17세기에 이르면 面里

<sup>139)</sup> 柳洪烈, 〈朝鮮에 있어서의 書院의 成立〉(《韓國社會思想史論攷》, 1980), 39쪽. 140) 柳洪烈, 위의 책, 98쪽.

制度가 정비되어 보다 소규모의 초학 교육기판이 필요하게 되었다. 향교가 군현단위로 하나씩 있었는데 비하여 향촌서당은 면·리를 단위로 여러 개가 있었다. 이미 명종 원년(1546) 6월에 제정된「學校事目」에서 향촌의 천서를 불문하고 들어갈 수 있는 향촌서당의 설치를 장려한 이후로 향촌서당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41) 향촌서당에서는 士庶童蒙을 대상으로《童蒙先習》・《類合》・《小學》등을 먼저 가르치고 점차 4서를 가르쳤다. 향촌 서당은 면·동·리의 향교 입학을 준비하는 校下學校로 운영된 것도 있고 그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었다. 洞書堂・同姓書堂(門中書堂)・個人私塾 등이 그것이었다. 양반이 자기집에 교사를 초빙하여 일족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고 리·동에서 공동으로 숙사를 마련하고 교사를 초빙하여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으며, 교사가 자기집에 숙사를 정하고 직업적으로 생도를 모아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다. 때로는 한 사람의 교사가 여러서당을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다. 대로는 한 사람의 교사가 여러서당을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다. 대로는 한 사람의 교사가 여러서당을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다. 대로는 한 사람의 교사가 여러서당을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다. 1420 교사를 초빙해 오는 경우에는 일정한 대우를 해 주어야 했고 서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洞契・學契・宗契 등을 모으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시대의 교육은 관학보다도 사학인 서당이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에서는 모든 경비를 국고에서 지급하는 관학보다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사학에 맡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도 문치주의 국가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시키는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교육이 유명무실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교육열이 민족성이 될 만큼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향교에까지 동몽훈도를 두어 서당식초학교육을 시키고 있었으니 한국교육은 사학의 전통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李成茂〉

<sup>141)</sup> 渡部學, 《近世朝鮮教育史研究》(雄山閣, 1968), 171\,

<sup>142)</sup> 渡部學, 위의 책, 187쪽.

# 3. 과거제의 정비와 운영

조선왕조가 성립되자 새로이 文·武散階制가 실시되고 문과와 아울러 무과도 실시되어 명실상부한 양반관료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태조는 즉위교서를 통해 첫째, 문·무 양과를 균형적으로 운영한다. 둘째, 고려 과거제의 유풍인 座主門生制와 國子監試를 없앤다. 셋째, 관학을 육성하여 과거제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없었다.<sup>2)</sup> 무과가 공양왕 2년(1390)에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태조 3년(1393)부터이다. 문과와 아울러 무과가 실시됨으로써 문무양반 체제의 제도적 관료 공급원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감시는 고려시대의 국자감시요, 조선시대의 進士試이다. 주자학을 신봉하는 신진 유학자들은 詞章을 배격하고 經學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집권하게 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사장시험인 진사시(國子監試)보다 경학시험인 生員試를 중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태조 4년에 예조가 제정한 과거법에서는 진사시를 없애버렸다. 그 뒤 세종 20년(1438)에 일시 부활되었다가6년 뒤인 세종 26년에 폐지, 단종 원년(1453)에 다시 복구될 때까지 조선 초기의약 60년 동안 진사시는 실시되지 않았다.3) 일설에는 태조 이성계가일찍이 고려의 생원시에 합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진사시보다 생원시를 중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자학이 도입된 뒤 유학의 경향이 사장 중심에서 경학 중심으로 바뀌어 가게 된 추세가 보다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리하여 문과시험에는 初場講經이 실시되었다. 제1차 시험에서 경서를 시험보였으므로 여기에 합격이 안되면 2차 시험에는 가볼 수도 없었던 것이다. 좌주문생제도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대부들의 집요한 반대로말미암아 태종 13년(1413)에는 貢擧制와 좌주문생제가 제도적으로 철폐되었

<sup>1) 《</sup>太祖實錄》 권 1, 태조 원년 7월 정미.

<sup>2)</sup> 李成茂, 〈韓國의 科擧制와 그 特性〉(《科擧》, 一潮閣, 1981), 77・118쪽.

<sup>3)</sup> 宋俊浩,《李朝 生員進士試 研究》(國會圖書館, 1970), 13~14\.

으며, 그 이전에 실시된 문·무과 급제자와 생원·진사의 명단을 작성하여 좌주문생의 폐해를 일소하고 과거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 이후로는 몇몇 형식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좌주문생제는 자취를 감추었 다.4)

관학 부흥운동은 고려 말의 신진 사대부들에 의하여 이미 추진되어 왔으나 그 본격적인 실시는 조선왕조의 건국을 기다려 이루어졌다. 관학은 이제 국가의 이데올로기인 주자학 보급의 근거지일 뿐 아니라 새 왕조에 맞는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역할하게 되었다.

다음은 학교제도와 과거제도와의 관계이다. 고려시대의 국자감(또는 성균관)은 대부분의 과거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물론 예부가 과거의 주 담당기관이기는 했지만 실무는 거의 국자감이 맡았다. 그러므로 새로운 과거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어서의 조선 초기의 과도적 과거 업무를 성균관이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조선 초기에 과거 실무는 성균관 학관의 집합체인 成均正錄所와 成均長貳 所에서 맡고 있었다. 성균정록소는 성균관 실무학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權設 機關으로서 성균관 안의 일반서무를 분담할 뿐 아니라 각종 과거 응시자들 의 예비심사를 담당하였다. 성균장이소의 뚜렷한 기능은 알 수 없으나 아마 도 성균관 고위학관들의 집무가 아닌가 한다.

태종 17년(1417) 윤 5월에는 예조에서 성균관과 문과와의 관계를 명시한 규정인 新科學法이 제정되었는데5) 여기서 생원은 「입학의 문」이요, 급제는 「入仕의 길」이라는 원칙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태종 17년 과거법에는 문과 응시자격 중에 성균관 유생일 것 이외에 다시 圓點 300을 딸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있어온 제도였다. 원점이란 성균관 출석성적을 의미한다. 성균관 식당에 아침과 저녁의 두 끼를 참석하면 원점 하나로 계산해 주었다. 이 때에 받는 출석 표지를 食堂到記라 한다. 그러므로 원점하나를 딴다는 것은 곧 성균관에서 하룻 동안 수학했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원점 300을 따려면 300일간 성균관에서 수학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거

<sup>4)</sup> 李成茂、〈鮮初의 成均館研究〉(《歷史學報》35·36, 1967), 235\.

<sup>5) 《</sup>太宗實錄》 권 33, 태종 17년 윤 5월 기사.

의 일년이 되는 셈이다. 생원시 또는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은 누구나 성균관에 들어가 약 1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문과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균관 유생이 모자랄 때에는 4학에서 升補試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충하게 되어 있었다. 승보시에는 15세 이상된 4학 유생으로 품행이 단정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었다. 이들은 성균관에서 생원·진사시를 준비하였다.

고려시대에 內舍인 國子學·太學·四門學에서 上舍인 七齋로 올라가는 시험을 승보시라 했던 것을 조선시대에는 4부 학당에서 성균관으로 올라가는 시험을 승보시라 하였다. 조선시대 성균관에는 내사·상사의 구분이 없어지고 외사인 4학과 상사인 성균관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4학에서 성균관으로 올라가는 시험을 승보시라 하고 성균관 입학시험에 해당하는 생원시와 진사시가 있게 되었다. 고려 말·조선 초기의 성균관 四書五經齋가 고려의 7재를 계승한 제도이기 때문에 경학을 배우는 4서 5경재에 입학하는 시험이라는 뜻에서 생원시(본래는 승보시)가 되고, 고려의 국자감시가 조선의 진사시로 계승된 셈이다.

문과 응시자격에 생원·진사일 것과 성균관에서 원점 300을 딸 것을 요구하게 되자 양반 자제들은 무과에 응시하거나 武衛·各司 南行 등 다른 벼슬길을 찾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건국과정에서 생긴 많은 공신·훈신의 자제들에게 忠順衛·忠義衛·忠贊衛 등 무위와 행정실무직에 직접 종사하는 각 사 남행 등의 벼슬길이 열려 있었다.6) 또한 고급관료의 자제들에게 주는 蔭敍의 혜택도 고려시대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종9품부터 정7품에 이르는 참하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양반 자제들의 과거시험에 대한 열망은 위에 든 몇 가지의 벼슬길로 만족시킬 수 없었다. 더구나 그들은 극히 제한된 숫자만을 뽑는 式年문·무과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양반들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하여 식년시 이외에 자주 別試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별시가 자주 실시되었던 것은 그들을 모두 등용하려는 뜻이 아니라 양반층을 회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sup>6)</sup> 李成茂, 앞의 글, 239~244쪽.

#### 320 V.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별시에는 增廣試·庭試·謁聖試·春塘臺試·外方別試·黃柑試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별시에서는 식년시와 같이 응시자격에 생원·진사일 것과 성균관 원점 300을 채울 것을 그리 엄격하게 따지지 않았다. 이는 양반회유책으로 실시되는 시험이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관학이 점차 쇠퇴해 가자 성균관에서 수학하는 유생이 적어 원점 300이 차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때로는 일정한 기준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성균관에 기숙하고 있는 유생에게만 별시의 응시자격을 주기도 하고 원점을 줄여주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별시의 원점 요구가 서서히 무너져가서 나중에는 원점을 전혀 문지 않는 상태로까지 몰고 갔다. 조선 후기의 특히 영조 이후에는 원점뿐 아니라 생원·진사일 것조차 문제삼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幼學이 문과 응시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문과 응시자격에 있어서 생원·진사나 성균관 원점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인 상태로 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별시의 횟수가 식년시의 횟수보다 훨 씬 많았다. 조선시대 전체로 문·무과를 합해 741회에 14,620명 뽑은 가운데 식년시가 163회에 6,063명, 별시가 581회에 8,557명이었다.7)

또한 생원·진사로서 정식으로 문과에 응시한 사람과 유학으로서 응시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기간 구분	문과급제자	생원·진사(%)	유 학(%)
태조~성종	1,796	1,526(85.0)	270(15.0)
연산군~선조 25년	2,350	1,777(75.6)	573(24.4)
선조 25년~경종	3,833	2,538(66.2)	1,295(33.8)
영조~정조	2,901	929(32.0)	1,972(68.0)
순조~고종 31년	3,740	668(17.9)	3,072(82.1)
계	14,620	7,438(50.9)	7,182(49.1)

<sup>7)</sup> 宋俊浩, 앞의 책, 19쪽.

급제한 전체 인원을 〈표 1〉에서 보면 생원ㆍ진사와 유학이 비슷한 수이나 시기별로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영조조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은 생원ㆍ 진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나 그 이후는 유학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영조 조 이후로 문과 응시에 생원ㆍ진사일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되도록이면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밀 착시켜 보려고 애썼다. 향교와 4학에서 양성한 인재를 생원·진사시로 뽑아 성균관에 입학하도록 하여 원점 300을 따게 한 다음 문과에 응시시키는 제 도는 비록 명ㆍ청에서처럼 학교시험 자체가 과거시험의 예비시험으로 된 것 과는 다르지만 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보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게 하다.

학교제도와 과거제도가 일워화될 수 없었던 까닭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 으나 무엇보다도 조선사회가 양반이 지배하는 양반관료제 사회였기 때문이 다. 양반들이 구태여 평민들과 어울려 향교에서 공부하려 하지 않고 사학이 나 자기집에서 특권적으로 공부하려 했기 때문이다. 또 양반 중에서도 문벌 양반이 학당과 성균관 교육 및 과거시험에 있어서 사실상의 헤게모니를 가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별시도 실제로 서울 양반들이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시험이 가까워서야 갑자기 발표되는 시험기일을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도 없거니와 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합격하는데 불리하였다. 한편 국가에서도 지배층인 양반의 요구에 못이겨 원칙대로 학교제도와 과거제도 를 운영해 나갈 수 없었다. 조선시대의 과거라 하면 문과가 그 대종을 이루 고 있었다. 따라서 문과에 대한 규정은 까다롭고 또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 었다. 반면 무과나 잡과에 대한 규정은 그리 까다롭지도 않을 뿐 아니라 비 교적 양반이 아닌 신분에게도 개방되어 있었던 편이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대체로 세종조에 정비된다. 성균관이 담당하였던 조선 초기의 과도적 과거업무는 태종 13년(1413)에 좌주문생제를 제도적으 로 철폐한 다음 예조로 이관되었다. 즉 문과와 생원ㆍ진사시를 모두 예조가 주관하되, 생원ㆍ진사시는 성균관과, 문과는 藝文ㆍ春秋館과 함께 시험을 보이게 하였다. 예조가 주관하는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세종조에 크게 정

비된다.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제도는 대부분 세종 때에 제도화되었다.8)

다음은 과거와 관직과의 관계이다. 과거는 본래 일정한 시험을 통하여 관인을 뽑는 登龍門이었다. 과거 중에 문·무과는 고급관료를 뽑는 시험이고, 잡과는 하급관료를 뽑는 시험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는 初入仕路로서 중요한 관문이었다. 그러나 초입사로는 과거 이외에 門蔭과 薦擧가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문음·과거 외에 遺逸·南班雜路·成衆愛馬 등이 있었으나의 조선시대에 들어와 남반과 성중애마가 吏職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자 천거의 성격이 강한 유일(隱逸이라고도 함)만이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에 있어서 문음과 과거는 초입사로로서 쌍벽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관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보다 문음의 폭이 넓고 과거가 비교적 덜 발달되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5품 이상 관리의 아들에게 주어지던 蔭職이 조선시대에는 3품 이상 관리의 아들에게 주어지던 향합이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 없었던 무과가 문과와 나란히 실시되었 을 뿐만 아니라 미숙한 상태로 있었던 고려시대의 과거제를 철저한 시험제도에 입각하여 정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양반관료제의 발달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한편 인사제도는 과거제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고려시대에는 초입사의의미가 강하였던 과거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초입사에 못지않게 超資・超職의 의미가 컸던 것이다. 과거 급제자는 벼슬길을 터주는 것은 물론 과거시험의 성적과 이미 가지고 있던 관품의 높고 낮음에 따라 초자·초직의 특혜가 덧붙여 주어졌다. 문·무과뿐만 아니라 잡과도 마찬가지였다. 이 초자·초직의 특전은 조선시대 과거의 특징을 드러내 주는 법제였다. 循資法・考課法과 같은 까다로운 진급규정을 무시하고 파격적으로 고급관료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조선시대 과거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였다.

양반관료가 아무런 거리낌없이 종9품에서 정3품 당하관까지 올라가려면

<sup>8)</sup> 李成茂, 《韓國의 科舉制度》(春秋文庫 19. 韓國日報社, 1967), 80쪽,

<sup>9) 《</sup>高麗史》 권 73, 志 27, 選擧 1 序文.

<sup>10)</sup> 李成茂,〈朝鮮初期의 蔭敍制와 科舉制〉(《韓國史學》1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140等。

약 41년이 걸린다. 양반의 경우 만약 20세에 처음 벼슬을 시작하면 거의 60세가 가까워서야 정3품 당하관에 도달할 수 있었다. 기술관의 경우 호조의 算士와 형조의 明律의 예를 들면 역시 종9품에서 그들의 한품인 정3품 당하관까지 도달하려면 약 44년이 걸린다. 기술적 참하관이 한 품계를 올라가는데 필요한 근무일수는 514일이었기 때문이다. 書吏의 경우는 2,600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순조롭게 올라가는 경우이고 그 동안 근무성적이 나쁘다든가 사고가 있을 경우는 실제로 얼마만한 세월이 걸릴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11)

더구나 양반관직이 아닌 관직에는 소위 遞兒職이라는 것이 있어서 6개월 마다 교체되고, 물러나온 사람은 1년간은 쉬었다가 다시 공개경쟁을 통하여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난관을 겪게 되어 있었다. 숫자상으로 양반과 비양반의 근무일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실제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과거시험에 합격하면 어느 정도의 초자·초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규정은 다음 〈표 2〉·〈표 3〉과 같다.<sup>12)</sup>

이 《경국대전》의 문·무과 加資法은 세종 26년(1444)에 제정된 문·무과 散官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문과 장원은 참하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참상 관인 종6품직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은 다른 관료들이 거쳐야 하는

	과 별	문	과	무	과
등 급 `		인 원	품계(관직)	인 원	품 계
壯	元	1	종 6품직		
甲	科	2	정 7품직	3	종 7품계
Z	科	7	종 8품계	5	종 8품계

정 9품계

20

종 9품계

〈표 2〉 문·무과 급제자 超資·超職表

23

丙

科

<sup>11)</sup> 李成茂,《朝鮮初期 兩班研究》(一潮閣, 1980), 159\.

<sup>12) 《</sup>經國大典》권 1, 吏典 諸科. 《太宗實錄》권 3, 태종 2년 정월 기미.

⟨표 3⟩

잡과 급제자 超資表

등 급	역 과	기 타 잡 과
1 등	종 7품계	종 8품계
2 등	종 8품계	정 9품계
3 등	종 9품계	종 9품계

약 7년여의 승진기간을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문과의 장원과 갑과 급제자에게는 정7품 실직을 주었으며 나머지는 성적에 따라 관품만 주었다. 7품에서 6품으로 올라가는 것을 出六(壓六)이라 하여 넘기 어려운 분계선으로 되어있었다. 대부분의 행정직은 7품 이하인 참하관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계선을 문과 장원은 단숨에 넘어버리는 것이다.

무과와 잡과도 합격자에게 품계를 올려주는 특전을 부여하였지만 문과보다는 못하였다. 문과의 갑과 급제자에게는 품계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품계에 해당하는 실직을 주게 되어 있었다. 또한 문과 급제자에게는 正品을주었다. 종품은 정품보다 격이 떨어지는 관품이었다.

그런데 현직 관리의 경우는 더욱 큰 혜택을 받았다. 예로서 문과 급제자의 초자규정을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13)

⟨표 4⟩

등	급	인 원	품 계
장	원	1	4계를 더해 준다.
갑	과	2	3계를 더해 준다.
을	과	7	2계를 더해 준다.
병	과	23	1계를 더해 준다.

갑과의 경우는 현직에 있으면서 합격한 사람에게 1계가 높은 관직을 주었다. 또 문·무과 합격자로서 품계를 올려받아 정3품 당하관의 멱이 찬 사람은 무조건 당상관으로 올려주었다. 급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엄격한 인품평정

<sup>13)《</sup>經國大典》 권 1, 吏典 諸科.

과 가계심사를 거치거나 국왕의 특별명령이 있어야만 당상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문·무과는 당상관 이상의 고급관료를 뽑기 위한 시험이라 할 수 있다. 급제자는 이미 고급관료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문과 응시자격을 당하관 이하의 관료로 국한하고 있는 것도 문과가 당상관 이상으로 승진할 자격을 주는 시험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 10년에 한 번씩 보이던 重試도 당하관 이하만을 응시하게 하였는데 이것도 당상관으로의 승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듯싶다. 그리고 기술직은 체아직으로 되어 있어 자주 교체되므로 승진하기 어려워 잡과에 합격하지 않고는 참하관에서 참상관으로 승진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승진규정이 까다로웠던 조선시대에 있어서 과거시험은 그 승진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현직관리에게 과거 응시자격을 주는 것과 그 합격자에게 더 큰 승진의 특전을 주었던 것은 조선 양반관료제의 하나의 특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반관료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고려시대부터 음서제도를 두어왔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과거가음서보다 중요시되자 과거시험에까지 그들의 특권을 반영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에 참하관 이하에게만 과거 응시자격을 주던 것을 조선시대는 당하관이하로 확대시킨 것도 그 까닭이라 하겠다.14)

그러므로 과거에서 문벌이 중요시되었다. 고급관료의 자제들이 과거에 있어서조차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고급관료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 문벌 자제들이었다. 조선 후기에 급제자의 진출은 分館에 의하여 좌우되었다. 분관은 급제자를 문과는 弘文館·承文院·成均館·校畫館 등 四館에, 무과는 訓練院·別侍衛에 분속시키는 제도였다. 조선 초기에는 급제자의 능력에 따라 분관이 실시되던 것이 조선 후기에는 문벌이 작용하여 홍문관 분관이 제일 좋은 것으로 되었다. 분관은 당쟁과도 깊은 관계가 있었다.15)

과거는 관직을 차지하는 관문이었다. 양반들은 과거에 합격해야만 관직을

<sup>14)《</sup>高麗史》 권 105, 列傳 18, 許冠. 《經國大典》 권 3, 禮典 諸科.

<sup>15)</sup> 李瀷,《星湖僿說》, 人事門 分館.

차지할 수 있었고 관직을 차지하고 있어야 과거시험에서도 그 자손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과거와 관직은 양반의 가문과 신분을 지키기위한 필수적인 요건이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은 그들의 숙명인 것처럼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나친 양반들의 과거와 관직경쟁은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또한 17·18세기 실학자들의 맹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나 과거제가 철폐되는 1894년의 갑오개혁 때까지 과거는 계속되었다. 양반관료 체제가 무너지고 근대적인 사회의식의 사회체제로 이행하기 이전까지는 간단히 과거제도를 없앨 수는 없었던 것이다. 과거제도에 대한 개혁안조차도 양반체제에 변혁이 오지 않는 한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과거제가 별다른 개선없이 5백년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 4. 과거의 종류

조선시대 과거에는 문과·무과·잡과와 문과의 예비시험으로서 생원·진사시가 있었다. 문·무과와 생원·진사시는 양반들이 많이 보는 과거시험이었고, 잡과는 중인들이 많이 보는 시험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무과가 남발되어 일반 양인들뿐 아니라 천인들까지도 많이 응시하였다. 문과와 생원·진사시는 예조에서 주관하였고, 무과는 병조에서 주관하였으며, 잡과는 예조와 해당 관청에서 주관하였다. 그리고 10년마다 한 번씩 문·무관료들을 대상으로 보이는 중시도 예조에서 주관하였다. 그러므로 과거시험은 예조와 병조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1) 문 과

문과는 정규시험인 식년시와 특별시험인 각종 별시로 구분되어 있었다. 식

년시는 문과뿐 아니라 모든 과거시험의 공통적인 정규시험으로서 3년마다한 번씩 실시되었다. 식년시는 세 차례의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었다. 初試・覆試(會試)・殿試가 그것이다. 문과 초시에는 鄕試・漢城試・館試가 있었다. 향시는 8도에서 실시하였고, 한성시는 한성부에서, 관시는 성균관에서 실시하였다. 초시인 향시에서 240인(경기 20, 강원 15, 황해 10, 충청 25, 경상 30, 전라 25, 평안 15, 함경 10), 한성시에서 40인, 관시에서 50인을 뽑아 복시에서 33인을 뽑았고 전시에서 등급을 결정하였다.

문과 초시의 試取 액수는 다음 〈표 5〉와 같다.16)

〈표 5〉 문과 초시 시취 액수

단위 : 인

	구	1	분	1417년 이전	1417년 이후	경 국 대 전	속 대 전
관			시	30	50	50	50
한		성	시	30	40	40	40
	경	기	도	20	(20)	20	(20)
	강	원	도	15	10	15	15
챵	황	해	도	15	10	10	10
	충	청	도	20	20	25	25
	경	상	도	30	30	30	30
시	전	라	도	20	20	25	25
	평	안	도	10	10	15	15
	함	경	도	10	10	10	12
계		200	200	240	222		

문과 향시의 시취 인원은 240인에서 222인으로 줄었다. 식년 문과에서 33 인을 뽑은 것은 불교의 三十三天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33인의 급제자는 정 종 원년(1400)에 시험성적에 따라 장원 1인을 포함한 을과 3인, 병과 10인, 동진사 23인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태종 14년(1414)에는 잠시 을과  $1 \cdot 2 \cdot 3$ 등으로 바꾸었다가 곧 복구되었다. 세종 9년(1427)에 이를 다시 을과  $1 \cdot 2 \cdot 3$ 

<sup>16)</sup> 曺佐鎬, 〈學制와 科擧制〉(《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74), 138쪽.

등으로 바꾸었다가 세종 11년에 복구되었고, 세종 20년에는 同進士를 丁科로바꾸어 혹은 을과 1·2·3등, 혹은 을·병·정과로 불렀다. 그러나 세조 12년(1467)에는 을·병·정과를 갑·을·병과로 바꾸어 조선시대 내내 그대로실시하였다.17) 갑과 3인 중 1등을 壯元이라 하였고, 2등을 榜眼, 3등을 探花(郎)라 하여 우대하였다. 이 중 探花는 御賜花를 왕으로부터 받아 급제자들의모자에 국왕 앞에서 나누어 꽂아주는 일을 맡았던 데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문과 급제자에게는 무과 급제자와 함께 붉은 색의 합격증인 紅牌를 주었다. 홍패에는 왕의 科擧寶라는 玉璽를 찍어 주었다.18)

문과에서 33인을 뽑게 되어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게는 24인, 많게는 74인을 뽑을 때도 있었다. 적게 뽑을 때는 적합한 인재가 많지 않을 경우이고 초과해서 뽑을 때는 殿講・通讀・到記科 등의 直赴生과 恩賜가 합쳐졌을 경우이다. 또한 조선 후기로 올수록 문・무과의 경우는 양반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뽑는 수가 많았다. 조선시대의 식년시에서는 167회에 6,123인을 뽑았다.19)

문과 별시에는 增廣試·別試·謁聖試·庭試·春塘臺試·重試·春試·拔英試·登俊試·進賢試·擢英試·求賢試·賢良試·忠良試·新舊試·丕闡試·道科·景武臺試·明倫堂試·殿試·節日製·黃柑製·通讀·殿講·到記科 등이 있었다. 이들 별시는 국가의 경사가 있거나 문·무관, 성균관 유생들의 사기를 북돋우어 주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증광별시를 제외한 각종 별시는 문과 또는 무과만 특별히 실시되었다.

增廣試는 대체로 새로운 국왕이 설 때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조선시 대 최초의 증광별시는 태종 원년(1401)에 실시되었다.<sup>20)</sup> 그러나 조선 후기에

教 旨

具官 아무개는 文科(武科는 武科라 칭한다)의 아무 科(甲科·乙科· 丙科로 칭한다) 第 및 人으로 及第 出身한 자이다.

<sup>17)</sup> 沈勝求, 〈朝鮮初期 武科制度〉(《北岳史學》 창간호, 國民大, 1989), 49쪽.

<sup>18)《</sup>經國大典》 권 3, 禮典 紅牌式.

年寶月日

<sup>19)</sup> 李成茂・崔珍玉,《朝鮮時代 文科榜目 總覽》(韓國精神文化研究院, 근간예정).

<sup>20) 《</sup>增補文獻備考》 권 186, 選擧考 3, 科擧 3 태종 원년.

는 宗系誣辨・討逆 등을 이유로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지 않은 때도 실시되었다.<sup>21)</sup> 증광별시는 식년 문과와 똑같은 정원을 뽑았으며 이 때는 문・무・잡과, 생원·진사시를 다 실시하였다. 다만 경사가 겹칠 때에는 大增廣試를 보이는데 초시에서 340인 복시에서 40인을 뽑았다. 조선시대에 실시된 증광별시에서는 총 60회에 2,447인을 뽑았다.<sup>22)</sup>

別試는 국왕의 즉위 이외의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는 특별시험이었다. 별시 문과는 초시와 전시 두 단계만 있었다. 이 때의 초시는 식년 문과의 복시에 해당한다. 별시 문과는 서울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별시는 예고없이 실시되기 때문에 지방 유생에게 불리하였다. 그러나 지방유생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별시에 응시하고자 하였다. 별시 문과에서 뽑는인원은 일정치 않고 그때그때 정하여졌다. 초시에서는 대체로 300~600명을 뽑았다. 초시 합격자에게는 다시 4서 중 한 책, 3경 중에 자기가 원하는 책하나씩을 背誦하게 되어 있었다. 이를 會講이라 하였다. 이 회장에서는 粗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되었다. 회강 합격자는 대개 30인 이내였다.23) 별시는비교적 합격하기 쉬웠으므로 응시자수가 많았다.

별시에는 또 外方別試가 있었다. 외방 별시는 국왕이 蒙塵할 때나 능침·온천에 갈 때 行在所에서 특별히 실시하는 과거시험이었다. 여기에 합격하는 사람에게는 급제를 주거나 문과 절시에 직부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외방 별시에는 국방상의 요지인 평안도에서 실시하는 西道科와 함경도에서 실시하는 北道科를 비롯하여 강화도와 제주도·개성부에서 실시하는 별시가 있었다. 무과도 마찬가지이며 임진란 이전에는 평안도와 함경도에 어사를 파견하여 그 곳의 유생들을 詩・賦로서 시험하여 1등 한 사람에게만 전시에 직부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그러다가 인조 21년(1643)에 서도과가, 현종 5년(1664)에 북도과가 외방별시로 정식 설행되었다. 이 때부터는 10년에한 번씩 중신을 보내어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상례였다. 시험과목은 賦·

<sup>21)</sup> 崔珍玉,《朝鮮時代 生員進士 研究-司馬榜目의 分析-》(韓國精神文化研究院韓國學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94), 20\(\frac{2}{3}\).

<sup>22)</sup> 李成茂,・崔珍玉, 앞의 책.

<sup>23)</sup> 가장 많았을 때가 1524년의 30명, 가장 적었을 때가 1786년의 3명이었다.

表・策 중의 1편이었고 뽑는 인원은 때에 따라 다르나 대략 3명 정도였다. 試券은 봉한 채로 서울로 보내져 급제자를 결정하였는데 급제자에게는 홍패를 주었다. 서도과는 뒤에 淸南・淸北, 북도과는 關南・關으北로 나누어 각가 2~3명씩 뽑았다.<sup>24)</sup>

외방 별시 이외에 試才라는 것이 있었다. 시재는 정식으로 외방별시까지는 되지 못했으나 국방상의 요지나 특수지역의 민심을 어루만지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특별시험으로 제주·강화·화성 등지에서 실시되었다. 시험과목은 시·부·표·책 중 하나를 선택케 하여 2~3명의 합격자를 내어 전시에 직접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國聖試는 국왕이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행하여지는 성균관의 文廟釋奠 禮에 참석한 뒤 명륜당에서 실시하는 특별시험이었다. 국왕이 직접 나와서 실시하는 親臨科의 하나였는데 태종 14년(1414)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시험은 문・무과에만 있었고,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刻燭試25)였다. 전시만 있는 시험인 셈이다. 따라서 합격자도 그날로 발표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3품 이하의 현직 관료와 성균관 유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나중에는 지방 유생에게까지도 개방하였다. 알성시는 친림과이기 때문에 相避制26)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시관들의 협잡이 많았다. 또 하루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시험과목은 10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하고 시험관은 다른 전시보다 훨씬 많은 수를 두었다.27) 알성시에는 시험과목이 적고 상피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요행수를 바라는 응시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과거제도가 별시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였는데 알성시도 그 원인 중의 하나였다. 조선시대의 알성시에서는 57회에 398인을 뽑았다.28)

庭試는 본래 매년 봄·가을로 성균관 유생을 궁전의 뜰에 불러들여 시험을 보여 우수한 사람에게 전시에 직접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給分

<sup>24)</sup> 曺佐鎬, 앞의 글, 144쪽.

<sup>25)</sup> 초에 금을 그어 놓고 촛불이 그 금까지 타 들어오면 시험을 종료하게 하는 시험 방법이다.

<sup>26)</sup> 과거시험의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관의 가까운 친척들을 응시할 수 없게 한 제도이다.

<sup>27) 《</sup>續大典》에 의하면 讀券官 10명, 對讀官 20명을 두었다고 한다.

<sup>28)</sup> 曺佐鎬, 앞의 글, 145~146쪽.

하던 특별시험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선조 16년(1583)부터는 하나의 독자적인 과거시험으로 승격되었다. 정시도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실시되는 것이 보 통이었다. 그런데 뒤에는 討逆科・忠良科・蕩平科 등의 명목으로 다양하게 설행되었다. 심지어는 無名科도 있는 형편이었다. 또 시험도 자주 있었다. 1 년에 두세 번 있을 때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 있을 때조차 있 었다. 정시도 알성시와 마찬가지로 당일로 시험을 끝내고 합격자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서시험은 치를 수 없었다. 그리하여 表ㆍ 賦・策・箴・頌・銘・詔 중의 한 과목을 선택케 하여 시험보게 되어 있었다. 문체는 일정한 격식을 맞추어 써야 하는 騈儷體를 요구하였다. 시험문제는 국왕이 참석할 때는 국왕이, 시관에게 위임할 때는 시관이 출제하였다. 정시 도 알성시처럼 당일에 결판이 나고 상피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관의 협잡이 많고 응시자도 많이 몰려들었다. 이에 영조 19년(1743)부터는 정시를 초시와 전시로 나누고, 영조 35년에는 초시 합격자에게 다시 3경 중 자기가 워하는 경서 하나를 배강케 하는 회강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헌종 10년 (1844)부터는 초시를 서울뿐 아니라 각 도 감영에서도 실시하게 하였다. 그리 하여 정시는 다른 별시보다 폭넓은 과거가 되었다. 정시는 문・무과에만 있 었다. 조선시대의 정시에서는 206회에 2.610인을 뽑았다.29)

春塘臺試는 본래 국왕이 각 군문의 무사들을 춘당대에 모아 武才를 시험하던 특별시험이었는데 뒤에는 문과에도 적용되었다. 춘당대시는 선조 5년 (1572)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34회에 207인을 뽑았다. 춘당대시도 친림과요, 당일로 결판이 나고 상피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시관들의 협잡이 많고 응시자가 많았던 것은 알상시나 정시와 마찬가지였다. 심지어는 부자가 동시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어 영조 20년부터는 부자가 동시에 응시하는 것을 중지하였다. 춘당대시의 시험관은 알성시와 같고, 시험과목은 증광전시의 경우와 같았다. 뽑는 인원은 그때그때 정하였는데 3~15명을 뽑았다.

節日製는 人日製・三日製・七夕製・九日製의 네 가지가 있었다. 인일제는 1월 7일, 3일제는 3월 3일, 칠석제는 7월 7일, 9일제는 9월 9일에 실시되었

<sup>29)</sup> 曺佐鎬, 위의 글, 146~148쪽.

다. 3일제와 9일제는 조선 초기부터 실시되었으나 인일제와 칠석제는 뒤에 생긴 것인데, 전자를 課製, 후자를 上旬輸次라 하였다. 과제는 의정부·6조의 당상관이 참석한 아래 실시되는데 비하여 상순윤차는 館閣堂上만 참석한 아래 실시되었고, 과제에서 1등을 한 사람에게는 문과 전시에 직부하는 특전을 주었는데 비하여 상순윤차에서 1등을 한 사람에게는 문과 회시에 직부하는 특전밖에는 주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과제가 상순윤차보다는 격이 높은 시험이라 할 수 있다.

절일제는 본래 성균관에 재학하는 유생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되는 특별시험이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성균관 유생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생원·진사들이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는 경향이생기자 응시자격을 제한하게 되었다. 《속대전》에는 성균관 유생으로서 원점 50점을 취득한 사람에게, 《大典會通》에는 원점 30점을 취득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왕의 특명에 의하여 지방 유생에게도 응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많았다. 시험과목은 증광전시와 같았다. 절일제도 하루에 시험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서를 피하고 시·부·표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영조·정조시대에는 재경 유생에게는 표를, 지방 유생에게는 부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뽑는 인원은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영조20년(1744)부터는 서울 유생 한 사람, 지방 유생 한 사람씩을 뽑았다. 절일제도 시험과목이 간단하고 단 한번의 시험으로 결판이 나기 때문에 응시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黃柑製는 매년 12월 제주목사가 바치는 감귤을 성균관·4학 유생에게 나누어 줄 때 실시하는 제술시험이었는데 뒤에는 왕의 특명으로 성균관·4학 유생뿐 아니라 지방 유생들에게까지도 응시자격을 주었다. 황감제는 명종 19년(1564)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원점 20 이상을 딴 유생에게 응시자격을 주어 1등 한 사람을 급제시켰다. 그러나 뒤에 지방 유생들에게까지 응시자격을 주게 되자 영조 24년 이후에는 서울 유생 한 사람, 지방 유생 한 사람씩을 뽑게 되었다. 시험문제는 대제학이 내어 국왕의 낙점을 받은 다음 承旨와 中使가 시험문제와 감귤을 가지고 성균관 명륜당에 가서 시험을 실시

하게 되어 있었다. 시험과목은 절일제와 같았다. 시험이 끝나면 승지가 시험지를 가지고 대궐로 들어가 대제학이 兩館提學과 함께 채점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였다.30)

이 외에도 전강·도기과·통독 등의 특별시험 제도가 있었다. 殿講은 성종원년(1470)부터 실시되어 왔으나 영조 20년《속대전》을 만들 때에 비로소 제도화되었다. 전강의 대상은 성균관·4학 유생이었다. 전강은 매년 2월·4월·6월·8월·10월·12월 11일에 승정원에서 건의하여 그 달 15일 아침까지 성균관 출석부에 실려 있는 유생을 대상으로 그 다음날 16일에 실시하였다. 이들은 성명·주소 및 희망하는 경서를 적어내면 그것에 의하여 시험이실시되었다. 시험관은 의정 한 사람, 종2품 두 사람, 정3품 이하 네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이 시험에서 純通은 문과 회시에 직부하고, 通은 2분을, 略은 1분을, 粗는 지필묵을 각각 주었다. 급분은 뒤에 과거시험에 통산해 주게 되어 있었다.31)

到記科도 성균관 4학 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시험인데 일명 圓點科라고도 하였다. 도기과에는 1월 1일부터 7월 말 사이에 실시되는 春到記와 8월 1일부터 12월 말 사이에 실시되는 秋到記가 있었다. 도기과 실시를 위해 국왕은 사관이나 중사를 성균관과 4학에 보내어 식당도기32)를 가져오게 하여원점 30 이상을 딴 유생을 골라 시험을 보게 했다. 시험과목은 강경과 제술중 한 과목을 택하게 하여 두 과목의 1등 한 사람을 뽑아 문과 전시에 직접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33)

通讀은 숙종조부터 실시된 시험으로 《속대전》에 의하면 성균관 대사성이 매년 중앙과 지방의 유생들에게 강경과 제술시험을 각각 11번씩 실시하여 두 시험의 성적이 우수한 자 각 5인씩 10인을 식년 문과의 회시나 전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시험이었다. 이 때의 제술시험에는 부 1편과 표·전·론중 1편을, 강경시험에는 4서 3경을 배강으로 시험보였다.34)

<sup>30)</sup> 曺佐鎬, 위의 글, 150~151쪽.

<sup>31)</sup> 曺佐鎬, 위의 글, 151쪽.

<sup>32)</sup> 출석부에 해당된다.

<sup>33)</sup> 曺佐鎬, 앞의 글, 151쪽.

<sup>34) 《</sup>續大典》 권 3, 禮典 諸科 通讀.

위에 열거한 절일제 · 홧감제 · 전강 · 통독 · 도기과 등 각종 별시는 성균관 유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실시된 특별시험이었는데 이들 시험의 합격 자에게는 문과 전시 또는 문과 회시에 직접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문과 초시에 分數를 가산해 주는 급분의 특전을 주었다. 직부생의 경우는 처 음에 식년시에만 응시케 하였으나 나중에는 증광별시ㆍ별시ㆍ정시에도 응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식년 문과와 증광별시 문과의 전시에 응시하는 직부생은 일반 수험생과 섞여 앉아 시험을 보았으나 별시 정시의 전시에 응시하는 직부생은 아직 합격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수험생과 구별하기 위하여 臺上 에 따로 앉아 시험을 보게 하였다. 합격자를 발표할 때에도 이들은 榜尾에 별도로 발표하였다. 전시에 직부하는 사람은 이미 합격이 확정되어 있는 것 과 마찬가지인데도 바로 급제시키지 않는 것은 그 때마다 적은 인원을 가지 고 唱榜儀를 따로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직부 회시생의 경우 회시가 없는 별시 정시에는 초시에 응시해야 하는데 시험만 같이 보았지 합격 여부 와는 관계가 없었다. 직부 전시생은 이미 합격이 결정된 사람이므로 정원 33 명 외로 계산하였다. 각종 별시의 초시에 급분을 받은 사람은 사실상 합격률 이 높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 급분을 받은 사람들도 정원 외로 계 산하였다. 그러므로 급분을 받은 사람도 초시에 응시하기는 하지만 회시에 직부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었다. 급분도 처음에는 식년 문과에 한하여 인정 하였으나 뒤에는 각종 별시에도 적용하였다.35) 이와 같이 식년시 이외에 각 종 별시를 자주 실시한 것은 양반들이 집요하게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양반 들은 그들의 가문과 신분을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관직을 차지하고자 하였 고 관직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重試는 10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정기시험으로 당하관 이하의 문신을 대상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丁年에 실시하다가 뒤에는 丙年에 실시하였다. 시험은 대궐에서 국왕이 참석한 아래 실시되었는데 이 때에 문·무과 별시도실시되었다. 시험과목을 그 때마다 지정하게 되어 있었으나 대개 표·책 중하나를 시험보이는 것이 보통이었다. 시험관은 의정 한 사람, 종 2품 두 사람을 讚券官에, 당하관 네 사람을 對讀官에 임명하게 되어 있었다. 뽑는 인

<sup>35)</sup> 曺佐鎬, 앞의 글, 152쪽.

원은 3~19명이었다. 합격자는 을과 1·2·3등으로 나누었는데 장원한 사람은 4등급을, 2~3등은 3등급을, 을과 2등은 2등급을, 을과 3등은 1등급씩을 특진시켜 주었다. 이 특진제도는 중시 합격자를 당상관으로 승진시키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참하관은 모두 참상관인 6품으로 승진하였다. 중시의 합격자 발표에서도 문과·무과와 같이 賜牌·賜花·賜蓋하고 3일 동안 遊街하였다. 그리고 고향에 금의환향하면 수령이 迎親宴을 베풀어 주는 것이 관례였다.36)

중시와 비슷한 형태의 시험으로 文臣庭試가 있었다. 문신 정시는 세조 9년(1463)부터 시작된 특별시험으로 정3품 당하관의 문신을 대상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수시로 실시되어 오다가 현종 10년(1669)부터 춘당대시와 번갈아실시되었다. 시험과목은 증광별시와 같았고 시험관은 중시와 마찬가지로 七試官이었다. 뽑는 인원도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개 5~6명이었고 가장 많은 때라야 효종 3년(1652)의 문신 정시이었는데 11명이었다. 문신 정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정3품 당하관으로서 資窮(근무년한이 찬 것)인 사람은 당상관, 참상관은 당하관, 참하관은 참상관으로 승진시켜 주었고 나머지는 모두 상을 주었다.37)

문신 정시와 비슷한 시험으로 또 발영시·등준시·진현시·탁영시·충량 시·구현시·신구시·비천시·경무대시·명륜당시·전시·친시 등이 있었다. 이러한 시험도 문신의 승진시험이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는 정2품 이하의 문신이 참여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그 이후 계속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은 아니다. 비천시·경무대시·명륜당시·전시·친시도 시험장소만 달랐지 그 실시 목적은 비슷하였다. 특히 친시와 전시는 국왕이 친히 시험관이 되어 실시한 시험이었다. 이는 세조와 성종·중종·영조가 새로운 관료군을 구성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한 일시적인 시험에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선발인원도 3인에서 15인 정도를 넘지 않았다.38)

<sup>36)</sup> 曺佐鎬, 위의 글, 153~154쪽.

<sup>37)</sup> 曺佐鎬, 위의 글, 154쪽.

<sup>38)</sup> 沈勝求, 앞의 글, 28~29쪽.

정식 과거시험은 아니었지만 문신들에게 학문을 권장하기 위하여 실시한 文臣仲月賦詩法이 있었다. 이는 文臣月課法이라고도 하였는데 고려 성종 15년(996)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태종조에 권근의 주장으로 春秋仲月賦詩가 행하여졌다. 이 시험은 3품 이하 6품 이상의 문신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뒤에는 이 시험은 四仲朔39)에 실시되게 되었는데 3품이하의 문신에게 시·부·표를 시험보였다. 여기에 1등으로 합격한 사람에게는 승급(加資)의 특전을 주었다. 이 시험은 국초에는 성행하였으나 뒤에는 유명무실하였다.40)

문신들의 경서공부를 권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던 시험으로는 文臣殿講이 있었다. 문신 전강은 3품 이하의 문신들에게 각각 전공하는 경서를 지정하여 주고 이를 국왕 앞에서 배강케 하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5경을 번갈아 시험을 보임으로써 문신들의 경학공부를 권장한 것이다. 문신 전강은 영조·정조시대에 가장 성행하였는데 역시 1등으로 합격하는 사람에게는 승급의 특전을 주고 나머지는 상을 주었다.41)

또 천거제와 과거제를 혼합한 賢良科가 있었다. 이는 중종 14년(1519)에 趙 光祖 등 사림파의 주장으로 실시된 특별한 과거시험이었다. 중종은 조광조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勤政殿에서 독권관 申用溉 등에게 명하여 장령 金湜 등 120인을 뽑았다. 이것이 현량과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었다. 이 현량과는 영의정 鄭光弼 등 구신들의 반대로 곧 罷榜되고 현량과 자체도 없어졌기 때 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南袞・沈貞 등 사장과・훈구파에 의하여 조광조・金 馹孫・김식 등 사림파가 몰려나게 되자 현량과는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조광조 등의 개혁정치는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훈구세력에 대한 영남출 신인 신진세력의 도전이었고 현량과의 파방은 곧 사람파의 패배를 의미한다. 현량과는 과거가 詞章에 사로잡혀 科文이나 공부해 온 보잘것 없는 선비들 만을 뽑게 되고 의리의 학문을 공부하는 眞儒를 뽑을 수 없다는 주장에서 실시된 과거시험이었다. 서울은 四館에서 유생이나 현직관료 중에서 유능한

<sup>39) 2</sup>월 · 5월 · 8월 · 11월의 11일.

<sup>40)</sup> 曺佐鎬, 앞의 글, 154~155쪽.

<sup>41)</sup> 曺佐鎬, 위의 글, 155쪽.

인재를 성균관에 추천하고, 성균관은 예조에 다시 보고하게 하였으며 중추부·한성부·흥문관에서도 역시 아는 사람을 추천케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각 지방의 유향소가 추천한 인물까지를 합쳐 의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이 때에 추천자의 성명도 아울러 적어서 책임을 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의리있고 덕있는 선비를 뽑는다는 것이다. 현량과가 파방된 지 50년 뒤인선조 원년(1568)에 李浚慶 등의 주장으로 復科되었다. 尹元衡의 독재시대가지나고 다시 사람들에 의한 정치가 부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趙憲·金字願 같은 이들이 현량과와 같은 薦擧科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실현되지는 못하였다.42)

한편 독립된 문과시험은 아니지만 漢吏科와 明經科가 설치되어 별도의 吏文・明經시험을 보여 문과 급제자의 수에 포함시킨 적도 있었다. 즉 태조 2년(1393)에 권근의 요청으로 한리과를 설치하여 초시의 초장에 시·부 종 장에 이문을 시험보이고. 회시의 초장에 이문과 4서 3경·漢語를. 중장에 표・전・기・송을, 종장에 排律을 시험보여 문과 급제자를 정할 때 반영하 도록 하였으나 그 뒤 계속 시행되지 않았다가 중종 37년(1542)에 金安國의 건의에 따라 부활되어 魚叔權이 이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經 國大典》이나《大典續錄》ㆍ《國朝榜目》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리과 시험이 계속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 고 명경과는 《己丑大典》43)에 수록되어 있었는데. 문과 초시의 초장을 제술 로, 문과 복시의 초장을 강경으로 시험을 보임에 따라 경학이 약화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조 6년(1460)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명경과(시)에서는 초시에서 4서 5경 시험에 略通 이상 자를, 복시에서 七通二略者를, 전시에 서 4서 중 1서, 5경 중 1서를 추첨하여 시험보인 다음 여기에 합격한 사람 을 문과 식년시 33인 정원 외로 뽑도록 하였다. 그 후 성종 9년(1478)에「明 經科試取節目,이, 성종 10년에「明經科別試條件,이 제정됨에 따라 명경과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乙巳大典》449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그리고

<sup>42)</sup> 李成茂, 앞의 책(1976), 129~130쪽.

<sup>43)</sup> 예종 원년(1469), 즉 己丑年에 일시 반포한 《경국대전》.

<sup>44)</sup> 성종 16년(1485), 즉 乙巳年에 최종적으로 반포된 《경국대전》.

세조 12년 12월에는 이미 성균관 九齋45를 설치하여 매년 봄·가을로 성균관 당상 및 예조 당상 2인, 예문관 당상 1인, 대간 1인이 모여 구두와 의리에 통한 자를 다음 齋에 차례로 올라가게 하고, 한꺼번에 여러 경전에 통한자는 월반시켜 易齋에 이른 다음 매 식년의 문과 회시에 직부하는 제도를만들었다. 그러나 명경과는 세조 6년에 한번 실시된 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과거시험에서 강경이 제술에 압도된 때문이었다.46)

문과 실시의 횟수를 보면 정시의 206회와 별시의 180회, 식년시 167회의 순이었으며, 급제자수는 식년시의 6,123인이 가장 많고 정시의 2,610인, 별시의 2,385인 순이었다. 정시와 별시의 급제자수를 합치면 4,995인으로 식년시 167회의 급제자 6,123인에 미치지 못하지만 각종 별시를 모두 합치면 638회의 9,014인으로 실시 횟수나 급제자수가 훨씬 많다. 식년시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어 한꺼번에 33인 이상을 뽑았다. 각종 별시는 자주 설행되었으나 뽑는 인원수는 적었다. 즉, 식년시에서는 1회 평균 36.6인을 뽑았는데 비하여 각종 별시에서는 1회 평균 14.1인을 뽑았고, 식년시는 3년에 한 번씩 실시되었는데 비하여 각종 별시는 7개월에 한 번씩 실시된 셈이다.

태종조에 알성시와 즉위기념 증광별시가 생긴 이후로, 세종조에 인재를 널리 뽑기 위하여 별시를 계속 실시하였으며, 명종조에 給分直赴會試‧殿試法이 강화되었고 이어서 별시·정시 등 각종 별시가 남발되어 과거시험이 문란하게 되었다. 科弊도 심하여 削名·削科·罷榜되는 경우도 많았고 상황이바뀌면 복과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성균관 유생에 대한 별시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숙종 26년(1700)에는 황감시 외에 유생들을 위한 정시·알성시의 시취 액수를 3인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sup>45)</sup> 大學齋・論語齋・孟子齋・中庸齋・書齋・詩齋・春秋齋・禮記齋・易齋.

<sup>46)</sup> 鄭 光,《朝鮮朝譯科試券研究》(大東文化研究叢書 10,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 院, 1990), 50~51等.

朴連鎬,《朝鮮前期 士大夫教養에 관한 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102~118쪽.

#### 2) 생원·진사시

조선의 개국 초에는 고려시대 귀족들이 사장을 중시하던 풍조를 없애기위하여 진사시인 국자감시를 혁파하고 생원시만 실시하였다. 즉 태조 원년 (1392) 7월에 내린 즉위교서에서 진사시에 해당하는 국자감시는 혁파되었다. 이는 주자학을 신봉하는 개혁파사대부들이 감시가 고려시대 과거제도의 폐풍을 자아낸 장본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감시 자체보다도 좌주문생제에 얽힌 貢擧制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감시는 고려 귀족들의 붕당・학벌・족벌을 유지・강화하는 도구로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민왕 18년(1369) 7월부터 신진 사대부들에 의하여 실행되기 시작한 과거 3층법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고려 구귀족의 온상인 감시의 혁파가 필요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왕조가 서자마자 고려의 국자감시에 해당하는 진사시는 혁파되고 말았다. 진사시를 없애는 대신 성균관 입학시험으로서 생원시를 설치하였다.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시대 문풍을 좌우한 사장 중심의 유학을 배격하고 주자학에서 중시하는 경학 중심의 유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장 시험인 진사시를 아예 없애고 경학시험인 생원시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일대를 거쳐 설행되어 오던 진사시를 하루 아침아 없애기는 어려웠다. 좌주문생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유생들의 관념에 있어서도 그러하였고 건국 초기에 지나치게 급격한 개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진사시를 혁파하기로 한 다음해인 태조 2년에는 감서(진사시)를 실시하여 朴安信 등 99인을 뽑았다. 고려시대와 국자감시도 대체로 99인을 뽑았었다.47)

태종 4년(1404)에 예조에서 제정한 과거 법에서 진사시는 다시 없어졌다. 그리하여 그 뒤에는 생원시만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진사시 폐지에 대한 반 대여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진사시 혁파는 태조조의 정책 입안을 오로지 하고 있던 鄭道傳의 주장에 의하여 실시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정도전이 제

<sup>47)</sup> 李成茂, 앞의 책(1976), 109쪽.

거된 태종조에는 경학 일변도의 정책보다 사장도 아울러 공부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점점 높아졌다. 더구나 정도전을 대신하여 文翰을 잡은 권근은 고려 말 사장파의 거두로서 과거시험에 기초과목인 경학도 중요하지만 응용과목인 시·부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근은 경학만을 공부하고 시·부를 모르면 실제 관직생활을 영위하는 데 실용적이 못된다고 하였다. 예컨 대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 사신이 문신인 경우 그와 시·부로 수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48)

이러한 주장은 끈질기게 계속되어 문과시험에 초장은 강경을 하고, 중장에 시·부, 종장에 策問을 쓰게 하였다. 고려시대의 제술업과 명경업을 문과시험에 통합한 것이다. 그리고 진사시의 복구를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 세종 20년(1438)에 진사시가 복구되었다. 그러나 역시 진사시가 경학 위주와 정책을수행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6년 만인 세종 26년에 다시 혁과되다가 단종원년(1453)에 복구되었다. 그 이후 진사시는 과거제도가 철폐되는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조선 초기의 약 60년간만 진사시가 실시되지 못한 셈이다.49) 그러므로 조선 초기는 적어도 생원시가 진사시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설에는 태조가 일찍이 생원시에 합격한 바가 있어서 진사시보다 생원시를 중요시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는 고려 말 조선초기의 경학 우선주의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 해야 할 것이다. 조선 초기와는 달리 조선 후기에는 생원시와 진사시가 비중이 같았으나 조선 말기에는 오히려 생원시로 다 진사시가 더 중시되었다.50)

한 연구 결과의 통계에 의하면 조선 중기 이후의 생원과 진사의 선발인원, 지역별 진출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순조~철종 년간의 경우는 다르다. 예컨대 고종 28년(1891)에 생원 238명에 진사 559명, 고종 31년에는 생원 278명에 진사 1,055명을 뽑았다. 생원보다 진사가 많았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유생들이 생원보다는 진사가 되기를 원하는 쪽이 많았

<sup>48)</sup> 李成茂, 위의 책 109~110쪽.

<sup>49)</sup> 宋俊浩, 앞의 책(1970), 13~14쪽.

<sup>50)</sup> 李成茂, 앞의 책(1976), 110쪽.

기 때문이다. 한말의 黃玟인 지은 《梅泉野錄》에 보면 당시에 늙은 유생들을 생원이라 불렀으므로 생원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일반 老儒와 구별하기 위하여 오히려 진사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생원·진사시까지도 진사시라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한말에 있어서는 진사시를 더 격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51)

조선시대의 생원·진사시는 향시와 복시(會試)로 구분되는데 향시는 각 지방에서, 복시는 예조에서 실시되었다. 향시에서 뽑힌 후보자는 회시에 응시하여 생원·진사 각 100명씩 200명을 뽑았다. 생원·진사시에는 국왕이 친히참석하는 전시가 없었다. 전시는 문·무과에만 있었다. 생원·진사시의 초시에는 한성시와 향시가 있었는데 한성시에서 200인, 각 도의 향시에서 500인을 선발하여52) 예조가 실시하는 복시에서 생원·진사 각 100인씩을 합격시키게 되어 있었다.

다만 철종·고종년간에는 생원·진사 합격자수가 각각 100인이 훨씬 넘은 숫자를 뽑기도 하였다. 과거제가 문란해지고 신분제가 흐트러지면서 과거 증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생원·진사시 초시와 복시에는 초장과 종장 두 차례의 시험이 있었는데 초장에는 진사시를, 종장에는 생원시를 실시하였다. 즉 첫날 진사시를 실시하고 다음날 생원시를 실시하였다.53) 이 때문에 생원·진사시 양시에 한꺼번에 합격할 수도 있었다. 양시는 雙中·俱中이라고도 하였다.54) 李石亨·裹孟厚·金絿·李珥 등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진사시에서는 시와 부를 각각 한문제씩 출제하였으나 후기에 와서는 양자택일을 하였고, 생원시에서는 《경국대전》에 五經義 1편55)과 四書疑 1편을 부과하였는데 5경의는 《詩經》·《署經》·《周易》·《禮記》·《春秋》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하다가 뒤에 와서는 5경 중 어느 하나만을 택하여 출제하였으며 4서의는 《論語》·《孟子》·《大學》·《中庸》중 어느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통틀어 한 문제를 내어

<sup>51)</sup> 安俊浩, 앞의 책, 29~30쪽.

<sup>52)</sup> 경기 60. 경상 100. 충청 90. 전라 90. 강원 45. 황해 35. 평안 45. 함경 35.

<sup>53)</sup> 曺佐鎬, 앞의 글, 126쪽.

<sup>54)</sup> 崔珍玉, 앞의 글, 12쪽.

<sup>55) 《</sup>大典通編》 에는 《春秋》 를 빼고 四經義.

하나의 긴 논문을 쓰게 하였다. 그러나 인조 11년(1633)부터는 5경의도 4서의 와 마찬가지로 통틀어 한 문제만 내게 되었다.56)

생원・진사시는 子・卯・牛・酉年에 실시하는 식년시와 국가의 경사가 있 을 때 실시하는 증광시가 있었다. 식년시와 증광시는 생원·진사시뿐 아니 라 문 · 무 · 잡과가 다 같이 실시되었으나 별시 · 정시 · 춘당대시는 문무과에, 알성시·황감시·통독·절일제·전강 등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별시는 문과 에만, 4학의 合製는 생원·진사시에만, 都試·觀武科 등은 무과에만 있었다. 경사가 겹칠 때에 실시되는 大婚廣試에서는 문・무과에 한하여 증원해서 뽑 았고 생원·진사시나 잡과는 증광시에서도 식년시의 정원대로 뽑았다. 조선 시대의 생원·진사시는 식년시가 163회, 증광시가 67회, 합계 230회 설행되 었다. 식년시는 3년에 한 번, 증광시는 7.5년에 한 번 설행된 셈이다. 식년시 는 전란이나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에 설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4회에 지나지 않는다. 즉, 임진·정유왜란이 있었던 선조 27년(1594) 과 선조 30년, 과거부정이 있었던 광해군 13년(1621), 병자호란이 있었던 인 조 14년(1636) 등이 그러한 해였다. 식년에 실시하지 못하여 다음에로 퇴행된 것도 아홉 차례나 있었다. 증광시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였을 때에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태종 원년(1401)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에는 종계무변 • 토역 등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에 자주 실시되었다. 증광시는 식년시와 같은 해에 실시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때로는 같은 해에 실시 되기도 하였으며 오히려 식녀시를 다음해로 이루어 실시할 때도 있었다.57)

조선시대 생원·진사의 총수는 생원 24,221인, 진사 23,776인, 합계 47,997 인이었다.58) 이 중 현재 방목이 남아 있는 것만을 보면 생원 19,675인, ·진사 20,974인, 합계 40,649인이다.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생원 또는 진사의 자격증인 白牌를 주

<sup>56)</sup> 曺佐鎬, 앞의 글, 124쪽.

<sup>57)</sup> 崔珍玉, 앞의 글, 18쪽.

<sup>58)</sup> 宋俊浩는《李朝 生員進士試 研究》에서 생원 24,096인, 진사 23,652인, 합계 47,748이라 하였으나 이 통계에 빠진 고종 28년(1891) 식년시의 생원 125인, 진사 124인을 합치면 총 47,997인이 된다.

었다.59) 문·무과에 합격한 사람을 及第·出身이라 한 데 비하여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은 入格이라 하였다. 그러나 잡과 합격자의 백패와는 달리생원·진사시합격자의 백패에는 국왕의 御寶 중의 하나인 과거보를 찍어 주었다. 다시 말하면 생원·진사의 백패는 국왕이 내려주는 합격증이었다.

그러면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자격이 부여되었을까. 우선 생원과 진사는 성균관 상재생으로 들어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부한 다음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생원(및 진사)은 입학의 문이요. 급제 (문·문과)는 입사의 길이다"라고 한 것처럼 생원·진사는 입사가 목적이 아 니라 성균관에 입학하여 문과시험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러므로 생원ㆍ진사시는 문과의 예비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 부에서는 생원·진사시를 문과의 일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식년시 나 증광시에서 배출되는 생원ㆍ진사 200인이 곧바로 성균관에 입학하게 되 어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문과에 전혀 응 시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생원ㆍ진사는 원칙적으로 성균관에 들어 가 원점 300을 따야 문과에 응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었다. 약 300 일 동안 성균관 교육에 출석하면 문과 응시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60) 그 러나 문과에 응시한다고 해서 바로 급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여러 번 떨어질 수도 있었다. 그러자면 오랫동안 백패를 안고 무직의 사류로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스스로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였 다. 이 무직의 사류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으며 또 국가에서 이러한 무직의 사류를 양산하기 위하여 생원·진사시를 설행하고 있었던 것인가. 결국 이러한 문제는 학교제와 과거제가 일원화되지 않고 별개로 운영된 데 서 기인한 것이었다. 중국의 명·청시대처럼 학교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쳐 최종적으로 과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 제와 과거제가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게 된 것은 양반의 이해관계 때문이었 다고 생각된다. 양반들이 구태여 일반 양인도 입학할 수 있는 향교나 4학에 들어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부하여 문과에 응시하는 것을 바라지

<sup>59) 《</sup>經國大典》 권 3. 禮典 白牌式.

<sup>60)</sup> 曺佐鎬, 앞의 글, 117쪽.

않았던 것이다. 양반들도 원칙적으로는 향교나 4학을 거쳐 생원·진사시를 합격한 다음 성균관에 들어가 다시 문과를 준비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양반의 특권이 보장될 수 없었다. 그들은 별도로 私學을 만들어 특권적으로 과거준비 교육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다. 官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사학을 장려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자면 반드시관학에 들어가지 않아도 생원·진사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원·진사시가 향교·4학과는 별도로 설행되었던 것도 이러한 양반들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전근대시대 교육이 관학보다 사학전통이 강하였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관학 중에서도 일반 양인이 많이 들어가는 향교보다는 서울의 양반 자제들이 많이 들어가는 4학에 특전이 더 주어져 있었고생원·진사가 아니면서도 성균관 下齋(寄齋)에 들어가 생원·진사시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승보시도 4학에 편중해서 운영하였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생균관 유생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균관에 들어가는 유생수가 날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학이 허소하다는 한타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문과 응시에 필요한 원점 300을 채운 자격자가 늘 모자라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문과 응시에 필요한 원점을 줄여 주거나 아주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식년시보다 자주 설행되던 각종 별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특히 단 한번의 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알성시·황감시·정시 등에서는 당시에 재학하고 있는 성균관 유생을 시험대상으로 하거나 아예 재학과 관계없이 시험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성균관유생수도 늘 200인을 채울 수 없어 한때 75인으로 줄였다가 《속대전》에 126인으로 정하여 그 중 106인을 생원·진사로 채우도록 하였다. 서울의 세력있는 집안의 자제들은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시설이 나빠서 성균관에서 수학하기를 꺼려 성균관에는 시골출신 유생 30~40명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과거시험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또 국가에서도 이를수용하곤 하였다. 또 부모가 나이가 많거나 병들었을 경우에, 원점을 면제해주게 되어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교모하게 원점없이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문과 응시자에는 생원·진사로서 원점 300을 채웠거나 미달한 자, 전혀 원점을 따지 않은 생원·진사, 생원·진사시를 합격하지 않은 幼學들이 있었다. 그런데 영조조 이전에는 생원·진사(원점이 있고 없고를 관계없이)가 70% 이상 문과에 급제하였거나 영조조 이후에는 오히려유학이 70% 이상 문과에 급제하였다.

생원·진사시가 실시된 229회에 47,748인을 뽑았으나 조선왕조 502년간 (1392~1894) 연평균 95인씩을 뽑은 셈이다.<sup>61)</sup> 이 47,748인 중 문과에는 7,438 인만 급제하였으니 나머지 40,310인의 생원·진사는 무직의 사류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생원·진사 중 약 6.4% 만이 문과에 합격하고 93.6%는 생원·진사의 자격증만 가진 채 늙어간 셈이다.

이 4만여 명이나 되는 생원·진사 중에는 蔭仕나 取才를 통하여 관직에 진출한 자들과 관직과 관계없이 그대로 늙어간 두 부류들이 있었을 것이다. 문과에 급제한 생원·진사들은 물론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고위관직을 역임하였을 것이다. 즉, 생원·진사중 문과급제자들은 정랑·지평·교리·좌랑·정언·감찰·전적·박사·저작·검열·학유 등 이른바 名宦을 지냈는데 비하여 생원 진사 중 蔭官으로 관직에 나아간 사람들은 참봉·현령·현감·찰방·교도 등 하위 외직에 임명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리고 문과에급제한 생원·진사는 50% 이상이 정3품 이상으로 승진하였는 데 비하여 음관으로 진출한 생원·진사는 9%만이 정3품 이상으로 승진하였다. 반대로 종4품 이하의 관직에는 문관이 27.4%, 음관이 80.7%가 속해 있었다. 또한 문관의 終職은 70%가 정품직이었는 데 비하여 음관의 종직은 5.5%만이 정품직이고 나머지는 종품직이었다. 이것은 대체로 名宦이 정품직이었고 참봉·현령·찰방 등 외직이 종품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620

한편 조선 초기에는 1회의 생원·진사시 입격자 200인 중 30%인 66인이 문과에 진출한다는 전제 아래 54명이 문과에 급제하였으니 88%가 목적(문과 급제)을 달성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14명이 문과에 급제하였으니 24%가 목

<sup>61)</sup> 崔珍玉의 통계에는 186회에 생원 19,675인, 진사 20,974인, 합계 40,649인을 뽑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현존하는 司馬榜目(小科榜目)에 · 나타나는 것만을 정리한 숫자이다.

<sup>62)</sup> 宋俊浩, 앞의 책, 48~49쪽.

적을 달성한 셈이고, 고종시대에는 12%만이 목적을 달성하였다. 즉 조선 초기에는 문과에 응시하기 위하여 생원·진사시를 본 사람이 많았는데 비하여 조선 후기 이후에는 문과에 뜻이 없거나 문과를 단념하지 않을 수 없어 생원·진사의 자격만을 따기 위해 생원·진사시를 본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63)

그러나 음관의 경우 생원 • 진사가 되자마자 관직을 받은 자는 극히 소수 이며 그 중의 반 이상이 10년을 기다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20년을 기다려 관직을 받는 것이 보통이었다. 관직이라 해도 五衛將이니 참봉이니 교도니 하는 미관말직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문과에 급제한 생원ㆍ진사도 5년 이내 에 급제한 사람은 34%에 불과하며, 10년이 넘어서 급제한 사람이 33%이고, 30년이 넘어서 급제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 중에는 물론 음관으로 진출하 는 사람도 있었지만 무직의 사류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많았다. 무직의 사류로 남아 있는 사람 중에는 가문의 배경이 약한 지방 출신이 더 많았다. 서류 출 신은 33%가 무직의 사류였는데 지방 출신은 70~80%가 무직의 사류였다.64) 이러한 무직의 사류들은 지방사회에서 司馬所 등 지방 양반들의 자치기구 를 만들어 향촌지배에 앞장 섰다. 향교의 靑衿錄을 장악하고 서원의 유사를 맡는 것도 이들의 할 일이었다. 따라서 생원ㆍ진사는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이었을 뿐 아니라 지방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확실한 양반의 자격증 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므로 문과 몇 장. 생원·진사 몇 장을 냈느냐에 따라 가문의 성쇠가 좌우되었다. 이들은 생원ㆍ진사의 자격을 내세워 지방민의 교 화. 하층민의 지배를 강화할 뿐 아니라 인물의 진퇴, 조세수납, 군역책정, 수 리시설의 관리ㆍ이용. 혼인관계 등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들은 또한 지 방토호로서 지방수령과 결탁하여 각종 이권과 권한을 독차지하였으며 지방 양반으로서 지방통치에 군림하고 있었다. 이들은 서양의 Gentrv와 같은 지위 와 권한·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지방사회의 지배자들이었다. 그러므로 비록

문과에는 급제하지 못하더라도 생원·진사가 되고자 애쓴 것이며 조선 후기

<sup>63)</sup> 宋俊浩, 위의 책, 40~41쪽.

<sup>64)</sup> 宋俊浩, 위의 책, 49~52쪽.

로 올수록 생원·진사를 양산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 3) 무 과

고려시대에는 예종 4년(1109)부터 인종 11년(1133)까지 24년간을 제외하고는 武科가 실시되지 않았다. 고려시대의 崇文偃武 정책으로 무관을 양성하는 무학이나 무관을 선발하는 무과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에 무관은 行伍에서 무재가 있는 사람을 뽑아 쓰는데 그치고 있었다. 지방의 반독립적인 무적 성격이 강한 향리세력을 누르고 중앙집권적인 문치주의를 확립하기위해서였다. 고려 광종조에 과거제도를 실시할 때, 문과에 해당하는 제술업・명경업과 잡과에 해당하는 잡업만 실시하고 무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도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양반관료제를 운영하려면 문·무과가 균형있게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양반관료 체제에서는 문반과 아울러 무반이 짝을 이루고 있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미 고려 말인 공민왕 원년(1352)에 李穡이 무과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실천에 옮겨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민왕 20년 12월에 문·무의 균형을 꾀하여 유학인 성균관·향교와 아울러 무학을 설치하였고, 공민왕 21년에 10학을 설치할 때 무학을 軍候所에 두기로 하였으며, 다음해인 공양왕 2년(1390)에는 都評議使司의 건의에 따라 무과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고려왕조가 멸망함에 따라 무과는 실시되지 못하였다.65)

그리하여 무과의 실시는 조선왕조의 건국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문과와 아울러 무과도 訓鍊觀 주관으로 33인을 뽑도록 명하였다.66) 이는 공양왕 2년에 정해진 무과의 실시 규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훈련관은 송의 무학을 본뜬 것으로 고려 말의 군후소를 합병하여 무과를 주관하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태조가 즉위한지 한 달 뒤인 태조 원년(1392) 8월에는 入官補吏法을 만들어 정도전이 제창한 문과・무과・

<sup>65)</sup> 沈勝求, 앞의 글, 6~7쪽.

<sup>66) 《</sup>太祖實錄》 권 1, 태조 원년 7월 정미.

이과·문음을 관리를 뽑는 네 가지 길로 확정하였다. 그런데 태조 2년에는 文·武科放榜儀를 제정하고 태조 3년 12월에는 무과시험에 太一算을 포함 시켰으며, 태조 6년 5월에는 무과 출신자를 문과의 예에 따라 서용하도록 하였다.<sup>67)</sup>

그러나 새 왕조가 개창되었다고 해서 고려의 구체제를 즉시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태조 2년 3월에 실시된 과거시험에서는 제도적으로 혁파되었던 국자감시를 그대로 실시하였다. 이에 조선시대의 무과가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태종 2년(1402) 정월에 가서였다.68) 이 무과법은《經國大典》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태종조의 무과 실시는 정종 2년(1400) 4월에 있었던 사병혁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고려 말에는 병제가 해이되어 각 節制使들이 멋대로 군사를 뽑아 거느리고 있었다. 잦은 외침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취해진 조처였다. 이렇게 뽑힌 군사들은 그들을 뽑은 무장들의 사병에 불과 하였다. 이러한 사병은 새로이 건국된 조선왕조의 군사권을 강화하는데 커 다란 장애물이었다. 이에 태조조의 정도전은 義興三軍府를 설치하면서 사병 을 혁파하고 병권을 국가에 귀일시키려고 하였으며, 정도전이 실각한 뒤에 새로이 집권한 李芳遠(태종)은 정종 2년 4월에 사병을 혁파하였다. 반면에 중앙군과 시위군을 강화하기 위하여 別侍衛・內禁衛・內侍衛・甲士 등 특 수군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무관과 군사를 양성ㆍ선발함 필요가 있었다. 무학과 무과를 설치ㆍ실시한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고려 말부터 설치되어 온 무학이 태조 2년에는 兵學・律學・字學・譯學・ 醫學‧算學 등의 8학에 포함되어 무과에 응시하려면 훈련관에서 무학교육 을 받은 다음 무과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무학이 유학인 성균관·4 학·향교처럼 따로 설치된 교육기관으로 독립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무학에 입학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과에 응시할 수 없는 것도 아니어서 무과교육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태종 6년 11월에 증설된 10학69)에서는

<sup>67)</sup> 沈勝求, 앞의 글, 9~10쪽.

<sup>68) 《</sup>太宗實錄》 권 3, 태종 2년 정월 을축.

<sup>69)</sup> 儒學・武學・吏學・譯學・陰陽風水學・醫學・字學・律學・算學・樂學.

유학만은 현임 7품 이하가 입학하게 하고 무학을 비롯한 나머지 9학은 현임·전임 4품 이하가 四仲朔에 시험을 통하여 입학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중에서 우수한 사람은 취재시험을 통하여 임용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무학은 하급관리들의 취재 교육기관으로 전략하였다. 결국 무과는 무학교육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도 응시할 수 있게 되었고 무학취재가 더 중요한목적으로 된 셈이다.70)

한편 座主門生制를 혁파하면서 무과의 시관 명칭도 바뀌었다. 즉 태종 10년(1410) 10월에는 무과의 監校官・同監校官을 폐지하고, 태종 14년에는 兵曹 祝壽齋와 武科祝壽齋를 혁파하였으며, 종래 훈련관이 담당하던 무과업무를 병조가 주관하고 훈련관이 동참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종조에는 무과 시험과목으로 무예만 시험보이던 것을 병서와 유교경전을 아울러 시험보였다. 將才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무예뿐 아니라 유교적인 경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전술보다는 전략이 우선이라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71)

무과에도 문과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 정기시험인 식년 시와 부정기시험인 별시가 있었다. 3년 1試의 원칙은 이미 고려 선종조에 정해졌으나 고려시대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 후 태조 2년(1393) 3월에 3년 1시의 원칙이 다시 확인되어 태종 2년 무과부터 철저히 준수되어 왔다. 식년 무과에는 식년 문과처럼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 시험이었다. 그러나무과에는 문과의 생원·진사시와 같은 예비시험은 없었다. 무과 초시에는 훈련원72)에서 실시되는 院試와 각 도별로 실시되는 향시가 있었다.73)

원시는 훈련원에서 錄名試取하였고, 향시는 각 도병마절도사가 차사원을 보내어 녹명시취하였다. 초시에서 뽑힌 190인을 다시 병조에서 실시하는 복 시(회시)에 응시하여 28인을 뽑아 전시에서 왕의 친림 하에 등급을 정하여

<sup>70)</sup> 沈勝求, 앞의 글, 15쪽.

<sup>71)</sup> 沈勝求, 위의 글, 16~17쪽.

<sup>72)</sup> 訓鍊觀이 뒤에 訓鍊院으로 바뀌었다.

<sup>73)</sup> 무과 초시의 정원은 훈련원 70인, 경장 30인, 충청.·전라 각 25인, 강원·황해·평안·합경 각 10인, 합계 190인이었다(《經國大典》권 4, 兵曹 武科).

갑과 3인, 을과 5인, 병과 20인을 정하였다. 그런데 무과의 경기 향시는 태종 2년부터 있어 왔으나 세종 8년(1426)정월에 폐지되고 그 정원은 원시에 편입되어 50인에서 70인으로 늘었다.74) 식년 무과는 거의 식년 문과와 함께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초시는 上式年(식년 전해인 寅・申・巳・亥年) 가을에, 복시와 전시는 식년 봄에 실시되었다.

무과의 경우도 문과와 마찬가지로 식년시 이외에 증광시・별시・알성시・정시・觀武才(춘당대시)・외방별시・중시・발영시・등준시・진현시 등의 별시가 있었다. 중광시는 시험방법이나 시취액수가 식년시와 같았고 대증광시에서는 초시・복시에 증광시의 두 배를 뽑았다. 증광시는 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는데 증광 문과는 태종 원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증광 무과는 세종 원년(1419) 4월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증광시에는 문・무・잡과가 동시에 설행되었다. 대증광시는 경사가 겹칠 때에 설행되었다.75)

문과 중시는 태종 7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나 무과 중시는 태종 10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태종 16년부터는 문·무과 중시가 함께 실시되었다. 중시는 丙年에 실시되는 것이 상례였고 당하관 이하의 문·무 관료들이 응시하였으며 합격한 사람에게는 승진의 혜택이 주어졌다. 중시를 실시할 때에는 별시도 함께 설행하였는데 이를 초시라 불렀으나 이것은 문·무과 초시와는다른 것이었다. 무과 중시는 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시취하였는데 문과 중시와 함께 10년만에 한 번씩 실시되었다. 그러나 초시 兩所에서 각 50인씩을 뽑는 것이 다르다.76)

별시・알성시・장시・관시재・중시는 초시・전시 두 차례의 시험만 있었으며 그때그때 뽑는 수를 정하였다. 다만 알성시는 초시의 양소에서 50인을 뽑아 전시에서 국왕의 친림 아래 시취하는 것이 다르다. 알성시는 국왕이성균관 문묘에 나아가 석전제를 지낸 다음 실시하는 특별시험이었다. 알성시는 태종 14년(1414) 7월에 처음으로 설행되었는데 이 때에는 문과만 실시되었다. 그 이유는 武聖廟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세종 13년(1431) 3월에

<sup>74) 《</sup>世宗實錄》 권 31, 세종 8년 정월 기유.

<sup>75)</sup> 沈勝求, 앞의 글, 25쪽.

<sup>76)</sup> 沈勝求, 위의 글, 27~28쪽.

는 훈련관 북쪽에 무성묘를 세우고자 하였으나 문신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그 대신 알성시에 무과도 함께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세종 16년 2월부터 무과도 알성시에 함께 보이기로 하였다. 알성 무과는 초시와 복시의 두 단계가 있었다.77)

관무재는 2품 이상 문관과 무관 각 1인이 시관이 되어 한량·군관·조관에서 시취하였고 禁軍은 따로 병조판서가 시관이 되어 시취하였으며 전시는 춘당대에서 국왕의 친림 아래 2품 이상 문관 1인, 무관 2인이 참시관이 되어 시취하고 외방 관무재는 의정 1인이 命官(왕명을 띤 관원)이 되어 시취하였다. 관무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은 한량은 전시에 직부시키고, 출신은 수령이나 변장에 임명하였으며 군관은 가자하거나 상을 주었다.78)

무과 중시는 정시와 같은 방법으로 시취하였는데 문과 중시와 함께 10년 만에 한 번씩 실시되었다. 그러나 초시 양소에서 각 50인씩을 뽑는 것이 정 시와 달랐다.

중시와 비슷한 시험으로 발영시·등준시·진현시가 있었다. 발영시는 세조 12년 5월 단오절에, 등준시는 세조 12년 9월에 실시되었다. 발영시와 등준시에는 종친 및 재상 이하 모든 관료가 응시하였는데 합격자는 관직을 올려주었다. 이들 시험에는 초시와 전시 두 차례의 시험이 있었다. 진현시는 성종 13년(1482) 10월에 실시되었는데 문신 4인 무신 10인을 선발하였다. 그러나이 세 가지 시험은 세조·성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특별시험으로 한 번씩밖에 실시되지 않았다.79)

외방 별과는 평안도·함경도·강화·제주에서 국왕의 特旨에 의하여 실시되는 무과 별시의 일종으로 중신이나 어사를 보내어 단 한번의 시험으로 급락을 결정하였다. 중신이 파견될 때는 空名牌를 보내어 합격자의 이름을 직접 써넣어 발표하게 하였고 어사를 파견할 때는 합격자를 무과 전시에 직부하게 하였다.80)

그리고 무과와는 조금 다르지만 지방의 한량과 군관·조관을 대상으로

<sup>77)</sup> 沈勝求, 위의 글, 26~27쪽.

<sup>78)</sup> 曺佐鎬, 앞의 글, 180쪽.

<sup>79)</sup> 沈勝求, 앞의 글, 29쪽.

<sup>80)</sup> 沈謄求, 위의 글, 26쪽.

무예를 시험보이는 都試와 觀武科가 있었다. 도시는 무관들의 무예를 꾸준히 연마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조선시대에만 있던 시험이었다. 이것은 문관의 문신월과법에 비견되는 시취제도였다. 도시는 매년 봄(4월경)·가물(8~11월경) 두 차례 실시되었다. 다만 국상 등 국가의 큰 일이 있을 때는 거르기도 하였다. 京中都試의 시관은 병조의 주관하에 의정부·6조·도총부 당상관·훈련원 당상관 각 1인이 되었으며 시험일에는 의정부·6조 당상관이모두 침관하게 되어 있었다. 外方都試의 시관은 처음에는 각 도의 감사와都試制使가 맡았는데 세조 12년(1467)부터 감사와 병마절도사가 맡았다. 그러므로 경기·황해·강원도와 같이 감사가 병마절도사를 겸임하고 있는 곳에서는 감사 혼자 도시의 시관이 되었다. 도시는 한 차례의 시험밖에 없었다. 다만 외방 도시는 예비시험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세종대를 전후하여 중앙군이 외방 도시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시험절차는 경중 도시와 같아지게 되었다.81)

태조대의 도시에는 전국의 군민이 다 응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종조의 도시에는 삼군갑사・별시위・성중애마・한량인・각품양첩자 등 다양한 계층이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의 주목적은 중앙군을 대상으로 하여 훌륭한 감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었다. 경중 도시의 경우는 적어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외방 도시에는 侍衛牌・營鎭軍・守城軍・騎船軍・閑良 등 일반 병종의 군사들도 응시하게 되어 있었다. 이는 세종조 말의 중앙군의 지방군화로 군역이 일원화되는 데에 따른 결과였다. 다만 수령・우후・만호와 그 자제들은 그 도의 외방 도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시험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내금위의 군사는 도시에 응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조 6년(1460) 5월부터는 내금위와무과 급제자・검사복・종3품 이하의 동・서반 관료들까지 자원에 따라 도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에게는 1등의 예로 선발하는 특전까지 주었다. 무재가 뛰어난 무관을 뽑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들에게는 무예시험을 면제해 주고 講書시험을 보여 별도로 상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세조조

<sup>81)</sup> 沈勝求, 위의 글, 29쪽.

沈勝求,〈朝鮮初期 都試斗 그 性格〉(《韓國學報》60, 1990), 103~104\.

의 도시는 세종조의 도시와 달리 무반의 加資·給到를 위한 시험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에 강서시험을 첨가한 것도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였다.<sup>82)</sup>

도시의 선발 인원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태조 4년(1395)에는 문과와 같은 33인이었다. 무과가 실시되기 이전인 태조대의 도시는 무과적 성격을 띠고실시되었던 때문이다. 그 후 세종 25년(1443)에는 도시의 정원을 1등 7인, 2등 23인, 3등 40인, 합계 70인으로 정하였으며, 세조 6년에는 무과 급제자와무관들까지 도시에 참여하게 하여 정원을 1등 7인, 2등 33 인, 3등 60인, 합계 100인으로 늘렀다. 이것은 무예로써 뽑는 정원이고 따로 병서를 시험보여 20인을 뽑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예와 병서의 성적을 종합하여 성적순으로 뽑았으므로 두 가지 시험의 구별은 무의미하게 되었고, 《경국대전》에는 정원조차 밝히지 않았다.83)

도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관품을 一資씩 올려주거나 갑사・별시위에 입속시키거나 급사・급도의 특진을 주었다. 그러나 지방 도시합격자에게는 서울의 도시합격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급사・급도의 혜택을 주었다. 이와 같이 도시는 무관・군사들의 무재를 시험하여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과 급제자와 내금위 군사는 반드시 도시에 응시하게 하여 승진의 특전을 보장해 주였다. 무과가 무재를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인 데 비하여 도시는 무과 급제자를 포함한 무관・군사들의 무예 단련을 위한 재훈련과정으로서 우수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시험이었다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는 신분의 차이없이 광범하게 응시할 수 있었고한 번의 시험으로 성적을 평가하는 단시험제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도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는 무과 전시에 직부시키는 제도가 생겨나게되었다.84)

그런데 식년 무과에서는 28인의 정원을 대체로 지켰으나 별시 무과의 경우는 항상 식년 무과의 시취액수보다 많이 뽑았다. 특히 세조는 북정에 따른

<sup>82)</sup> 沈勝求, 위의 글(1990), 106쪽.

<sup>83)</sup> 沈勝求、 위의 글、 101・115~121쪽.

<sup>84)</sup> 沈勝求, 위의 글, 121~123쪽.

약인의 회유책 또는 서북 지방민을 위한 인심수습책의 하나로서 별시 무과를 자주 설시하여 많은 인원을 뽑았다. 이것은 조선 후기의 萬科設行의 시작에 불과하였다.85) 조선 전기에는 남으로 왜, 북으로 여진의 세력이 성장하여 남북으로 조선을 괴롭혔다. 이에 조선에서도 이러한 南倭·北胡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86) 이러한 군사행동에는 많은 군사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외침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각 진에 배치되어 있는 留防兵만으론 충분하지 않았다. 더구나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유방병의 병력수를 채울 수 없었던 데다가 이들에 대한 생활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변장들의 침탈로 도망병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만과를 자주 설행하여 군사를 보충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을묘사변 이후에도 외환은 그치지 않았다. 선조대에 尼湯介劑을 비롯하여 선조 25년(1592)의 임진왜란, 인조 14년(1636)의 병자호란 등이 잇따라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전공을 세운 사람은 그 정도에따라 무과에 등과시키기로 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왜인의 목 하나를 베어오면 공·사천을 막론하고 무과에 등과시켜 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무과 급제자는 수천 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飢民의 머리를 베어 왜인의 머리라고신고하여 급제한 자도 생기고 천인들이 행운을 얻는 자가 많아 무과는 드디어 일반화가 되었다.87) 그리하여 임진왜란 이후에는 무과출신을 기간요원으로 하고 양민과 노비를 혼성한 東伍軍이 출현하게 되었다.88)

<sup>85)</sup> 萬科란 무과시취를 천인·만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원을 뽑는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로 숙종 2년(1676) 3월에는 八道庭試에서 18,251인을 뽑은 바 있었으며, 인조 5년(1627) 2월 山城庭試에서 5,464인, 광해군 10년(1618) 7월 庭試에서 3,200인, 동왕 12년 7월 庭試에서 3,000인, 동왕 13년 9월 庭試에서 4,301인을 뽑은 바 있다. 茶山 丁若鏞도 "有取數百者 謂之千科有取數千者 謂之萬科 此又何法也"(丁若鏞,《經世遺表》권 43, 夏官修制 武科)라 하여무과에서 수백 인을 뽑는 것을 千科, 수천 인을 뽑는 것을 萬科라 하였다.

<sup>86)</sup> 鄭道傳의 北邊 개척(태조조), 李從茂의 對馬島 정벌(세종조), 金宗瑞의 六鎭 개척(세종조), 申叔舟의 北征(세조조)·三浦倭亂 진압(중종조)·乙卯倭邊 진압(명종조) 등이 그것이었다(李洪烈,〈萬科設行의 政策史的 推移),《史學研究》 18. 1964, 216쪽).

<sup>87)</sup> 李睟光、《芝峰類說》 권 4. 官職部 科目.

<sup>88)</sup> 李洪烈, 앞의 글, 225쪽.

이러한 현상은 광해군조의 만주출병, 효종조부터 숙종조에 이르는 북벌계획으로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광해군 10년(1618) 7월에 병조는 대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나머지 증광 무과의 초시에 입격한 사람을 전시에 직부하는 조치까지 내렸다. 89) 이러하여 아들 여섯이 다 무과에 급제하는 기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만과는 계속 성행하여 무과는 천한 과거로서 천인들로 차 있었으며 무과 출신자라고 다 변방에 入防하는 것이 아니어서 서울에는 등용되지 못한 자들이 가득하여 불평자들로 들끓게 되었다. 한편 한번 북변에 부방한 문과 출신자들은 병역 면제의 특혜를 받게 되어오히려 정상 병력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다. 쌀값도, 오르고 뇌물을 주어관직을 구하는 행위(奔競)가 성행하게 되었다. 정치인들은 이들을 당쟁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병력과 전결이 그 이전보다 약 3분의 1이 줄어들어 국가재정이 극도로 피폐하여졌다. 이에 국가에서는 그 변통책으로서 賣官賣爵・庶孽許通·奴婢放良・通行帖發給・納聚補官・校生免講 등 비상수단을 동원하였다. 이와 아울러 무과 급제자들에게 쌀이나, 화폐의 대용으로 쓰이던 면포를 받고 북변 근무를 면제해 주는 조처를 취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계속 북변지방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청나라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조처를 합리화하기도 하였다. 만과 출신의 除防納米量은 1인당 5섬으로 정하여졌다.90) 이것은 식년 무과 출신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무과 출신자들에 대해서는 납미뿐 아니라 군포・군량・전마를 징수하기도 하여 국가의 옹색한 재정을 타개하고자 하였다.91) 그리하여 《속대전》에 납미자, 60세 이상된 자, 부모가 80세가 된 자를 제외한 무과 출신자는 모두 서북 변경의 군아 赴防해야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92) 그런데 양반 자제에 대한 부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유의해 볼 만하다. 변방 방위를 위하여 양반의 무과 출신자들은 의무적으로 지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고,기타 양・천의 무과 출신자들에게는 납미하게 하여 국가재정을 보완해 보

<sup>89) 《</sup>光海君日記》(太白山本) 권 130. 광해군 10년 7월 갑인.

<sup>90)</sup> 산간지방은 綿布로 대납.

<sup>91)</sup> 李洪烈, 앞의 글, 326~238쪽.

<sup>92)《</sup>續大典》 권 4, 兵典 留防.

자는 의도였다.

만과의 설행은 변방 방어의 긴요성이 줄어든 조선 후기에도 계속되었으며 식년 무과의 시취인원도 늘어만 갔다. 국방상의 이유에서라기 보다는 재정상 의 이유 때문이었다. 시취 명목은 국가경사나 권무를 빙자하였다. 현종 초년 에는 따로 勸武廳을 두고 권무과를 실시하기도 하였다.<sup>93)</sup> 무과 출신자는 그 자신은 물론 그 아들·사위·동생·조카까지 충순위에 소속되는 有廳軍官으 로 명명되어 포 1필(전은 2냥)씩을 납부해야만 하였다.<sup>94)</sup> 국가재정 보전책의 일환이었다. 이와 같이 만과는 처음에는 국방상의 이유로, 뒤에는 재정상의 이유로 자주 설행되어 많은 무과 출신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들 급제자 중 에는 양반 자제뿐 아니라 천인 자제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병력의 저질 화와 신분제의 혼효를 초래하게 되었다. 만과의 현상은 과거제도가 폐지되는 고종 31년(1894)까지 계속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별시에서 수백·수천 인의 급제자를 배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식년 무과에서도 정원인 28인을 넘고 특히 숙종조 이후에는 수백 인씩 뽑았다. 그리고 무과는 거의 매년 실시되었고 한 해에 몇 번씩 실시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결국 무과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사회혼란을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국가의 궁핍한 재정을 보완하고 하층민들의 신분 상승을 돕는 계기로도 이용되었다.

한편 임진왜란 이후인 선조 28년(1600)에는 각 도에 중앙의 훈련원에 비견되는 무학을 설치하고 武學事目을 만들어 군사 양성을 집중적으로 하도록하였다. 95) 그리고 武學案에 등재된 사람을 무학이라는 직역을 부여하게 되었다. 무학이라는 직역은 선조 39년의 《出陰帳籍》에서부터 보인다. 96) 무학은 마병으로 편제되었으며 때로는 포병·수군으로도 편제되었다. 97) 또한 인조 22년(1644)의 各道校生考講事目에서는 낙강자를 우선 무학시재를 거쳐 여기

<sup>93)</sup> 李洪烈, 앞의 글, 239쪽.

<sup>94)</sup> 丁若鏞,《牧民心書》 권 28, 兵典 勸武.

<sup>95)</sup> 李俊九,〈朝鮮後期의「武學」攷〉(《大丘史學》23, 1983), 6~7\.

<sup>96)</sup> 李俊九,〈武學과 그 地位變動〉(《朝鮮後期 身分職役變動研究》,一潮閣, 1993), 68等。

<sup>97)</sup> 李俊九, 위의 글(1993), 70쪽.

에서 떨어진 자를 軍保에 편입하도록 하였다.98)

무학은 본래 忠順衛・忠壯衛・業武・業儒와 함께 규정 외의 면역자였다. 그러나 현종 5년(1664) 이후에는 이들은 모두 종신토록 면포 2필씩만을 부담하는 의무만 지게 되었다.99) 무학에는 양반자제들이 많이 속해 있었다. 그러나 숙종 31년(1705) 이전에 이미 무학이 무학군으로 作隊되면서 여기에 입속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무학의 지위도 낮아지게 되었다.100) 따라서 양반 자제 이외에 중인・서얼들도 입속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학은 반상의 중간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101) 무학은 또한 도시의 대상이 되기도하였다. 이리하여 무학은 일반 양인들의 신분 상승의 기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인들도 노비를 소유하고 雇工을 둘 만한 경제적 여유를 가진 富戶들이었다고 추정된다.102)

### 4) 잡 과

조선시대의 잡과에는 譯科·醫科·陰陽科·律科 등 네 종류가 있었다. 태조 원년(1392) 8월의 入官補吏法에는 국가관리를 뽑는 관문으로 文(門)蔭·문과·무과·이과·역과·의과·음양과 등 7과가 있었는데 이 중 잡과로는 이과·역과·의과·음양과의 4과가 있었다.103) 율과가 빠지고 서리를 뽑는 이과가 있었던 셈이다.

고려시대의 잡업으로는 醫卜·地理·律·畵·算·三禮·三傳·何論이 있었다. 이 중 율·서·산이 취재시험으로 바뀌고 경전시험인 3례·3전·하론이 빠진 것이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 신설된 吏科는 문·무과와 구별되는 파급서리인 성중관원(뒤에 녹사)를 뽑는 잡과 시험이었다.104) 그러나 이과는

<sup>98) 《</sup>備邊司謄錄》 37책, 숙종 9년 12월 12일.

<sup>99)</sup> 李俊九, 앞의 글(1993), 71~72쪽.

<sup>100)</sup> 李俊九, 위의 글, 75쪽.

<sup>101)</sup> 李俊九, 위의 글, 78쪽.

<sup>102)</sup> 李俊九, 위의 글, 85・92쪽.

<sup>103) 《</sup>太祖實錄》 권 1, 태조 원년 8월 신해.

<sup>104)</sup> 鄭道傳의《朝鮮經國典》入官條에 7과를 설명하는 가운데 "謂薄書期會金穀營

7과가 설치된 태조 원년(1392) 8월에 바로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실록에 의하면 이과는 취재로 뽑아오다가 세종 8년(1426) 4월에 처음 잡과에 편입되어 다른 잡과의 예에 따라 식년마다 가례·율·서·산·《元六典》·《續大典》·《訓民正音》등 시험을 보여 70인을 뽑아 성중관에 빈 자리가 생기면 임용하도록 되어 있었다.105) 그러나 이과에 관한 법규가 육전에 기록되지 않아 세종 13년 9월에 가서야 실시하게 되었다.106) 그리하여 이과 1등에는 架閣庫丞同正, 2등에는 副丞同正, 3등에는 錄事同正을 주었으나 뒤에 가각고가 헛이름에 불과하다고 하여 백패를 주었다.107) 이와 같이 이과는 조선초기의 약 40여년 동안 실시되어 오다가 다시 吏員取才로 바뀌게 된 것이다. 당시에 이과가 실시됨으로 해서 율·서는 여기에 포함되었다가 이과가 없어진 다음에 율만의 율과로 독립되고 산은 算員取才로 그대로 남게 되었다. 算學取才案이 계속 남아 마치 산과와 같은 인상을 주게 된 것도 이러한 때문이었다.

이과와는 별도로 東文科도 일시 시행되었다. 즉 태종 7년(1407) 3월에는 이문을 문과시험의 선택과목으로 하거나 문과 종장에「東文之士」를 같이 시험보여 문과 급제자에 포함시키는 특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다.108) 그러나 세종 5년(1423) 12월에 승문원이 생기자 이문과는 없어지고 문과에 이문을 아울러시험보여 승문원에 보내게 되었다.109) 이와 같이 이문과는 설치된 지 불과 6년만에 없어지고 승문원이 이문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다.

이문과와 함께 譯科도 조선왕조의 외교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관 충원을 목적으로 국초부터 실시되었다. 역과 중에는 漢語·蒙語·女眞語·倭 語의 4과가 있었는데 한어가 가장 중시되었다. 대명외교의 중요성 때문이었 다. 따라서 한어과는 국초부터 실시되었으나 몽어과는 세종 원년 4월에,110)

造之事 供給應對之節 不可以不習 置吏學"이라 한 것으로 보아 吏科은 吏員選 拔試驗이었음을 알 수 있다.

<sup>105) 《</sup>世宗實錄》 권 32, 세종 8년 4월 갑신.

<sup>106) 《</sup>世宗實錄》 권 53, 세종 13년 9월 계미.

<sup>107) 《</sup>世祖實錄》 권 46, 세조 14년 6월 병진.

<sup>108) 《</sup>太宗實錄》권 13, 태종 7년 3월 무인.

<sup>109) 《</sup>世宗實錄》 권 22, 세종 5년 12월 을축.

<sup>110) 《</sup>世宗實錄》 권 3, 세종 원년 4월 경인.

왜어과는 세종 23년 7월 이전에,111) 여진어과는 문종 원년(1451) 4월에112)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성종 13년(1482) 무렵 한때 문과에 한어를 함께 시험보여 그 합격자를 문과 출신자와 같은 자격으로 서용코자 하였으나 문신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113)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조선사회에서 한역관의 지위가 양반만은 못하였지만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역과를 담당하던 관청은 司譯院이었다. 사역원의 연원은 泰封의 史臺에 소급되며, 고려 충렬왕 2년(1276)에 通文館이 생겨 외국어에 관한 사무를 맡았고, 뒤에 사역원이 생겨 역관의 교육과 역과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공양왕 3년(1391)에 漢語都監을 한문도감으로 바꾸었다고 한 것을 보면 고려말에 한어도감이 있었다가 이 때에 한문도감으로 바꾼 것 같다.114)

이와 같은 고려시대의 중첩된 역학·역과 담당 관서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사역원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리하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역과 중에 한어과· 몽어과·왜어과·여진어과가 차례로 생기게 되었다.<sup>115)</sup>

한편, 지방의 역학은 지방 요충지에 설치되었다. 세종 10년에는 이미 있었던 평양 譯學院의 예에 따라 義州에 한학이 생기고, 동왕 12년에는 乃而浦・富山浦・鹽浦에 왜학을, 동왕 15년에는 黃州에 한학을, 예종 원년(1469)에는 熊川・東萊에 왜학을 각각 설치하였다. 《경국대전》에는 웅천・동래의 왜학이 폐지되었고, 義州・昌城・理山・碧潼・渭原・滿浦・北靑에 여진학이 신설되었으며, 정조 때에 만든 《대전통편》에는 薺浦・鹽浦의 왜학이 없어진 대신 巨濟에 왜학을, 濟州에 한학과 왜학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고종 때에 만든 《六典條例》에는 제주의 한학・왜학과 의주와 여진학이 없어진 대신 宣川에 몽학, 海州・甕津・咸興에 한학, 全羅左・右水營과 統制營에 한학과 왜학을 각각 신설하였다. 이러한 지방 역학원에서는 鄕通事를 양성하여 중앙의 사역원에 파견근무시켰으며 중요한 역관은 사역원에서 양성・선발하였다.116)

<sup>111) 《</sup>世宗實錄》권 93, 세종 23년 7월 정미.

<sup>112) 《</sup>文宗實錄》권 7. 문공 원년 4월 을해.

<sup>113) 《</sup>成宗實錄》권 139. 성종 13년 3월 을축ㆍ계사.

<sup>114)</sup> 李洪烈,〈雜科試取에 對한 一考〉(《白山學報》3, 1967), 334쪽.

<sup>115)</sup> 李洪烈, 위의 글, 334~335쪽.

<sup>116)</sup> 李洪烈, 위의 글, 336쪽.

의학교육이나 의학시취를 담당한 관청은 與醫監이었다. 고려시대에는 太醫監(목종대)·惠民署(예종대)가 있었으나, 고려 말에는 與醫寺·惠民庫局으로 개칭되었다. 조선 태조의 즉위 초에 전의감·혜민국을 두었고, 태조 6년 (1397)에는 따로 濟生院을 두어 三醫司라 불렀다. 이 중 전의감에서 의학교육과 의과시취를 담당하였으며 혜민국에서는 약재 수집과 민생의료를, 재생원에서는 약재 수집·의녀교육·미아수양 등의 일을 맡았다. 그러나 제생원은 세조 6년(1460)에 혜민국과 일시 합쳤다가 곧 부활되었다. 전의감에서 뽑은 의과 출신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하였으므로 세종조부터는 3의사에 의생방을 따로 두어 의학교육을 시켰다. 이것이 의학설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117)

3의사 이외에 고려 목종 때는 전의감에 병설되어 있던 內藥局118)이 설치되어 왕실의 의료를 담당하였으나 고려 말에 奉醫署로 개칭되었다가 전의사에 통합되었고,119) 세종 25년(1443)에는 內醫院으로 독립되었다. 그리하여 재생원이 폐지된 뒤에는 전의감·혜민국·내의원을 3의사라고 부르고 의학교육은 전의감과 혜민국이, 의과시취는 전의감이, 의녀교육은 혜민국이, 왕실의료는 내의원이 담당하였다. 지방 의학기관으로는 서경에 醫學院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예종 11년(1116)에는 分司大醫監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각 군현에는 의학박사를 두어 지방의학교육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각 군현에 의학이 두어져 審藥 1~3인씩을 두었다. 그러나 지방 의학은 유명무실하여 의관 양성은 주로 중앙에서 전담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120)

율학교육과 율과시취는 형조의 考律司에서 담당하였는데《秋官志》에는 율학청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역시 형조의 고율사 소속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태조 때부터 형조 밑에 율학을 두었으며, 세조 때에는 율학청을 따로 지어 고율사의 당청이 주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종 16년에 율학을 司律院이라 바꾸었다가, 세조 12년(1466)에 다시 율학으로 환원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왕조 내내 율학이 계속하여 존재해 왔다.121)

<sup>117)</sup> 李洪烈, 위의 글, 330~332쪽.

<sup>118)</sup> 그 전신은 목종 때 설치된 尙藥局.

<sup>119)</sup> 李洪烈, 앞의 글(1967), 332쪽.

<sup>120)</sup> 李洪烈, 위의 글, 332~333쪽.

지방 율학기관으로서는 고려 명종8년(1178)에 서경의 속관으로 法曹司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율학이 두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와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지방에도 율학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조선시대에는 각 군현마다 율학이 있었으며 檢律 1인씩이 있어 형률을 적응하고 율학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지방율학도 지방의학과 마찬가지로 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122)

음양학과 음양과는 觀象監에서 주관하였다. 관상감의 전신으로 신라 때에는 漏刻典과 천문박사가 있었으며 고려 초에는 太卜監과 太史局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고려 말에 이르러 書雲觀으로 통합되어 풍수·음양학을 부설하였다. 서운관은 조선 태조 원년에 다시 설치되었으나 세조 12년(1467)에 관상감으로 개칭되었다. 그 후 연산군 때에 일시 司曆署로 격하되었으나 중종 초에 환원되어 고종 때까지 계속되었다. 태조 때에 6학의 하나로서 음양·풍수학이 설치되었으나, 세종 때에 음양학·천문학·풍수학으로 3분되었으며, 세조 때에는 풍수학을 지리학, 음양학을 命課學으로 개칭하였다.123)

지방의 옴양학을 담당하는 관청으로는 고려 초에 서경의 刻漏院이 있었다가 예종 11년(1116)에 分司大史局으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에도 토관직으로 평양의 掌漏署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군현에는 그러한 기관이 없었다.124)

위의 역학·의학·율학·음양학의 4학은 정식으로 잡과가 실시되었던 분야였다. 이 중 역학·의학·율학의 3학은 중앙과 지방에 다 설치되어 있었으나 음양학은 지방에는 없었고 중앙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방 잡학은 유명무실하였다. 같은 잡학지만 算學·樂學·畵學·道學은 잡과가 실시되지 않고 취재시험만 있었으며 주관부서도 중앙에만 있었고 지방에는 없었다.

산학은 호조에서 담당하였는데 산학교수·산학훈도를 두어 주관하게 하였다. 호조는 신라의 倉部, 고려의 民官에 해당하는 6부 중의 하나였다. 고려때의 산학은 書學과 함께 잡업시험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조선시대에는 잡과

<sup>121)</sup> 李洪烈, 위의 글, 336~338쪽.

<sup>122)</sup> 李洪烈, 위의 글, 338~339쪽.

<sup>123)</sup> 李洪烈, 위의 글, 339~342쪽.

<sup>124)</sup> 李洪烈, 위의 글, 342쪽.

에서 제외되었다.

악학은 掌樂院에서 담당하였는데 左坊에는 雅樂의 樂生(양인이 소속), 右坊에는 俗樂의 樂工(천인이 소속)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는 樂師가 있었다. 장악원의 연원은 신라의 聲音署, 고려 초기의 典樂署로 소급되며, 고려 말에는 典樂署·雅樂署·慣習都監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조선 태조 2년(1393)에는 전악서에 武工局을 두어 武樂을 가르쳤으며, 태종 때에는 10학의 하나로 악학이 설치되었다. 세조 3년에는 악학과 관급도감을 악학도 감으로, 아악서와 전악서를 장악서로 합병하였으며 일시 악과를 실시하였으나 예종 초에 중단되었다. 성종 원년(1470)에는 장악서를 장악원으로 개칭하였으며, 연산군 11년(1505)에는 이를 聯芳院으로 격하시켰다가 중종반정 후에다시 장악원으로 바꾸었다.125)

畵學은 圖畵署에서 주관하였다. 도화서에는 교수 1인이 있어서 생도를 가르쳤다. 도화서의 연원은 신라의 彩典126)으로 소급되며 고려시대에도 개경과 서경에 圖畫院이 있었다. 조선 초기에도 도화원이 계속 있어 오다가세조 12년(1467) 관제개혁 때에 도화서로 명칭을 바꾼 듯하다. 화학은 조선초기의 10학에 끼어 있지 않았으나 《경국대전》에는 10학 중에 포함되어 있다.127)

道學은 유교의 도학이 아니라 도교와 관련된 잡학을 의미하는데 昭格署에서 이를 담당하였다. 고려시대에는 大淸觀이 도학을 담당하였으나 조선 태조원년 11월에 昭格殿으로 바꾸었다. 대청관은 그 후에도 계속 있어 오다가 세종 때에 혁파된 것으로 보이며, 소격전은 세조 12년 정월에 소격서로 개칭되었다. 소격서는 연산군 때에는 일시 혁파되었다가, 중종반정으로 다시 설치되었으며, 조광조 등 사람들의 주장으로 중종 13년(1518)에 없앴다가, 乙卯士 해로 조광조 등이 실각하자 중종 17년 12월에 다시 설치되었으나, 임진왜란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러한 잡학 관서는 고종 31년(1894)의 갑오개혁으로 없어지거나 크게 개

<sup>125)</sup> 李洪烈, 위의 글, 344~345쪽.

<sup>126)</sup> 뒤에 典彩署로 바뀌었음.

<sup>127)</sup> 李洪烈, 앞의 글(1967), 345~348쪽.

편되었다. 전의감·사역원·관상감·도화서는 없어지고 내의원은 典醫司(뒤에 태의원)로 개칭되었으며 장악원은 궁내부 산하에 편입되고, 외국어 번역은 外務衛門(뒤에 외부)의 번역국에서 담당하였다. 지리학과 의학은 內務衙門(뒤에 내부)에 지리국과 위생국을 두어 관장하게 하였으며, 學務衙門(뒤에 학부)내에 관상소·외국어학교를 신설하는 한편 산학은 度支衙門(뒤에 탁지분) 내에 회계국, 율학은 法務衙門(뒤에 법부)에 법관양성소를 설치하여 업무를 주관하게 하였다.128)

잡과는 식년시와 중광시·대증광시에서만 시취되었고 다른 별시는 없었다. 《경국대전》에 나타나 있는 잡과 초시·복시의 시취 정원은 다음〈표 6〉과 같다. 식년시와 증광시의 시취 정원은 조선시대 내내 같았으나 대증광시만은 《속대전》에 역과 27인, 의과 11안, 음양과(雲科) 21인, 율과 11인으로 되어 있다.

⟨표	6>
\	U/

잡과 초시·복시 정액표

	구	분		초 시	복시
역	漢		學	45	13
7	蒙		學	4	2
<b>⊸</b> 1	倭		學	4	2
과	女	眞	學	4	2
9			과	18	9
음	天	文	學	10	5
양	地	理	學	4	2
과	命	課	學	4	2
율	Ī		과	18	9
		계		121	46

\* 《經國大典》 권 3. 禮典. 諸科.

잡과에는 전시가 없고 초시와 복시만 있었는데 초시는 해당 관청에서, 복 시도 역시 해당 관청에서, 그 관청의 提調와 예조 당상이 실시하였다. 향시 가 있는 것은 한어과뿐으로 역과 초시인 향시는 역학원이 있는 평안·황해

<sup>128)</sup> 李洪烈, 위의 글, 960쪽.

도에서 관찰사가 실시하였다.129) 시험과목은 전문서·경서·《경국대전》을 필수과목으로 하여 성적은 통 2분, 약 1분, 조 반분으로 계산하여 분수가 많은 자를 선발하였다.130) 그리하여 합격자에게는 처음에 홍패를 주다가131) 뒤에는 백패를 주었다. 그러나 문과의 홍패와 생원·진사시의 백패에는 과거보를 찍어 주었는데 비하여 잡과 백패에는 禮曹印만 찍어 주었다.

잡과에 응시하는 사람은 대체로 기술관이나 잡학생도들이었다. 양반 자제들이 잡과에 응시하는 것을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기술관에 취재되기 위해서는 우선 잡학 생도가 되어야만 하였다. 잡학 생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 · 현직고위 기술관의 추천을 받아야만 하였다. 잡학 교육은 중앙에서는 해당 관청에서, 지방에서는 해당 지방의 군현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잡학 생도의 총원 6,736인은 성균관·4학 및 향교의 유학생도 총원 15,50인에 비하면 절반이 안되는 43.32%에 지나지 않는다.132)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조선시대의 교육정책이 유학 중심이었고 잡학 교육은 부차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잡학 교육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잡학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잡학교육은 끊임없이 장려되었다. 다만, 유교교양을 바탕으로 하는 양반 지배체제 하에서 양반 유학자들이 잡학을 관념적으로 천시하여 중인들이 종사하는 전공분야로 전략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부류들이 잡학 생도가 되었는가. 조선 초기만해도 양가 자체뿐 아니라 양반 자제들도 잡학에 입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33] 그러나 고려 말 사대부세력의 성장과 더불어 기술직에 대한 차별의식이 심해지고 조선 초기에 이르러서는 잡학과 기술직에 대한 관념적 · 법제적 차별로나타나게 되었다. [134]

<sup>129)</sup> 위와 같음.

<sup>130)</sup> 위와 같음.

<sup>131) 《</sup>太祖實錄》 권 6, 태조 3년 11월 을묘.

<sup>132)</sup> 성균관 유생 200인, 4학 유생 400인, 향교 생도 14,900인, 합계 15,500인이었다.

<sup>133) 《</sup>世宗實錄》 권 45, 세종 11년 9월 기유.

<sup>《</sup>太祖實錄》권 3, 태조 2년 정월 을해.

<sup>134)</sup> 李成茂、〈朝鮮初期의 技術官과 그 地位〉(《惠庵柳洪烈博士華甲紀念論叢》, 1971),

따라서 양반 자제들은 잡학 생도가 되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 결과 잡학생도를 충원하는 방법은 달리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다음과같은 두 가지 방안이 마련되었다. 하나는 상급 지배신분충인 양반에서 떨어져 나온 부류들을 잡학 생도 또는 기술관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이었다. 즉, 문・무 2품 이상의 첩자손들을 잡학 생도 또는 기술관에 입속시켰다. 다른하나는 향리나 일반 양인에서 잡학 생도를 충원하는 방법이었다. 양반 자제들이 잡학 생도가 되는 것을 꺼리자 校生, 鄕東 3정 1자, 地方醫・律 생도의 선상을 꾀하게 되었다.

교생은 본래 양반 자제도 입속하게 되어 있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안동 등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額內生은 오히려 비양반 자제들로 채워져 있었다.135)이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잡학 생도가 되었다. 잡학 생도·기술직 취재·잡과 등을 통하여 이들은 免役의 특전을 받을 뿐 아니라 신분을 양인에서 중인, 중인에서 양반으로 상승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생·향리라 해서 누구나 세공되는 것은 아니었다. 잡학 생도가 되려면 교생 중에 노비를 소유한 자이거나, 똑똑한 자라야만 하였으며 향리 자제도 3정 1자에 한하였다. 이는 잡학 생도로 세공되는 자들이 교생 중에 부유한 자나 향리의 3정 1자에 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경제적 능력이나 실력면에서 하급 신분층인 중인이 되기에 충분한 자들이었다.136)

이와 같이 잡학 생도가 되는 것은 상급 지배신분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나 하급 신분에서 올라온 사람으로 구성되었으나 조선 초기에는 전자가 많았고 조선 후기에는 후자가 많았다. 물론 이 두 가지 길 이외에 投化人이 역하 생도로 편입된 예도 있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수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137)

그러나 잡학 생도가 되려면 고위 기술직을 지낸 세 사람의 천거를 받아야 만 하였다. 적어도 조선 후기에는 그러하였다. 이것은 기술직이 세전되는 중 요한 계기가 되었다. 천거한 사람은 천거된 사람의 보증인으로서 일이 잘못

<sup>202</sup>쪽.

<sup>135)</sup> 李成茂,〈朝鮮初期의 鄉校〉(《漢波李相玉博士回甲紀念論文集》, 1970).

<sup>136)</sup> 李成茂, 앞의 글(1971), 204~205쪽.

<sup>137) 《</sup>世宗實錄》 권 30, 세종 7년 10월 신사.

되면 연대책임을 져야만 하게 되어 있었다.138)

잡학 생도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다음 기술관 취재시험이나 잡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기술관 취재는 四孟朔取才가139) 원칙이었다. 4맹삭 취재가 처음 실시된 것은 태종 16년(1416) 3월 초이고, 그 이전에는 4중삭 취재· 4계삭 취재가140) 시행되었다. 시험관은 해당 관청의 제조와 예조 당상관이되었으며 시험과목은 전공서·경서·《경국대전》등이었다. 취재시험을 볼 수있는 사람은 잡학 생도, 잡과를 합격한 다음 해당 관청에 임시로 배속되어있는 權知, 전·현직기술관 등이었다. 취재 성적은 잡과와 마찬가지로 분수로 계산하는 데 10분 이상을 1등, 6분 이상을 2등, 3분 이상을 3등으로 하여 1·2등은 서용하고 3등은 서용하지 않았다. 都目政事(인사행정)에는 취재성적이 우선이었으나 전공에 따라 근무일수·업무실적·수업일수가 고려되기도 하였다.141)

기술관 취재에 합격한 사람은 체아직을 받았다. 그러면 조선 초기에 있어 녹관 체아직과 수직 대상자와의 비례는 어느 정도였는가. 사역원의 예를 들어 보자. 사역원 녹관은 모두 29자리였는데 그 가운데 체아직이 아닌 교수와 훈도 10자리를 뺀다면 체아직은 15자리였다. 그런데 이 15자리의 체아직을 받을 수직 대상자들은 역학 생도 80인, 別齋學官 13인, 전직 역관 약간 명, 역과 출신의 권지 19인을 합치면 백 수십 인이 넘었다. 이 숫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났을 것이다. 이들은 불과 15자리의 체아직을 놓고 경쟁해야만 하였다. 물론 지방의 훈도로 가는 길이 있었다지만 그 수는 10인 이하였고 지방의 역학 생도 156인142)까지를 합친다면 수직 대상자수는 더욱 늘어난다.

한학이 11.9:1, 몽학이 9:1, 왜학이 27:1, 여진학이 3:1이다. 이는 조선 초기의 현상이고 시대가 내려갈수록 경쟁율은 더욱 높아갔다. 이렇게 어려운 경쟁을 뚫고 기술관이 된 사람들도 체아직의 경우는 5개월마다 다른 경쟁자들과 함께 다시 취재시첩을 보아 재임여부가 결정되었다.

<sup>138)</sup> 金玄穆、《朝鮮後期 譯學生徒 薦擧에 관한 研究》(仁荷大 博士學修論文, 1994).

<sup>139) 1 · 4 · 7 · 10</sup>월의 1일.

<sup>140) 3 · 6 · 9 · 12</sup>월의 1일.

<sup>141)</sup> 李成茂, 앞의 글(1971), 216~217쪽.

<sup>142)</sup> 한학 90인, 여진학 40인, 왜학 26인.

잡학 생도 이외에 잡학을 공부하는 양반 출신의 習讀官이 있었다. 습독관에는 문신·생원·진사 등 양반들이 입속하였는데 관직이 있는 자를 講肄官, 관직이 없는 자를 학생이라 하였다. 143) 양반 자제들이 잡학에 종사하는 것을 꺼려 잡학이 침체되자 양반들로 하여금 직접 기술학을 습득케 한 것이다. 예컨대 한학의 경우 중국사신이 왔을 때 화제가 經史에 미치면 역관들이 통역을 감당치 못하여 실수를 저지르는 수가 많았다. 역관들이 한어만 알고 경사를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 일에 밝고 정사에 밝은 문신들이 한어까지 능통하면 이상적이었다. 습득관 제도는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습독관은 음자제·4관144)·참외관·성균관 유생·4학 유생 등 문신이나 장차 문신이 될 양반 자제들이 입속하게 되어 있었다. 145)

습독관은 잡학 절반에 걸쳐 두어진 듯하나 《경국대전》에는 한학 30인, 이문 20인, 천문학 10인만 나타나 있다. 146) 이들 습독관은 관직이 없는 경우에는 상근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관직이 있는 경우는 매월 10~15일씩 해당 관청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역학의 경우는 매월 1일과 16일을 제외하고는 관직이 있는 자라도 한어를 강습하도록 하였다. 147) 이들 습독관에게는 교육을 받은 다음에 많은 특전이 부여되었다. 丘史(수행 노비)를 넉넉히 주고, 군직 체아직을 주며, 성적이 우수한 자는 좋은 관직에 임명하고, 생원·진사에게는 교육일수를 성균관 원점으로 간주해 주었다.

습독관수와 군직 체아직의 비율은 대체로 약 3:1이다. 이것은 기술관과 체아직의 비율 10:1과 비교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다. 습독관은 문신이었으므로 잡직인 기술관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잡학에 정통한 습독관은 肄習官이라 하여 해당 기술직에 종사하기도 하였고 임기를 마치면 동반 현직이나 수령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양반 습독관에게 잡학을 훈련시킨 것은 양반관료들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

<sup>143) 《</sup>世宗實錄》권 63. 세종 16년 정월 갑진.

<sup>144)</sup> 藝文館・成均館・承文院・校書館.

<sup>145)</sup> 李成茂, 앞의 글(1971), 205~206쪽.

<sup>146)《</sup>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sup>147)</sup> 李成茂, 앞의 글(1971), 206쪽.

하게 하기 위해서였다.148)

잡과에는 잡학 생도와 7품 이하의 전 · 현직 기술관들이 응시하였다. 습독 관은 양반이었으므로 잡과에 응시하지 않았다. 잡과는 꼭 필요하 인원만 뿜 았기 때문에 정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잡과가 처음 실시된 것은 태종 2년(1402)이다. 그러나 태종 2년부터 연산군 4년(1498) 이전까지는 몇몇 單回榜目을 제외하고는 잡과 방목이 남아 있지 않다.

의과를 제외하고는 16세~20세 사이의 입격율이 가장 높았으며, 의과는 21 세~25세 사이의 입격자가 가장 많았다. 잡과는 경험이 필요한 의과를 제외 하고는 조기교육을 시켰던 것 같다. 특히 역과의 경우는 외국어이므로 조기 교육이 필요하였던 것 같다. 산학은 입격자의 거의가 20세 미만이었다.149)

잡과 입격자를 낸 439개 姓貫 중 200인 이상을 낸 가문이 4개. 150~199 인을 낸 가문이 8개. 100~149인을 낸 가문이 4개. 90~99인을 낸 가문이 4 개이었다.150) 즉 100인 이상의 입격자를 낸 유명한 성관은 16개로 전체 입격 자의 40%인 3.089인이었다. 이것으로 기술관의 세전성이 증명된다.

〈李成茂〉

3) 南陽洪氏(268명)

<sup>148)</sup> 李成茂, 위의 글, 221~222쪽.

<sup>149)</sup> 崔珍玉, 〈朝鮮時代 雜果設行과 入格者 分析〉(《朝鮮時代 雜果合格者 總覽》,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 21 \, 21 \, 3.

<sup>150)</sup> 잡과 입격자를 가장 많이 낸 잡과 명문은 다음과 같다.

<sup>1)</sup> 全州李氏(452명) 2) 慶州崔氏(372명)

<sup>4)</sup> 川寧玄氏(207명) 5) 慶州金氏(196명) 6) 清州韓氏(183명)

<sup>7)</sup> 密陽卡氏(175명) 9) 密陽朴氏(166명)

<sup>8)</sup> 泰安李氏(174명)

<sup>10)</sup> 井邑李氏(164명) 11) 金海金氏(154명) 12) 慶州李氏(153명)

<sup>13)</sup> 牛峯李氏(113명) 14) 朱溪崔氏(104명) 15) 新平韓氏(103명)

<sup>16)</sup> 順興安氏(102명)

# 찾 아 보 기

#### $[\neg]$

가각고승동정 架閣庫丞同正 358 가계심사 家系審査 325 《가례》《家禮》 301,302 가리 假吏 154, 155 가숙 家塾 279 가자 加資 306, 336, 353 가자기간 加資期間 306 가자법 加資法 323 가흥창 可興倉 276 각군 교생의 정액 各軍 校生의 定額 각도교생고강사목 各道校生考講事目 356 각루원 刻漏院 361 각사 남행 各司 南行 319 각촉시 刻燭試 330 각품양첩자 各品良妾子 352 간쟁 諫諍 24, 29 30, 131~133, 135, 145, 감고 監考  $170 \sim 174, 176, 180$ 감교관 監校官 감군 監軍 227 감귤 柑橘 332 감무 監務 135, 136 감무 신설 監務新設 136 감무의 설치 監務의 設置 135 감문위 監門衛 199, 202 감사의 임기 監司의 任期 133 감사의 제수 監司의 除授 171 감시 監試→국자감시 國子監試 감영 監營 133, 134, 170, 176~178, 309, 317, 339

감영 소재지 監營所在地 133 갑과 甲料 324, 328, 350 갑사 甲土 6, 7, 32, 34, 49, 112, 181, 203, 205, 210, 213, 215, 217, 243, 244, 348, 353 갑오개혁 甲午改革 326,362 강경 講經 292, 302, 333, 340 강경시험 講經試驗 285, 286, 292, 303, 333 강남농법 江南農法 313 강상죄 綱常罪 149 강원도 江原道 129, 131, 162, 170 강이관 講肄官 299, 367 강창 江倉 276 강축국 杠軸局 84 개문 開門 230 개성부 開城府  $57, 75 \sim 77, 129, 160,$ 161, 169, 178, 304 개성유후사 開城留後司 58,274 개인사숙 個人私塾 316 개혁파 사대부 改革派 士大夫 339 객사 客舍 180 객사정 客舍正 156 거경시위 居京侍衛 거관 去官 289 거병 擧兵 250 거제 巨濟 359 거진 巨鎭 8, 33, 211, 235, 236 건춘문 建春門 294 걸가 乞暇 172 검교 學校 99 검률 檢律 175, 176, 300, 361 검상 檢詳 66 검상조례사 檢詳條例司 61 견아상입지 犬牙相入地 5, 127, 166

견예부 堅銳府 220 경기좌도 京畿左道 130 견자제입학 遺子弟入學 경력 經歷 175 299 겸관직 兼官職 경력사 經歷司 23 61 겸교관 兼教官 280, 287 경무대시 景武臺試 328, 335 결교수관 兼教授官 경복궁 景福宮 293 294 경비사 經費司 겸대사성 兼大司成 280 68 겸박사 兼博士 288 경사자집 經史子集 302 겸박사제도 兼博士制度 296 경상도 慶尚道 161.170 경서 經書 겸병사 兼兵使 237 364, 366 겸병조판서 兼兵曹判書 경수소 警守所 258 228, 230 겸봉사 兼奉事 288 경시위패 京侍衛牌 215 겸사복 兼司僕 60, 79, 104, 107, 112, 경안 京案 311 220, 221, 226, 231, 232 경연 經筵 79.103 겸사복장 兼司僕將 226 경연관 經筵官 64 경연제도 經筵制度 경수사 兼水使 237 24 겸직 兼職 경외관 순환근무제 京外官 循環動務制 69, 100, 103, 109, 114 겸직장 兼直長 288 132 겸직제 兼職制 경외용관 도태 京外冗官 淘汰 58 132 겸판사 兼判事 경원부 慶源府 58 161 겸학록 兼學錄 288 경장 京將 245 겸학유 兼學諭 288 경재소 京在所  $4, 5, 31, 32, 125 \sim 127,$ 겸학정 兼學正 288 153~156, 178, 183~185 겸훈도관 兼訓導官 293 경재소의 조직과 임원 및 직무 京在所 경공장 京工匠 43 의 組織과 任員 및 職務 183 경저리 京邸吏 경관 京官 126, 153, 155, 156 289 100, 101 경관 문반직 京官 文班職 경저리제도 京邸吏制度 32 경관제 京官制 169 경저소 京邸所 178 경관직 京官職 23 《경제육전》 《經濟六典》 348 《경국대전》 《經國大典》 3, 7, 20, 23, 경주부 慶州府 169 27, 28, 50, 58 ~ 60, 65, 67, 71, 72, 100, 경주인제도 京主人制度 284, 285, 287, 292, 293, 296, 297, 299, 경중도시 京中都試 352 303, 307, 309, 311, 322, 323, 327, 337, 경차관 敬差官 173  $341, 355, 362 \sim 364, 366, 367$ 경창 京倉 272 경군역 京軍役 경첨 更籤 228, 299 211 경기권의 재조정 京畿圈의 再調整 경학 經學 317 129 경학박사 經學博士 300 경희고소총통 慶熙古小銃筒 경기도 京畿道 129, 130, 161, 169 267 경기도역의 개편 京畿道域의 改編 계契 196 130, 131 계고직비 階高職卑 21 경기우도 京畿右道 130 계명개정 階名改定 116

《계몽산학》 《啓蒙算學》 공조 工曹 28,59,67,70 50 계비직고 階卑職高 21 공조서 供造署 97 계성사 啓聖祠 공조 속아문 工曹屬衙門 97 283 공천 公薦 계수관 界首官  $128 \sim 130, 134, 160,$ 287 162, 300, 304 과거 科擧 9, 20, 36, 48, 322, 325 계수관제의 치폐 界首官制의 置廢 과거법 科學法 317, 339 129 과거보 科學寶 328 계약 契約 191 과거3층법 科擧三層法 계원장 繼援將 과거제 科擧制 246 35, 308, 317 계제사 稽制司 과거제도 科學制度 8,9,318,321,326, 68 고공 雇工 49,52,357 347 과문 科文 336 고공사 考功司 67 고과법 考課法 과전 科田  $7,37 \sim 39$ 9, 27, 322 고군산 古群山 「과전경기」의 원칙 「科田京畿」의 原則 고립 雇立 311 130 고유제 告由祭 과전법 科田法 37, 39, 160, 210, 271 283 고율사 考律司 70, 360 과전법의 시행 科田法의 施行 고훈사 考勳司 과전법체제 科田法體制 67 20, 38 공거제 貢擧制 317, 339 과전억압책 科田抑壓策 131 공관 公館 139 과전주 科田主 41 공납 貢納 42 과제 課製 332 과폐 科弊 공노비 公奴婢 43, 53, 54 338 공리 貢吏 155, 283 관각당상 館閣堂上 332 공명첩 空名帖 관각제 館閣制 64 305 공명패 空名牌 관계 官階 351 20, 120 공민권 公民權 관계의 획득 官階의 獲得 51 114 공법 貢法 42,271 관계조직 官階組織 21 공사천구 公私賤口 207 관교 官敎 120, 121 공세곶창 貢稅串倉 276 관남 關南 330 공수위전 公須位田 139, 156 관내노비 官內奴婢 290 공신 功臣 319 관내수령권차법 管內守令權差法 공신노비 功臣奴婢 290 관노비 官奴婢 39, 178 공신적장 功臣嫡長 60, 104, 107, 112, 관료양성소 官僚養成所 280 113 관무과 觀武科 342, 352 공신전 功臣田 38 관무재 觀武才 350, 351 공야사 功治司 70 관무청 觀武廳 356 공자 孔子 280, 283, 301 관보 官補 312 공장 工匠 관북 關北 330 공장세 工匠稅 43 관상감 觀象監 35, 69, 90, 112, 361, 공자알 工匠案 43 363

## 372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관수관급제 官收官給制 39	교하촌 校下村 311
관습도감 慣習都監 362	교하학교 校下學校 316
관시 館試 286, 287, 327	교학 敎學 291
관아시설 官衙施設 179	교화 敎化 15
관역 官役 43	구두 句讀 285
관영수공업 官營手工業 43	구사 丘史 299, 367
관원정액 官員定額 179	구일제 九日製 331
관장 官匠 43	구임관제 久任官制 59
관직 官職 120, 322	구임직 久任職 289
관찰사 觀察使 30, 174, 175, 237, 306,	9재노비 九齋奴婢 293
364	9주 九州 160
관찰사 권한과 기능 觀察使 權限과 機	구중 俱中 341
能 172	9품계의 설치 九品階의 設置 116
관품체계 官品體系 3	구현시 求賢試 328, 335
관학 官學 8, 279, 280, 287, 308, 314,	
318, 344	국고직 國庫直 156
관학 부흥운동 官學 復興運動 318	국둔전 國屯田 39
관학생 官學生 301	국반 國班 182
광대 廣大 53	국자감시 國子監試 317, 339, 348
광흥창 廣興倉 68,84	국자학 國子學 279,317~319
교관 敎官 289, 307	《국조방목》 《國朝榜目》 337
	《국조오례의서례》 《國朝五禮儀庶例》
교도 教導 149, 291	226, 267, 269
교도관 敎導官 306	국학 國學 279, 344
교보 校保 305, 312	군관 軍官 309,351
교생 校生 52, 299, 303, 308, 309	
교생낙강정군 校生落講定軍 304	
교생낙강정군법 校生落講定軍法 303	
교생면강 校生免講 355	군기시 軍器寺 69, 96, 97, 112, 260,
교생신분 校生身分 308	262
교생안 校生案 308,310	군량 軍糧 355
교서감 校書監 57,58	군령 軍令 251
교서관 校書館 29,58,69,88,103,289,	
305, 325	군보 軍保 357
교수 教授 293, 300, 307	<b>ご</b>
교수관 敎授官 292, 301, 306	군액 軍額 303
교임 校任 305, 307	군액 軍額 303 군역 軍役 43, 48, 49, 210, 303, 309
교주강릉도 交州江陵道 129	군익 軍翼 208
교지 教旨 4	군익도 軍翼道 130, 209, 234
교 教 教 4	군익도의 체제 軍翼道의 體制 7,33,
H 3VIH 1	C 1- 1 1 1 TXU 1 1510 1,00,

233	권근 權近 13, 288, 302, 313, 340
군익체제 軍翼體制 205, 234, 235	권농관 勸農官 143
군자감 軍資監 68,83	권농정책 勸農政策 40,41
군자감창 軍資監倉 276	권무직 權務職 116
군자불기 君子不器 298	권문세가 權門勢家 37
군자시 軍資寺 257, 271	권부 權溥 280
군자위전 軍資位田 271	권지 權知 306, 366
군자전 軍資田 310	권학사목 勸學事目 302, 313
군자전세 軍資田稅 271, 275	권한공 權漢功 280
군적 軍籍 260	귀족정치 貴族政治 20
군전 軍田 38, 210	귀후서 歸厚署 69,94
군정 軍政 251	귀후소 歸厚所 94
군직 軍職 289, 293, 296	근궁 芹宮 279
군직체아 軍職遞兒 293, 299	《근사록》 《近思錄》 285, 292, 301
군포 軍布 355	근수 根隨 230
군현 郡縣 158, 164, 178, 312 구형 개퍼 郡縣改編 145	근시4위 近待四衛 201
	근장 近仗 215
군현 구획 郡縣區劃 138	근정전 勤政殿 336
군현 등급의 승강 郡縣等級의 昇降	금군 禁軍 6, 210, 220, 225, 233, 351
148	금루방 禁漏房 90
군현 명칭 郡縣名稱 148	《금양잡록》 《衿陽雜錄》 40
군현 명칭의 개정 郡縣名稱의 改定	금오위 金吾衛 199, 202
146, 147	금화도감 禁火都監 98
군현 병합 郡縣倂合 127,150~153,	급도 給到 353
167	급분 給分 286, 330, 334
군현 병합의 실패 요인 郡縣倂合의 失	급분직부회시 給分直赴會試 338
敗要因 127	급사 給仕 353
군현수 郡縣數 307	급제 及第 318, 343
군현의 행정체계 郡縣의 行政體系	기 氣 14,15
177	기녀 妓女 53
그 원 - 제 - 표/표/ 보내 - 10년 144 1년이 200	
군현제 郡縣制 125, 144, 150, 300,	기명 器皿 312
で 2 4 4, 150, 300, 314 125, 144, 150, 300,	기명 器皿 312 기묘사화 己卯士禍 362
314 군현제 개혁 郡縣制 改革 139,166	기묘사화 己卯士禍 362 기발리승일도설 氣發理乘一途說 18
314	기묘사화 己卯士禍 362 기발리승일도설 氣發理乘一途說 18 기선군 騎般軍 207, 210, 248, 352
314 군현제 개혁 郡縣制 改革 139,166	기묘사화 己卯士禍 362 기발리승일도설 氣發理乘一途說 18
314 군현제 개혁 郡縣制 改革 139,166 군현제 정비 郡縣制 整備 126,135, 300 군현직제 郡縣職制 177	기묘사화 己卯士禍 362 기발리승일도설 氣發理乘一途說 18 기선군 騎般軍 207, 210, 248, 352 기술관 技術官 26, 35, 47, 48, 50, 297, 298, 300, 303, 323, 364, 366, 368
314 군현제 개혁 郡縣制 改革 139,166 군현제 정비 郡縣制 整備 126,135, 300 군현직제 郡縣職制 177 군현장리 郡縣鄕吏 182	기묘사화 己卯士禍 362 기발리승일도설 氣發理乘一途說 18 기선군 騎般軍 207, 210, 248, 352 기술관 技術官 26, 35, 47, 48, 50, 297, 298, 300, 303, 323, 364, 366, 368 기술관 교육 技術官 敎育 35
314 군현제 개혁 郡縣制 改革 139,166 군현제 정비 郡縣制 整備 126,135, 300 군현직제 郡縣職制 177 군현장리 郡縣鄕吏 182 군호의 기본단위 軍戶의 基本單位 34	기묘사화 己卯士禍 362 기발리승일도설 氣發理乘一途說 18 기선군 騎般軍 207, 210, 248, 352 기술관 技術官 26, 35, 47, 48, 50, 297, 298, 300, 303, 323, 364, 366, 368 기술관 교육 技術官 敎育 35
314 군현제 개혁 郡縣制 改革 139,166 군현제 정비 郡縣制 整備 126,135, 300 군현직제 郡縣職制 177 군현장리 郡縣鄕吏 182	기묘사화 己卯士禍 362 기발리승일도설 氣發理乘一途說 18 기선군 騎般軍 207, 210, 248, 352 기술관 技術官 26, 35, 47, 48, 50, 297, 298, 300, 303, 323, 364, 366, 368 기술관 교육 技術官 敎育 35

366	107, 112, 204, 210, 220, 227, 231, 232,
기술직 技術職 35, 50, 298, 309	348
기술학 技術學 35, 298	내금위장 內禁衛將 220, 226
기우제 祈雨祭 304	내금위절제사 內禁衛節制使 220
기재생 寄齋生 284, 286	내무아문 內務衛門 363
기정병 騎正兵 213	내병조 內兵曹 258, 259
기질의 성 氣質之性 15	내부시 內府寺 82
《기축대전》 《己丑大典》 337	내사 內舍 290, 319
길재 吉再 313	내삼청 內三廳 221
김굉필 金宏弼 17, 283	내상직 內上直 80
김구 金絿 341	내섬시 內贍寺 58, 68, 83
김문정 金文鼎 280	내수별좌 內需別坐 81
김식 金湜 336	내수사 內需司 67,81
김안국 金安國 337	내수사전 內需司田 38
김우옹 金宇顒 337	내수소 內需所 81
김인후 金麟厚 283	내시 內侍 200
김일손 金馹孫 336	내시부 內侍府 57, 67, 81, 82, 107
김장생 金長生 283, 288	내시위 內侍衛 49, 80, 204, 220, 348
김종직 金宗直 31	내약방 內藥房 91,360
김집 金集 283	내의원 內醫院 69,91,360
김해 金海 147	내이포 乃而浦 360
	내자시 內資寺 68,82
[ㄴ]	내장 內將 221
[느]	
[ <b>ㄴ]</b> 낙강 정군 落講定軍 303	내장 內將 221
	내장 內將 221 내장전 內莊田 38
낙강 정군 落講定軍 303	내장 內將 221 내장전 內莊田 38 노비 奴婢 53,54
낙강 정군 落講定軍 303 남곤 南袞 336	내장 內將 221 내장전 內莊田 38 노비 奴婢 53,54 노비방량 奴婢放良 355
낙강 정군 落講定軍 303 남곤 南袞 336 남반 南班 26,322	내장 內將 221 내장전 內莊田 38 노비 奴婢 53,54 노비방량 奴婢放良 355 노비변정도감 奴婢辨正都監 46
낙강 정군 落講定軍 303 남곤 南袞 336 남반 南班 26,322 남반잡로 南班雜路 9,322	내장 內將 221 내장전 內莊田 38 노비 奴婢 53,54 노비방량 奴婢放良 355 노비변정도감 奴婢辨正都監 46 노비변정사업 奴婢辨正事業 47
낙강 정군 落講定軍 303 남곤 南袞 336 남반 南班 26,322 남반잡로 南班雜路 9,322 남부학당 南部學堂 291,292	내장 內將 221 내장전 內莊田 38 노비 奴婢 53,54 노비방량 奴婢放良 355 노비변정도감 奴婢辨正都監 46 노비변정사업 奴婢辨正事業 47 노비신공 奴婢身貢 293
낙강 정군 落講定軍 303 남곤 南袞 336 남반 南班 26,322 남반잡로 南班雜路 9,322 남부학당 南部學堂 291,292 남왜 南倭 354	내장 內將 221 내장전 內莊田 38 노비 奴婢 53,54 노비방량 奴婢放良 355 노비변정도감 奴婢辨正都監 46 노비변정사업 奴婢辨正事業 47 노비신공 奴婢身貢 293 노비신분 奴婢身分 54
낙강 정군 落講定軍 303 남곤 南袞 336 남반 南班 26,322 남반작로 南班雜路 9,322 남부학당 南部學堂 291,292 남왜 南倭 354 남행 南行 319	내장 內將 221 내장전 內莊田 38 노비 奴婢 53,54 노비방량 奴婢放良 355 노비변정도감 奴婢辨正都監 46 노비변정사업 奴婢辨正事業 47 노비신공 奴婢身貢 293 노비신분 奴婢身分 54 노비제도 奴婢制度 54
낙강 정군 落講定軍 303 남곤 南袞 336 남반 南班 26,322 남반잡로 南班雜路 9,322 남부학당 南部學堂 291,292 남왜 南倭 354 남행 南行 319 납공노비 納貢奴婢 54	내장 內將 221 내장전 內莊田 38 노비 奴婢 53,54 노비방량 奴婢放良 355 노비변정도감 奴婢辨正都監 46 노비변정사업 奴婢辨正事業 47 노비신공 奴婢身貢 293 노비신분 奴婢身分 54 노비제도 奴婢制度 54 노비해방 奴婢解放 54
낙강 정군 落講定軍 303 남곤 南袞 336 남반 南班 26,322 남반잡로 南班雜路 9,322 남부학당 南部學堂 291,292 남왜 南倭 354 남행 南行 319 납공노비 納貢奴婢 54 남미 納米 355	대장 內將 221 대장전 內莊田 38 노비 奴婢 53,54 노비방량 奴婢放良 355 노비면정도감 奴婢辨正都監 46 노비면정사업 奴婢辨正事業 47 노비신공 奴婢身貢 293 노비신분 奴婢身分 54 노비제도 奴婢制度 54 노비해방 奴婢解放 54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 奴良妻所生從母
낙강 정군 落講定軍 303 남곤 南衰 336 남반 南班 26,322 남반잡로 南班雜路 9,322 남부학당 南部學堂 291,292 남왜 南倭 354 남행 南行 319 남공노비 納貢奴婢 54 남미 納米 355 남속보관 納粟補官 305,355 당 郎 21 당계 郎階 4	내장 內將 221 내장전 內莊田 38 노비 奴婢 53,54 노비방량 奴婢放良 355 노비변정도감 奴婢辨正都監 46 노비변정사업 奴婢辨正事業 47 노비신공 奴婢身貢 293 노비신분 奴婢身分 54 노비제도 奴婢制度 54 노비해방 奴婢解放 54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 奴良妻所生從母 從良法 311 노예 奴隷 53 노인직 老人職 100,109,110
낙강 정군 落講定軍 303 남곤 南袞 336 남반 南班 26,322 남반잡로 南班雜路 9,322 남부학당 南部學堂 291,292 남왜 南倭 354 남행 南行 319 남공노비 納貢奴婢 54 남미 納米 355 남속보관 納栗補官 305,355 당 郎 21	대장 內將 221 대장전 內莊田 38 노비 奴婢 53,54 노비방량 奴婢放良 355 노비변정도감 奴婢辨正都監 46 노비변정사업 奴婢辨正事業 47 노비신공 奴婢身貢 293 노비신분 奴婢身分 54 노비제도 奴婢制度 54 노비해방 奴婢解放 54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 奴良妻所生從母 從良法 311 노예 奴隷 53
낙강 정군 落講定軍 303 남곤 南衰 336 남반 南班 26,322 남반잡로 南班雜路 9,322 남부학당 南部學堂 291,292 남왜 南倭 354 남행 南行 319 남공노비 納貢奴婢 54 남미 納米 355 남속보관 納粟補官 305,355 당 郎 21 당계 郎階 4	대장 內將 221 대장전 內莊田 38 노비 奴婢 53,54 노비방량 奴婢放良 355 노비변정도감 奴婢辨正都監 46 노비변정사업 奴婢辨正事業 47 노비신공 奴婢身貢 293 노비신분 奴婢身分 54 노비제도 奴婢制度 54 노비해방 奴婢解放 54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 奴良妻所生從母 從良法 311 노예 奴隷 53 노인직 老人職 100,109,110 노자 老子 302 녹관 祿官 58
낙강 정군 落講定軍 303 남곤 南袞 336 남반 南班 26,322 남반잡로 南班雜路 9,322 남부학당 南部學堂 291,292 남왜 南倭 354 남행 南行 319 남공노비 納貢奴婢 54 남미 納米 355 남속보관 納栗補官 305,355 당 郎 21 당계 郎階 4	대장 內將 221 대장전 內莊田 38 노비 奴婢 53,54 노비방량 奴婢放良 355 노비변정도감 奴婢辨正都監 46 노비변정사업 奴婢辨正事業 47 노비신공 奴婢身貢 293 노비신분 奴婢身分 54 노비제도 奴婢制度 54 노비해방 奴婢解放 54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 奴良妻所生從母 從良法 311 노예 奴隷 53 노인직 老人職 100,109,110 노자 老子 302

녹봉미 祿俸米 276 녹사 錄事 357 녹사동정 錄事同正 358 녹직 祿職 57, 99, 101, 104, 110 《논어》 《論語》 285,341 《농사직설》 《農事直說》 40 농유사 農有司 309 농장형 農莊型 40 누각전 漏刻典 361 능전 陵殿 94 능침전 陵寢田 38 니원 尼院 281 니탕개란 尼蕩介亂 246,354

#### [⊏]

다방 茶房 200 단병사 單兵使 236 단신도계 單身到界 5 단안 壇案 155, 191 단회방목 單回榜目 368 답험손실법 踏驗損實法 42 당상 堂上 21 당상관 堂上官 4,48,120,284,324, 도과 道科 328 325, 335 당상관직 堂上官職 48 당송8가문 唐宋八家文 292 당장 堂長 307 당장 堂掌→당장 堂長 당하 堂下 21 당하관 堂下官 4, 10, 59, 324, 325, 335 당하관직 堂下官職 120 대 隊 224 대가 代加 48 대간 臺諫 4,23,29,63 대간직 臺諫職 284 대군현리민책 對郡縣吏民策 154 대독관 對讀官 334 대동법 大同法 42 대립 代立 7,220,244

대명률 大明律 50 대부 大夫 4,21,222 대사례 大射禮 282,284 대사성 大司成 287 대성전 大成殿 282,301 대성지성문선왕 大成至聖文宣王 283 대언(승지) 代言(承旨) 253 대장 臺長 72 대장군 大將軍 222,262 《대전속록》 《大典續錄》 304,337 《대전회통》 《大典會通》 311,332 대정 隊正 116 대졸 隊卒 112, 213, 217, 219 대증광시 大增廣試 329,342,363 대청관 大淸觀 362 대청원 大淸院 93 대통 大通 285 《대학》 《大學》 17, 285, 341 대호군 大護軍 58, 222 덕성창 德城倉 276 덕천고 德泉庫 58,83 도감서 都監署 84 도계 到界 135 도관찰출척사 都觀察黜陟使 128, 172 도기 到記 286 도기과 到記科 328, 333, 334 도동서원 道洞書院 315 도만호 都萬戶 207,237 도목 都目 289 도목정사 都目政事 도반 道班 182 도백 道伯 30 도부외 都府外 204,220 도사 都事 30,175 도선 導善 289, 296 도순문사 都巡問使 128 도순변사 都巡邊使 246 도순찰사 都巡察使 205

도승지 都承旨 71

도시 都試 7,352,353 도시과 都試科 342 도시제사 都試制使 352 도안무처치사 都按撫處置使 207 도역의 개편 道域의 改編 130 도염서 都鹽署 84 도원수 都元帥 245 도임 到任 304 도절제사 都節制使 205, 206, 234 도절제사영 都節制使營 206, 211 도제 道制 25, 169, 177 도직제 道職制 134 도진무 都鎭撫 251 도진척위전 渡津尺位田 152 도천서원 道川書院 315 도총부 都摠部  $226,231 \sim 233$ 도총제 都總制 58, 249 도총제부 都摠制府 58 도총중외제군사부 都摠中外諸軍事府 200 도평의사사 都評議使司 1,2,22,27, 57, 58, 60, 61, 63, 65, 255, 347 도평의사사 구성원 都評議使司 構成員 도평의사사 직제 都評議使司 職制 66 도평의사사 체제 都評議使司 體制 59 도학 道學 296, 297, 314, 361, 362 도호제위장군 都護諸衛將軍 222 도화서 圖畵署 69, 92, 362, 363 도화원 圖畵院 362 독권관 讀券官 334 독진제 獨鎭制 235 돈녕부 敦寧府 58, 60, 77, 78 동감교관 同監校官 349 동계 洞契 316 동고 東庫 282 《동국정운》 《東國正韻》 292 《동국통감》 《東國通鑑》 285 동래 東萊 359

292, 303

동몽 童蒙

《동몽선습》《童蒙先習》 316 동몽훈도 童蒙訓導 112 동무 東廡 282 동문 東門 282 《동문선》《東文選》 292 동반 관계 東班官階 115, 116 동반 무록관 東班 無祿官 동반 잡직계 東班 雜職階 107, 114, 119 동반직 東班職 116, 120 동반 체아직 東班 遞兒職 111 동부학당 東部學堂 동산색 東山色 98 동서당 洞書堂 316 동・서무 東・西廡 301 동・서반 잡직 東・西班 雜職 동・서반 잡직계 東・西班 雜職階 114 동・서재 東・西齋 281, 301 동・서학당 東・西學堂 291, 293 동성서당 同姓書堂 316 동성촌락 同姓村落 194 동안 洞案 191 동약 洞約 191, 196, 311 동월 董越 298 동인계열 東人系列 동재 東齋 35, 282, 307 동정직 同正職 52, 99, 109 동지관사 同知館事 288 동지총제 同知摠制 58, 249 동진사 同進士 327,328 동첨절제사 同愈節制使 33, 236, 237 두레 195 두입지 斗入地 166 둔전 屯田 271,275 등용문 登龍門 9 등준시 登俊試 328, 335, 350, 351

337

명경과 별시조건 明經科別試條件

[=] 명경과 시취절목 明經科試取節目 337 명경업 明經業 340, 347 략 略 명과학 命課學 285, 333 351, 363 론 論 285, 333 명관 命官 351 35, 281, 282, 301 명륜당 明倫堂  $[\square]$ 명륜당시 明倫堂試 328, 335 명률 明律 59. 323 마병 馬兵 명환 名宦 212 345 모내기방법→이앙법 移秧法 만경 萬頃 293 만과 萬科 356 모암서원 慕巖書院 목면의 재배 木綿의 栽培 만과설행 萬科設行 354 43 《만기요람》 목민관 牧民官 21,30 《萬機要覽》 만포 滿浦 359 몽어 蒙語 358 만호 萬戶 207, 237 몽학 蒙學 50, 363 무격 巫覡 말업 末業 52 53 매관매작 賣官賣爵 무격목형총통 無激木形銃筒 268 355 매매 賣買 무공국 武工局 362 311 《매천야록》 《梅泉野錄》 무과 武科 317, 318, 322, 324, 326, 342, 341 맹손 孟孫 283  $348 \sim 350, 354, 356, 357$ 《맹자》《孟子》 16, 283, 285, 341 무과교육 武科教育 348 면 面 141, 165, 190 무과법 武科法 348 면・리 面・里 무과축수재 武科祝壽齋 면리 명칭 面里 名稱 무관 武官 347 146 면리임 面里任 무관각현 無官各縣 188, 191 139 무관 경관직 武官 京官職 면리제 面里制  $4, 5, 125 \sim 127, 143 \sim$  $104 \sim 106$ 145, 165, 177 무록관 無祿官 23, 68, 113, 114 면리제 개편 面里制 改編 140 무록직 無祿職 100, 101, 104, 109, 면리제도 面里制度 315 110 면리제의 확립 面里制의 確立 164~ 무명과 無名科 331 무반 武班 165 121, 347 면리체계 面里體系 무반 무록직 武班 無祿職 144, 145 무반직 武班職 면리체제 面里體制 189 104, 107 면리행정 面里行政 무비사 武備司 69, 258, 259 145 면역 免役 무산계 武散階 365 115, 116, 120, 121, 199 면역법 免役法 157 무선사 武選司 69, 258, 259 면천 免賤 무성묘 武聖廟 311 350, 351 명銘 331 무신 武臣 313 명경 明經 무신정권 武臣政權 337 300 명경과 明經科 337 무악 武樂 362

무역백성 無役百姓 207 문・무과 급제자 초자・초직표 文・武 무오사화 戊午士(史)禍 50 科及第者 超資・超職表 323 무위남행 武衛南行 319 문·무과 방방의 文·武科放榜儀 348 무장 茂長 149 문・무과 산관법 文・武科 散官法 무전농민 無田農民 52 323 문・무반체아직 文・武班 遞兒職 무전민 無田民 39 무주 茂朱 **문・무산계** 文・武散階 114 150 무직의 사류 無職의 士類 345, 346 문·무산계제 文·武散階制 317 무직자 無職者 문・무양과 文・武兩科 317 32 무토전 無土田 문무양반 체제 文武兩班體制 310 무학 武學 296, 297, 347, 348, 356, 357 무학교육 武學敎育 349 문반 文班 121 무학사목 武學事目 356 문반 겸직 文班 兼職 102 무학안 武學案 356 문반 경관직 文班 京官職 100 문과 文科 문반・무반・잡직 文班・武班・雜職 35, 317, 318, 321, 322, 32  $4 \sim 326, 345 \sim 349, 357$ 100 문과 관시 文科館試 287 문반직 文班職 100 문과 급제자 文科及第者 320 문벌 門閥 325 문과 응시자격 文科 應試資格 318, 319, 문벌귀족 門閥貴族 문벌귀족정치 門閥貴族政治 325 문과 전시 文科殿試 286, 332, 333 문벌양반 門閥兩班 321 문사 文士 313 문과 중시 文科重試 350 문과 초시 文科初試 385~287 문산계 文散階 115, 117, 120, 121 문과 초시 시취 액수 文科初試 試取額 문서응봉사 文書應奉司 88 문선 文選 292,302 數 327 문과출신자 文科出身者 문선사 文選司 307 67 문과 한성시 文科 漢城試 287 문선왕 文宣王 283 문자 회시 文科會試 286, 306, 332, 문소전 文昭殿 94 334 문신 文臣 300, 367 문관 급제자 文官及第者 306 문신월과법 文臣月課法 문관 출신 文官出身 302 문신 전강 文臣殿講 336 문교부흥운동 文教復興運動 300 문신 정시 文臣庭試 335 문신 중월부시법 文巨仲月賦詩法 문묘 文廟 35, 281, 287, 303, 304 문묘 묘정비 文廟廟庭碑 281 문음 門蔭 9, 26, 48, 322, 347, 357 문묘비 文廟碑 문음 승보생 門蔭 升補生 281 284 문묘석전래 文廟釋奠禮 330 문음자손 門蔭子孫 문묘제기 文廟祭器 문음자제 門蔭子弟 280 48, 284 문묘제향 文廟祭享 290 문익점 文益漸 41 문묘종사 文廟從祀 283 문지 門地 51,298 문・무과 文・武科 9,325,326,347 문치주의 文治主義 316, 347

문치주의사회 文治主義社會 8 방군수포제 放軍牧布制 34 문하부 門下府  $2,57,58,60\sim62,65,$ 방미 榜尾 334 방백 方伯 30 72 문하부 재상 門下府 幸相 방벌 放伐 61 16 문한기관 文輸機關 방수의무 防戍義務 103 34 문형 文衡 87 방안 榜眼 328 물사리방법→수경법 水耕法 방어사 防禦使 245, 246 미곡 회환 米穀 回還 274 방주감찰 房主監察 미사액서원 未賜額書院 311 방패 防牌 205, 215 민관 民官 방학 放學 293 361 민본사상 民本思想 16 배강 背講 286, 292, 331, 333 민유방본 民惟邦本 배맹후 裵孟厚 341 16 민유지 民有地 배불운동 排佛運動 40 민의 성장 民의 成長 배송 背誦 329 민족성 民族性 316 배율 排律 337 백규서무 百揆庶務 62 [日] 백록동서원 白鹿洞書院 315 백운동서원 白雲洞書院 315 박사 博士 백원서원 百源書院 315 박상충 朴尙衷 백정 白丁 280 53 박세채 朴世采 283 백패 白牌 342, 343, 358, 363 박안신 朴安信 339 번상 番上 243 박의중 朴宜中 번상기병 番上騎兵 280 박정차제 駁正差除 번상보병 番上歩兵 62 7 박제가 朴齋家 번상시위 番上侍衛 50 33,63 박초 朴礎 280 번상정병 番上正兵 반교 泮橋 282 번역국 飜譯局 363 반궁 泮宮 279 법관양성소 法官養成所 363 반궁제회 泮宮齊會 287 법무아문 法務衙門 363 반독 伴讀 294 법성창 法聖倉 275 반미 飯米 법조사 法曹司 361 290 반수 泮水 벽동 碧潼 281 359 반정공신 反正功臣 30 벽입각 關入閣 282 발령 發令 250 변계량 卞季良 281, 288 발령권 發命權 249 변정원 辨定院 59, 97 발병 發兵 250 별감 別監 31, 179, 291, 309 발병권 發兵權 249 별군 別軍 215 발영시 拔英試 328, 335, 350, 351 별사전 別賜田 38 발화통 發火筒 270 별시 別試  $9,292,319 \sim 321,326,328,$ 

329, 334, 342, 349, 350

방군수포 放軍收布 244

별시무과 別試武科 353 보인 保人 244 별시위 別侍衛 49, 112, 204, 205, 210, 보정병 步正兵 213 213, 215, 217, 218, 231, 325, 348, 352, 보충대 補充隊 219 복과 復科 353 337 별장 別將 복시 覆試 36, 327, 341, 349, 351, 222 별재학관 別齋學官 366 363 별진무 別鎭撫 251 본감 本監 263 별창 別倉 276 본관 本貫 159, 168, 182 병과 丙科 327, 328, 350 본업인 本業人 59,68 〈병기도설〉 〈兵器圖說〉 본직 本職 100 266, 267, 269 본청 本廳 232 334, 350 봉상시 奉常寺 병년 丙年 57, 69, 90 병농일치의 군대 兵農一致의 軍隊 봉상시관 奉常寺官 33 288 병려체 騈儷體 331 봉서국 奉書局 98 봉수제 烽燧制 병마단련부사 兵馬團鍊副使 209 34 병마단련사 兵馬團練使 봉의서 奉醫署 206 360 병마단련판관 兵馬團練判官 봉조청 奉朝請 209 110 병마도 兵馬道 206 봉조하 奉朝賀 109, 110 병마절도사 兵馬節度使 8,236 봉조하직 奉朝賀職 100 병마절제사 兵馬節制使 207, 209 봉족 奉足 7, 34, 208, 212 병부뢰거교생 兵符賫去校生 309 봉족제 奉足制 211 봉족호 奉足戶 병사 兵使 33, 158 212 병역의 의무 兵役의 義務 34 부 賦  $138, 286, 329 \sim 331, 333, 340$ 부거안 赴擧案 병영 兵營 8,178 308 병자호란 丙子胡亂 부거자격 赴擧資格 354 52 병작 並作 39 부경숙위 赴京宿衛 210 병작료 並作料 54 부곡 部曲  $138, 141 \sim 143$ 병작제 並作制 52 부곡민 部曲民 54 병작형 故作型 40 부마부 駙馬府 78 〈병장도설〉 〈兵將圖說〉 267 부민고소금지법 部民告訴禁止法 4, 병정 兵正 156 125, 132 병조 兵曹 부방 赴防 28, 59, 67, 69, 70, 74, 95, 355 211, 232, 252, 255~258, 320 부사정 副司正 222 병조 속아문 兵曹屬衛門 부사직 副司直 222 94 병조축수재 兵曹祝壽齋 부산포 富山浦 349 359 병학 兵學 348 부승동정 副丞同正 358 보 寶 부안 扶安 196 293 보단자 保單子 36 부장 部將 222, 227 보법 保法 34, 211, 213, 311 부제학 副提學 58 보부상 褓負商 44 부평 富平 147

부호장 副戶長 157 북도과 北道科 329	4부학당 四部學堂 34, 279, 291, 292,
국도와 北道村 329 북부학당 北部學堂 291	319
	사사전 寺社田 38, 39
북청 北靑 353, 359	사산 賜山 312
북학 北學 281	4서 四書 280, 281, 292
북호 北胡 354 분경 奔競 355	사서동몽 士庶童蒙 316
문성 弁威 300 분관 分館 325	4서 3경 四書三經 333
	4서 5경 四書五經 35, 302, 337
분군법 分軍法 245	4서5경재 四書五經齋 319
분급지 分給地 38	4서의 四書疑 341, 342
분대 分臺 173 분례빈시 分禮賓寺 93 분사대사국 分司大史局 361 분사대의감 分司大醫監 360	《사서집주》 《四書集註》 280
분례빈시 分禮賓寺 93	사선서 司膳署 57
분사대사국 分司大史局 361	사섬시 司贍寺 68, 83, 275
분사대의감 分司大醫監 360	사성 司成 295, 296
분수 分數 334	사수감 司水監 58,84
분헌관 分獻官 284	사수색 司水色 84
불 不 285	사순 司楯 201
물 사 280 불교 佛教 280, 300, 301, 315 불교사찰 佛教寺刹 301	사심관제 事審官制 4,125,183,184 사액서원 賜額書院 311,315
불교사찰 佛敎寺刹 301	사액서원 賜額書院 311,315
	사업 司業 288, 293
당 加黑 339 비각 碑閣 282 비각도서 秘閣圖署 280 비변사 備邊司 30 비서기관 秘畵機關 28	사역원 司譯院 35, 69, 92, 112, 359,
비각도서 秘閣圖署 280	363, 366
비변사 備邊司 30	사영수공업 私營手工業 43
비서기관 秘畵機關 28	사예 司藝 281, 288, 293, 295, 296
りて有 <sup>1</sup> 加巡倒 199, 202	사옥부정 司獄副正 158
비안현 比安縣 148	사온서 司醞署 68,85
비입지 飛入地 166	사옹 司饔 201
비천당 丕闡堂 281	사옹방 司饗房 81
비천시 丕闡試 358, 335	사옹원 司饗院 43,67,81,112
빙 氷 290	사용 司勇 222
빙고 冰庫 69,93	사우 祠宇 314
	사원 寺院 313
[人]	사원노비 寺院奴婢 54
	사유 師儒 313
《사략》 《史略》 292	사육신사건 死六臣事件 64
사력서 司曆署 361	사율원 司律院 360
사병 혁파 私兵革罷 2,6,7,32,203,	사은 謝恩 171
210, 348	사의 司衣 201
사복 司僕 260	사이 司彛 201
사복시 司僕寺 69, 96, 112, 258	사인 舍人 66
	,

사인소 舍人所 256 사장 私匠 43 사장 詞章 317, 336 사재감 司幸監 58,68,84 사전 祀典 179 사전 私田 37 사전기내의 원칙 私田畿內의 原則 38 사전장총통 四箭長銃筒 267 사전총통 四箭長銃筒 267 사정 司正 222 4제 四製 286 사조 辭朝 171,172 사족 士族 52 4중삭 四仲朔 336,349 4중삭취재 四仲朔取才 297, 366 사직 司直 222 사직단 社稷壇 93 사직서 社稷署 69, 93 사직제 社稷祭 304 사창 社倉 189 사초 史草 24 사축서 司畜署 69. 93 사축소 司畜所 93 사패 賜牌 335 사평부 司平府 58 사포국 司砌局 266 사포서 司圃署 68, 85 4학 四學 34, 35, 89, 279, 284, 291, 293, 296, 308, 310, 319, 321, 342, 344, 사학 私學 8,9,69,312~314,321, 344 사학교육 私學敎育 313 사학12도 私學十二徒 291,314 4학유생 四學儒生 286, 332, 333, 367 4학합제 四學合製 292 4학훈도 四學訓導 288 사헌부 司憲府 24, 29, 57~60, 63, 71  $\sim$  73, 75, 101, 173 사화 賜花 3.335

사회신분 社會身分 44,45 삭과 削科 338 삭망분향제 朔望焚香祭 304 삭망제 朔望祭 283 삭명 削名 338 산 算 357 산계 散階 121 산관직 散官職 109,306 산사 算士 59, 323 산사교육 算士敎育 313 산원 散員 222 산원취재 算員取才 358 《산음장적》 《山陰帳籍》 산직 散職 99,100,114 산직자 散職者 37,39 산택사 山澤司 70 산학 算學 35, 50, 296, 297, 348, 361, 363 산학교수 算學敎授 351 산학취재안 算學取才案 산학훈도 算學訓導 삼가현 三嘉縣 150 삼강오륜 三綱五倫 15 삼강행실 三綱行實 292, 301 3공 6경제 三公六卿制 2,34 3관 三館 289 삼관고강법 三館考講法 397 3관권지 三館權知 305 3군 三軍 58, 59 삼군갑사 三軍甲士 삼군도진무 三軍都鎭撫 70 삼군도진무소 三軍都鎭撫所 252 삼군도총부 三軍都摠府 252 삼군도총제 三軍都摠制 249, 252 삼군도총제부 三軍都摠制府 250, 251 삼군부 三軍府 58,60,63,220,248, 449 삼군진무소 三軍鎭撫所 69,74,251~ 253

사회 司誨

289, 296

삼군총제부 三軍摠制府 63, 202, 247 상재생 上齋生 284, 343 3단 三壇 182 상정일 上丁日 283 삼대의 이상사회 三代의 理想社會 상주 尙州 169 1 상진 上鎭 3례 三禮 357 251 3망 三望 307 상포계 喪布契 196 3반 三班 182 상피(제도) 相避(制度) 22, 330, 331 3반 관속 三班官屬 183 상한 常漢 51 상호군 上護軍 3법사 三法司 29,72 58, 222 삼사 三司 29, 57, 61, 65, 색장 色掌 307 3사 三司 72, 175 생원 生員 35, 36, 284, 306, 307, 318~ 291 3사법 三舍法  $321, 341, 343 \sim 347, 367$ 생원시 生員試 302, 317, 319, 339, 340 삼사재상 三司宰相 62 3속사 三屬司 생원・진사시 生員・進士試 292,299, 58 33천 三十三天 327  $300, 307, 326, 341 \sim 344, 346, 349$ 3의사 三醫司 생원・진사시 복시 生員・進士試 復試 360 3일제 三日製 331 302 3전 三傳 357 생원・진사시 회시 生員・進士試 會試 3정 1자 三丁一子 156 286 3정 1호 三丁一戶 212, 213 생진과 生進科 35 삼총통 三銃筒 서 書 267 357 삼포왜란 三浦倭亂 245 《서경》《書經》 341 상계리 上計吏 155 서경 署經 4, 21, 72, 120, 121, 181 상당직 相當職 120 서경 西京 300 상림원 上林園 서경군민만호부 西京軍民萬戶府 208 98 서경덕 徐敬德 17 《상명산법》《詳明算法》 50 상복사 詳覆司 서당 書堂 34, 279, 312, 314, 316 70 상사 上舍 291, 319 서도과 西道科 329 상서사 尙瑞司 57, 59, 80, 255 서리 書吏 47, 155, 289, 302, 303, 309, 상서원 尙瑞院 59, 67, 80 323 상순윤차 上旬輪次 332 서무 西廡 282 상승승지 尚乘承旨 서반 관계 西班官階 116,117 79 상시석전 常時釋奠 서반 잡직계 西班雜職階 107, 114, 284 상식년 上式年 350 119 상액 上額 308 서반직 西班職 120 상양액수 常養額數 서반 체아직 西班遞兒職 293 49, 105, 112 상의문하부사 商議門下府事 62 서부학당 西部學堂 291 서얼 庶孽 상의원 尙衣院 47, 49, 50, 298, 357 43, 70, 97, 112 상의중추원사 商議中樞院使 서얼금고 庶孽禁鎬 50 62 상인 常人 51 서얼의 차대법 庶孽의 差待法 50 상장군 上將軍 222 서얼 출신 庶孽出身 49

서얼 출신자 庶孽出身者 22 성균관 成均館 9, 29, 35, 36, 57, 60, 69, 서얼 통청 庶孽通淸 50 87, 103, 279, 280, 284, 287, 289, 292, 296, 서얼 허통 庶孽許通  $302, 305, 310, 318 \sim 321, 325, 334, 337,$ 355 서연관 書筵官 64  $342 \sim 344, 347, 348$ 서운관 書雲觀 성균관 교육 成均館敎育 57, 90, 361 321, 343 성균관 9재 成均館九齋 서원 書院 311, 314, 315 338 서원서당 書院書堂 314 성균관 노비 成均館奴婢 290 서인계열 西人系列 18 성균관 대사성 成均館大司成 333 서재 書齋 성균관 문묘 成均館文廟  $35,279,312\sim315$ 304, 350 서재 西齋 282, 307 성균관시 成均館試 287 서재교생 西齋校生 309 성균관 유생 成均館 儒生 286, 290, 서재교육 書齋敎育 314 318, 319, 330, 332~334, 344, 367 서재안 西齋案 성균관 학관 成均館學官 310 296 서학 書學 361 성균장이소 成均長貳所 318 서해도 西海道 성균정록소 成均正錄所 129 318 석자 席子 성기 省記 290 230 석전 釋奠 《성리대전》 《性理大全》 285, 291, 301 283, 284 석전제 釋奠祭 283, 304, 350 성리철학 性理哲學 14~16 석전제물 釋奠祭物 289 성리학 性理學 1,13~15,17,37,47, 선가 船價 272 292 선공감 繕工監 59,70,98 성리학적 이상사회 性理學的 理想社會 선공시 繕工寺 14 선군 船軍 207 성문도감 城門都監 선사 先師 성음서 聲音署 362 315 성중관원 成衆官員 선상 船商 44 357 선상노비 選上奴婢 54 성중애마 成衆愛馬 6, 9, 26, 200, 201, 선양 禪讓 16 220, 322, 352 선절관 宣傳官 60, 104, 107, 222 성혼 成渾 283 선전관청 宣傳官廳 223 성황제 城隍祭 304 선천 宣川 359 세공 歲貢 299, 303 선현 先賢 315 세록 世祿 선화 善畵 세습직 世襲職 297 23 선회 善繪 297 세자관속 世子官屬 89 설총 薛聰 283, 304 세자시강원 世子侍講院 69, 89, 103 섬학전 膽學錢 세자익위사 世子翊衛司 280 69, 89, 96, 섭부사직 攝副司直 293 104, 260 섭사직 攝司直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 293 접육십 攝六十 205, 215 40 성관 姓貫 368 세총통 細統筒 267 성균감 成均監 280 소 所 138,141~143

소격서昭格署14,69,93,362수령구임법守令久任法소격전昭格殿93,362수령육기법守令六期法 150 수령육기법 守令六期法 132 《소학》 《小學》 17, 194, 284, 292, 301, 수령의 행정체계 守令의 行政體系 302, 316 177 소학교육 小學敎育 195 수령직 강화책 守令職 强化策 137 수령7사 守令七事 27,30,31,301 소현 小縣 149,164 소현 병합 小縣倂合 149,150 수명학교 修明學校 301 소현 병합책 小縣倂合策 126 수문장 守門將 222,226 소화시 掃火矢 265 수문장청 守門將廳 222 《속대전》 《續大典》 286, 295, 310, 수발교지 受發敎旨 62 327, 332, 333, 344, 358, 363 수복청 守僕廳 282 수성군 守城軍 7,207,352 속량 贖良 54.311 속사 屬司 수성금화사 修城禁火司 70,98 3 속사·속아문제 屬司·屬衙門制 67 수신전 守信田 38,39 속사·속아문제의 정비 屬司·屬衙門制 수운판관 水運判官 176 의 整備 59 수전패 受田牌 210, 215 속아문 屬衙門 3 수조권 收租權 속아문제도 屬衙門制度 58,250 수조지 收租地 37 수직 守職 120 속악 俗樂 362 속오군 束伍軍 354 수호군 守護軍 207 속현 屬縣 22, 25, 136, 138, 139, 141 숙량흘 叔梁紇 속현리 屬縣吏 152 순과 旬課 287 속현의 분포 屬縣의 分布 138 순관 巡官 228, 230 속현의 정리 屬縣의 整理 140 순군만호부 巡軍萬戶府 75, 204 속현의 주현화 屬縣의 主縣化 135 순변사 巡邊使 245 속현 혁파 屬縣革罷 139 순위부 巡衛府 75 솔거노비 率居奴婢 54 순위사 巡衛司 204 솔권겸윤 率眷兼尹 133 순유박사 諄諭博士 288 송 頌 331 순자범 循資法 9,116,322 《송원절요》 《宋元節要》 285, 292, 302 순장 巡將 227, 228 송준길 宋浚吉 283, 288 순찰패 巡察牌 227 수공업 手工業 43 순청 巡廳 229,230 수군 水軍 207, 213, 237, 244 순통 純通 285, 333 수군절도사 水軍節度使 8,33,207, 숭교방 崇敎坊 281 237, 248 숭문관 崇文館 280 수기지학 修己之學 16,17 숭문언무정책 崇文偃武政策 347 수라간 水刺間 282 숭유억불정책 崇儒抑佛政策 19 수령 守令 145, 174, 177, 179~182, 습독관 習讀官 112, 299, 367 301, 304 습독사일 習讀仕日 299 수령관 首領官 128, 175 승문원 承文院 29,60,69,88,102,112,

305, 325, 358 신량역천 계층 身良役賤階層 47 승보시 升補試 284, 291, 292, 319 신명색제도 申明色制度 26 승여사 乘輿司 신무시위사 神武侍衛司 202 69, 258, 259 승육 陞六 324 신문 神門 282 승자총통 勝字銃筒 266 신부 信符 229 승정원 承政院 24, 28, 58, 64, 65, 70, 신분사회 身分社會 14 71, 101, 175 신사 Gentry 346 승지 承旨 332 신역 身役 42, 48 승추부 承樞府 신용개 申用漑 336 58, 63, 71, 249, 250 시 詩 330,340 신제총통 新製銃筒 267 《시경》《詩經》 285, 341 신진관료 新進官僚 37 시관 試官 신진사대부 新進士大夫 302 20, 53, 318, 시권 試券 330 339 시립 侍立 231 신진사류 新進士類 시사 侍史 신호위 神虎衛 199,202 시위군 侍衛軍 210, 211, 217 신향 新鄕 305 시위사 侍衛司 204 신흥무장 新興武將 280 시위패 侍衛牌 6, 7, 201, 202, 207, 209, 신흥사대부 新興士大夫 37,280 214, 217, 235, 236, 248, 352 실안(예겸)제주 實案(例兼)提調 58 시재 試才 330 실직 實職 23, 100, 109, 324 시전 市廛 44 실직인 實職人 99 시정 侍丁 259 실차교관 實差敎官 시정기 時政記 24 실학자 實學者 326 시취 試取 심약 審藥 7, 32 175, 176, 300, 360 시취 액수 試取額數 심정 沈貞 336 287 시학 視學 284 10사 十司 202, 204, 248, 249, 251, 식년 무과 式年武科 334, 349, 353 252 식년 문과 式年文科 349 10위 十衛 6,57,104,200,202,248 식년시 式年試 326, 334, 343, 349, 10위제 十衛制 199, 203 363 10위제도 十衛制度 119,200 식당도기 食堂到記 12도 十二徒 318, 333 313 식리전 殖利錢 12목 十二牧 300 311, 312 12사제도 十二司制度 신공 身貢 3, 54, 289 204 신과거법 新科學法 12사제의 군령체제 十二司制의 軍令體 318 신과전법 新科田法 制 59 131 신구시 新舊試 328, 335 십일조 什一租 310 신・구향 新・舊郷 10학 十學 305 296, 297, 348 신권 臣權 24, 27 쌍전화포 雙箭火砲 신기전 神機箭 269, 270 쌍중 雙中 341 신량역천 身良役賤 52,53,208

[0] 양무 종향분헌관 兩廡從享分獻官 283 아감사 亞監司 양민 良民 175 46, 51 아록전 衙祿田 156 양반 兩班 297, 298, 303~305, 308. 아악 雅樂 362 319, 321, 326, 334, 343, 344, 357, 364 아악서 雅樂署 57, 92, 107, 362 양반가문 兩班家門 298 아헌관 亞獻官 283, 284 양반관료 兩班官僚 37, 38, 47, 325 악공 樂工 양반관료국가 兩班官僚國家 297, 362 악기고 樂器庫 양반관료정치 兩班官僚政治 19 282 악사 樂師 362 양반관료제 兩班官僚制 322, 325 악생 樂生 양반관료제 사회 兩班官僚制社會 297. 362 악생청 樂生廳 282 321 악정 樂正 288 양반관료 체제 兩班官僚體制 20, 35, 악학 樂學 296, 297, 361, 362 317, 326, 347 양반사림 兩班士林 315 악학도감 樂學都監 92 안노생 安魯生 146 양반신분 兩班身分 46 안동부 安東府 169 양반유생 兩班儒生 305 안주군민만호부 安州軍民萬戶府 208 양반 중심의 관료국가 兩班 中心의 官 안집별감 安集別監 136 僚國家 47 안축 安軸 313 양사 兩司 29 양사재 養士齋 안평대군 용 安平大君 瑢 295 311 양성지 梁誠之 안행량 安行梁 276 151 양인 良人 43, 45~47, 51~54, 297, 안향 安珦 280, 283, 290, 304 알성 무과 謁聖武科 351 298, 303, 308, 310, 343, 357 알성시 謁聖試 286, 287, 292, 320, 328, 양인 교생 良人校生 303 331, 342, 344, 360, 351 양인농민 良人農民 7,33,34,52 액내교생 額內校生 309 양(인)신분 良(人)身分 45,51,53 액내생 額內生 299, 309, 365 양좌동 良佐洞 196 액외교생 額外校生 309,310 양천교가 良賤交嫁 53 액정서 掖庭署 57,67,82,107 양현고 養賢庫 68, 85, 281, 282, 290 82 액정원 掖庭院 《양휘산법》 《揚輝算法》 양계 兩界 128 어보 御寶 343 양계 연변의 행정구획 정비 兩界 沿邊 어사화 御史花 328 의 行政區劃 整備 150 어숙권 魚叔權 337 양계지방 兩界地方 138,170 어의 御醫 91 양관제학 兩館提學 333 어장 漁場 293 양광도의 개편 楊廣道의 改編 129 어전 漁箭 293, 312 양도목 兩都目 289 언관 言官 24

업무 業武

357

양로연 養老宴 284,304

양무 兩應

304

### 388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업유 業儒 357	영해 寧海 147
여론정치 輿論政治 315	영흥현 永興縣 148
여제 勵祭 304	예겸직 例兼職 103
	《예기》 《禮記》 285 341
여진어 女眞語 358 여진학 女眞學 50,363	《예기》 《禮記》 285, 341 예문관 藝文館 24, 29, 58, 60, 69, 86,
역 役 34	87, 103
역과 譯科 297, 357, 358, 363	예문관관 藝文館官 59
역관 譯官 359, 367	예문대제학 藝文大提學 284
역마제도 驛馬制度 34	예문춘추관 藝文春秋館 57,58,62,
역법 曆法 16	87, 88
역성혁명 易姓革命 27	예민집단 隷民集團 39
역승 驛丞 300	예빈시 禮賓寺 58, 69, 90
역・의・율생 譯・醫・律生 302	예성제 禮成祭 283
역재 易齋 338	예승석 芮承錫 152
역학 譯學 35, 50, 296, 297, 348, 361	예장도감 禮葬都監 94
역학원 譯學院 359,363	예조 禮曹 28, 67, 68, 292, 295, 317,
역학훈도 譯學訓導 300	321, 326, 337, 341
연경궁 延慶宮 83	예조 속아문 禮曹屬衙門 86
연고 年考 285	예조월강 禮曹月講 285, 287, 292
연방원 聯芳院 362	예조인 禮曹印 364
연복궁 延福宮 85	예차교관 預次敎官 295
연은전 延恩殿 94	예차내금위제 預差內禁衛制 221
연합촌 聯合村 144	예치 禮治 13
염포 鹽浦 359	오 伍 224
영길도 永吉道 129,162 영노비 營奴婢 176	5가작통법 五家作統法 190
	5가작통제 五家作統制 188
영돈녕부사 領敦寧府事 59	5고 7궁 五庫 七宮 38
영리 營吏 126, 153, 155, 156, 176, 178	
영삼군사처 領三軍事處 250, 251	
영안도 永安道 129	오군진무소 五軍鎭撫所 254
영저리 營邸吏 178	5도양계 五道兩界 129
영저리(영주인)제도 營邸吏(營主人)制度	5도양계 체제 五道兩界體制 160
32	5복친 五服親 295
영전사 領殿事 58	5부 五部 68, 85, 291
영조사 營造司 70	5부 학당 五部學堂 291
영직 影職 99,100,109,114	5外 五司 94,204
영진군 營鎭軍 7, 33, 200, 207, 210,	
211, 218, 235, 236, 352	5사제도 五司制度 205
영진군체제 營鎭軍體制 34	오원 五員 231 5위 五衛 6, 21, 32, 33, 69, 74, 94, 95,
영친연 迎親宴 335	5 元 五 年 6, 21, 32, 33, 69, 74, 94, 95,

$104 \sim 106, 213, 217, 225, 254, 260$	외직 外職 171
5의구 五衡軍 997 933	요역 徭役 42
	요물고 料物庫 57
오위도총부 五衛都摠府 21, 32, 59, 69,	
74, 95, 104, 217, 225, 254	용기순위사 龍騎巡衛司 202
5위제도 五衛制度 215	용분사 龍奮司 204
오위진무소 五衛鎭撫所 59,69,74,94,	
214 214 五角製無別 59,09,74,94,	용양위 龍驤衛 32, 74, 94, 95, 215, 232
	우림위 羽林衛 220, 221
5귀세세 五角體制 214, 220, 235 5진법 五陣法 205	구남기 34杯閘 220,221 우방 右坊 362
온혜(계)동 溫惠(溪)洞 196	우위(호분위) 右衛(虎賁衛) 32
용진 甕津 359	운과 雲科 363
와서 瓦署 70,99 와요 瓦窯 99	운산 雲山 149
와요 凡無 99	응무시위사 雄武侍衛司 202
완구 碗口 264	웅천 熊川 359
왕권 王權 24,27	원납교생 願納校生 309
왕도정치 王道政治 1,13,16	원상제 운영 院相制 運營 65
왕도정치사상 王道政治思想 1,13 왕세자석전 王世子釋奠 284	원시 院試 349
왕자의 난 王子의 亂 2,6,203,248	
	《원육전》 《元六田》 358
왜학 倭學 50,363	원자학궁 元子學宮 284, 294
왜학권려조건 倭學勸勵條件 303	
왜학생 倭學生 302 외거노비 外居奴婢 54,290	332, 333, 343~345
외거노비의 신공 外居奴婢의 身貢	
290	
	월경지 越境地 5,127,166~168
외공장 外工匠 43	월경지 정리 越境地 整理 167
외관 外官 289	월경지 정리 越境地 整理 167 월과 月課 302
외관 外官 289 외관구임법 外官久任法 4,125	월경지 정리 越境地 整理 167 월과 月課 302 위 尉 222
외관 外官 289 외관구임법 外官久任法 4,125 외관설치 外官設置 137	월경지 정리 越境地 整理 167 월과 月課 302 위 尉 222 위병 衛兵 220
외관 外官 289 외관구임법 外官久任法 4,125 외관설치 外官設置 137 외관의 품계와 임용 기준 外官의 品階	월경지 정리 越境地 整理 167 월과 月課 302 위 尉 222 위병 衛兵 220
외관 外官 289 외관구임법 外官久任法 4,125 외관설치 外官設置 137 외관의 품계와 임용 기준 外官의 品階 와 任用 基準 136	월경지 정리 越境地 整理 167 월과 月課 302 위 尉 222 위병 衛兵 220 위생국 衛生局 363 위안제 慰安祭 283,304
외관 外官 289 외관구임법 外官久任法 4,125 외관설치 外官設置 137 외관의 품계와 임용 기준 外官의 品階 와 任用 基準 136 외방도시 外方都試 352	월경지 정리 越境地 整理 167 월과 月課 302 위 尉 222 위병 衛兵 220 위생국 衛生局 363 위안제 慰安祭 283,304 위원 渭原 359
외관 外官 289 외관구임법 外官久任法 4,125 외관설치 外官設置 137 외관의 품계와 임용 기준 外官의 品階 와 任用 基準 136 외방도시 外方都試 352	월경지 정리 越境地 整理 167 월과 月課 302 위 尉 222 위병 衛兵 220 위생국 衛生局 363 위안제 慰安祭 283,304
외관 外官 289 외관구임법 外官久任法 4,125 외관설치 外官設置 137 외관의 품계와 임용 기준 外官의 品階 와 任用 基準 136 외방도시 外方都試 352 외방별과 外方別科 351 외방별시 外方別試 320,329,330,350	월경지 정리 越境地 整理 167 월과 月課 302 위 尉 222 위병 衛兵 220 위생국 衛生局 363 위안제 慰安祭 283,304 위원 渭原 359 위장 衛將 222,227
외관 外官 289 외관구임법 外官久任法 4,125 외관설치 外官設置 137 외관의 품계와 임용 기준 外官의 品階 와 任用 基準 136 외방도시 外方都試 352 외방별과 外方別科 351 외방별시 外方別試 320,329,330,350 외사 外舍 291	월경지 정리 越境地 整理 167 월과 月課 302 위 尉 222 위병 衛兵 220 위생국 衛生局 363 위안제 慰安祭 283,304 위원 渭原 359 위장 衛將 222,227 위장소 衛將所 225
외관 外官 289 외관구임법 外官久任法 4,125 외관설치 外官設置 137 외관의 품계와 임용 기준 外官의 品階 와 任用 基準 136 외방도시 外方都試 352 외방별과 外方別科 351 외방별시 外方別試 320,329,330,350	월경지 정리 越境地 整理 167 월과 月課 302 위 尉 222 위병 衛兵 220 위생국 衛生局 363 위안제 慰安祭 283,304 위원 渭原 359 위장 衛將 222,227
외관 外官 289 외관구임법 外官久任法 4,125 외관설치 外官設置 137 외관의 품계와 임용 기준 外官의 品階 와 任用 基準 136 외방도시 外方都試 352 외방별과 外方別科 351 외방별시 外方別試 320,329,330,350 외사 外舍 291 외아전 外衙前 178 외역전 外役田 156	월경지 정리 越境地 整理 167 월과 月課 302 위 尉 222 위병 衛兵 220 위생국 衛生局 363 위안제 慰安祭 283,304 위원 潤原 359 위장 衛將 222,227 위장소 衛將所 225 위판 位版 284 위화도회군 威化島回軍 128 유가 遊街 335
외관 外官 289 외관구임법 外官久任法 4,125 외관설치 外官設置 137 외관의 품계와 임용 기준 外官의 品階 와 任用 基準 136 외방도시 外方都試 352 외방별과 外方別科 351 외방별시 外方別試 320,329,330,350 외사 外舍 291 외아전 外衙前 178	월경지 정리 越境地 整理 167 월과 月課 302 위 尉 222 위병 衛兵 220 위생국 衛生局 363 위안제 慰安祭 283,304 위원 潤原 359 위장 衛將 222,227 위장소 衛將所 225 위판 位版 284 위화도회군 威化島回軍 128 유가 遊街 335

유교 儒教 301,315 유향품관 留鄕品官 5,24~26,153 유교적 민본사상 儒教的 民本思想 1, 유회 儒會 305 유후사 留後司 129,100 유희춘 柳希春 유교정치 儒敎政治 1~3,13,305 187 유기 鍮器 312 6경 六經 280 6두품 六頭品 유득공 柳得恭 50 298 《유문》 《柳文》 302 6방 六房 31 유방 留防 243 6방체제 六房體制 183 유방군 留防軍 242,243 육수군 陸守軍 205, 207, 336, 248 유방병 留防兵 육아일 六衙日 354 189 유방정병 留防正兵 7,236 육의전 六矣廛 44 육일각 六一閣 유방체제 留防體制 224 282 유생과시 儒生課試 《육전조례》 《六典條例》 286 유생상순윤차 儒生上旬輪次 6圣 六曹 21,57,58,60,64~66,71, 유성룡 柳成龍 247 101, 110, 284 유수부 留守府 161 육조권 六曹權 250 유연 柳衍 280 6조 속사 六曹屬司 58 유영체제 留營體制 177 6조 속아문 六曹屬衙門 80,101 유외직 流外職 116 6조의 서무 분장 六曹의 庶務分掌 6월 도목 六月 都目 289 67 6월 도회 六月 都會 302 6조직계제 六曹直啓制 2, 22, 28, 60 6진 六鎭 346 유일 遺逸 9.322 유일거사 遺逸居士 26 윤원형 尹元衡 337 유임 儒任 율 律 357 307 유자광 柳子先 50 율곡 粟谷→이이 李珥 유적 兪迪 율과 律科 357,363 280 312 유전 儒錢 율과시취 律科試取 360 유청군관 有廳軍官 356 율생도 律生徒 365 유탄 油炭 율학 律學 35, 50, 296, 297, 348, 360 유토전 有土田 310 율학교육 律學敎育 360 유품 流品 율학청 律學廳 360 99 유품외 流品外 99,107 은사 恩賜 328 유학 幼學 은일 隱逸 284, 296, 297, 302, 307, 321, 322 345 은진 思津 148 유학교수관 儒學敎授官 305, 306 을과 乙科 327, 328, 350 《유합》 《類合》 316 을묘사변 乙卯事變 354 유향소 留鄕所 4,5,22,25,26,31,125 을모왜란 乙卯倭亂 245 《을사대전》 《乙巳大典》  $\sim$ 127, 153  $\sim$  155, 178, 183  $\sim$  189, 193, 304, 58, 337 337 음관 蔭官 345, 346 유향소 복립운동 留鄕所 復立運動 14 음사 淫祀 179, 189

음사 蔭仕 345 의학 醫學 296, 297, 299, 348, 361, 363 음서 蔭敍 20, 35, 48, 319, 325 의학교수 醫學敎授 300 음서제도 蔭敍制度 9,325 의학교육 醫學敎育 300 음양 陰陽 의학박사 醫學博士 35 300 음양과 陰陽科 297, 357, 361, 363 의학시취 醫學試取 360 음양학 陰陽學 296, 297, 361 의학원 醫學院 360 의흥부 義興府 음자제 蔭子弟 367 69, 74, 251 의흥삼군부 義興三軍府 직지 蔭職 322 6, 32, 58, 60, 읍리 邑吏 63, 70, 71, 74, 202, 248, 253, 255, 348 126, 153, 155, 156 읍리전 邑吏田 139 의흥시위사 義興侍衛司 202 읍리전의 혁파 邑吏田의 革罷 156 의흥위 義興衛 32,74,94,95,215,232 유사 邑司 177, 178 의흥친군우위 義興親軍右衛 199,202 읍사례 邑事例 의흥친군위 義興親軍衛 6,7,104,200, 177 읍안군 邑案軍 311 201 읍치 邑治 의흥친군좌위 義興親軍左衛 138, 179 199, 202 응양위 鷹揚衛 이 理 15 199, 202 이과 吏科 응제 應製 297, 347, 357, 358 286, 287 의건부진무소 義建府鎭撫所 252 이과시험 吏科試驗 26 의과 醫科 357, 363 2군 6위 二軍 六衛 199 이기이원론 理氣二元論 17 의금부 義禁府 29, 60, 75, 101 의랑 議郎 58 이기이원적 일원론 理氣二元的 一元論 의복 醫卜 357 15 이기일원론 理氣一元論 의빈계 儀賓階 114, 117, 118, 121 18 의빈부 儀賓府 이기호발설 理氣互發說 59, 60, 78 17 의성고 義成庫 이덕무 李德懋 82 50 의순고 義順庫 이모작 二毛作 90 40, 41 의 • 역 • 악 3학 생도 醫・譯・樂 三 이문 吏文 337, 367 學生徒 299 이문과 吏文科 358 의영고 義盈庫 68, 85 이문교육 吏文敎育 358 의용순금사 義勇巡禁司 75,204 이방원 李芳遠 32,50,65,348 의용위 義勇衛 이사 里社 252 189 의용위진무소 義勇衛鎭撫所 이산 理山 252 359 의원 醫院 300 이색 李穡 280, 288, 347 이석형 李石亨 의장위 儀仗衛 220 341 의정부 議政府 21, 58, 60, 63, 65, 66, 이성계 李成桂 38, 50 71, 72, 77, 101, 110, 284, 337 이숭인 李崇仁 280 의정부서사제 議政府署事制 2,28,60 이습관 肄習官 367 의정부・6조체제 議政府・六曹體制 2, 이시애 李施愛 187 59 이앙법 移秧法 40 이언 伊彦 의창곡 義倉穀 272, 274 139

이원취재 吏員取才 358 이원 \* 프 이언적 李彦迪 17,583 이이 李珥 17, 18, 50, 194, 283, 341 이장군포 二將軍砲 262 이정 里正 143,145 이정구 李廷龜 281 2정 1보 二丁 一保 213 이조 吏曹 28, 67 이조 속아문 東曹屬衛門 80 이준경 李浚慶 288,337 이직 吏職 9,322 이진 李瑱 280 이총통 二銃筒 267 이환안제 移還安祭 283 이황 李滉 17, 18, 193, 283 익군 翼軍 33,208~210 익군체제 翼軍體制 209 인경(정) 人定 228 인구 人口 164 인리안 人吏案 157 인리위전 人吏位田 156 인보정장법 隣保正長法 190 인소전 仁昭殿 94 인수부 仁壽府 58, 59 인일제 人日製 331 인품평정 人品評定 324 일강 日講 299, 302 1관 1직의 원칙 一官 一職의 原則 130 일발다전법 一發多箭法 264, 265 일양재 一兩齋 282 일전일주의훤칙 一田一主의 原則 39 잠 箴 331 일직교생 日直校生 309 일총통 一銃筒 267 임내 任內 4, 25, 137, 166, 167 임내리 任內吏 152 임내 분포 任內 分布 138 임내의 소멸 任內의 消滅 125 임내의 정비 任內의 整備 139,145, 165

임내의 주읍화 任內의 主邑化 137 임내의 직촌화 任內의 直村化 127, 145, 164 임내의 폐합과 이속 任內의 廢合과 移 屬 167 임내 혁파 任內 革罷 140 임영대군 구 應瀛大君 璆 295 임진왜란 壬辰倭亂 354 입강창가 入江倉價 272 입거향리 入居鄕吏 157 입격 入格 343 입경창가 入京倉價 272 입관보리법 入官補吏法 347 입방 入防 355 입사 入仕 35 입사자격 入仕資格 입직 入直 226 입진성 入鎭姓 154

#### [天]

자궁 資窮 335 자대 自代 307 자목 柴木 312 자사 子思 283 자연촌 自然村 143~145 자영농민 自營農民 62 자학 字學 297,348 작대 作隊 357 작헌래 酌獻禮 287 잔구포 盞口砲 264 잡과 雜科 9, 35, 36, 324, 326, 347, 357, 358, 363, 364, 366, 368 잡과 급제자 초자표 雜科及第者超資表 324 잡과 방목 雜科榜目 368 잡과 초시・복시 정액표 雜科初試・覆 試定額表 363 잡단 雜端 58

전객사 典客司 잡류 雜類 107 69 잡류직 雜類職 99 전곡 典穀 307 잡색군 雜色軍 207, 243 전구서 典廐署 93 전내 동서종향분헌관 殿內東西從享分獻 잡업 雜業 347, 361 잡직 雜職 107, 108, 113, 120, 121 官 283 전농시 典農寺 잡직계 雜職階 107, 118, 121 83, 90, 310 잡직 체아직 雜職遞兒職 108 전라좌・우수영 全羅左・右水營 359 잡학 雜學  $279.297 \sim 299$ 전력부위 展力副尉 224 잡학 교관 雜學敎官 전부 典簿 288 300 잡학 교육 雜學敎育 전사청 典祀廳 297, 298 281, 282, 301 잡학생 雜學生 299 전생서 典牲署 69.93 잡학생도 雜學生徒 297, 298, 364~ 전설 典設 260 전설사 典設司 69, 96, 112 368 잡학훈도 雜學訓導 300 전시 殿試  $36,328,331,335,349 \sim 351$ 장 莊 138, 141, 142 전시과체제 田柴科體制 19 장군 將軍 222 전시법 殿試法 338 전악서 典樂署 장군화통 將軍火筒 267 57, 92, 107, 362 장금사 掌禁司 70 전연사 典涓司 70, 98 장령 掌令 전옥서 典獄署 70,97 58 전운색 轉運色 장례사 掌隸司 70 84 장례원 掌隷院 70, 97, 103 전위(충좌위) 前衛(忠佐衛) 장루서 掌漏署 361 전의감 典醫監 69, 91, 112, 360, 363 장번직 長番職 107 전의사 典醫司 363 전의시 典醫寺 장악서 掌樂署 92 360 장악원 掌樂院 69, 92, 362 전임 典任 307 장용대 壯勇隊 112 전조 銓曹 21 장용위 壯勇衛  $110, 213, 216 \sim 218$ 전중시 殿中寺 80 장원 壯元 36, 287, 327, 338 전최 殿最 289 장원서 掌苑署 70.98 전패 殿牌 179 장의 掌議 287, 307 전폐 箭幣 장흥고 長興庫 68, 85 전함관 前街官 49 재내제군부 在內諸君府 전함사 典艦司 68,84 77,88 재신 幸臣 2,58 전함품관 前銜品官 재임 齋任 307 전향사 典享司 68 재지사족 在地士族 32, 182, 186, 187, 전호 佃戶 52 189, 192 전훈 典訓 289, 296 재향품관 在鄉品官 절간구색 折簡求索 31 182 저화 楮貨 44, 54 절도사 節度使 216, 237 전강 殿講 286, 292, 327, 328, 333, 334, 절(일)제 節(日)製 286, 287, 328, 331, 342 332, 334, 342

### 394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절제사 節制使 33, 58, 63, 203, 207, 제용감 濟用監 68,83 247 제용고 濟用庫 83 절충장군 折衝將軍 224 제익 諸翼 234 제자백가서 諸子百家書 점촌 店村 312 302 정 正 222 제주 提調 21,363 정과 丁科 328 제주수 提調數 58 정광필 鄭光弼 336 제주제 提調制 정군 正軍 212, 飴5, 236 제진 諸鎭 8,33,34 정남 丁男 34,42 제포 薺浦 359 정년 丁年 334 제학 諸學 297 정도전 鄭道傳 2,6,13,16,27,50,63, 조 詔 331 139, 202, 247, 280, 339 조 粗 285.333 정랑 正郎 67 조관 朝官 351 정로위 定虜衛 221 조광조 趙光祖 17, 283, 336, 362 정록청 正錄廳 조군 漕軍 213 281, 282 정몽주 鄭夢周 280, 283, 288 조방 朝房 232 정병 正兵 7, 33, 34, 207, 214, 216, 217, 조방장 助防將 245, 246 219, 236, 243, 244, 318 조선 漕船 276 정승 政丞 63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202 정시 庭試 320, 328, 330, 331, 334, 342, 〈조선부〉 〈朝鮮賦〉 298 344, 351 조선통보 朝鮮通寶 44 정안군 靖安君→이방원 李芳遠 조운 漕運 276 조졸 漕卒 276 정여창 鄭汝昌 283 정이 程頤 304 조준 趙浚 2,63,128 정인지 鄭麟趾 139 조지서 造紙署 70,99 정조 政曹 175 조지소 造紙所 99 정직 正職 23, 48, 99~101, 109, 111 조찬 助饌 290 정품 正品 103,324 조헌 趙憲 50, 283, 337 정학 正學 1,13 족 族 224 정호 程顥 304 족벌 族閥 339 제거사 提擧司 98 족친위 族親衛 112, 213, 216, 217, 219, 제기고 祭器庫 282 227 존경각 尊經閣 제방납미량 除防納米量 355 281 제생원 濟生院 91,360 졸 卒 224 제술업(시험) 製述業(試驗) 285~287, 종 53 302, 333, 340, 347 종계 宗契 316 제승방략 制勝方略 245,246 종계무변 宗系誣辨 329 제역 除役 309 종묘서 宗廟署 69, 93 제역촌 除役村 305,311,312 종부시 宗簿寺 67, 80 제왕자부 諸王子府 294 종자곡 種子穀 276

주창 州倉 종장 宗長 288, 340, 341 272 종직 終職 345 주포 廚庖 282 종친 宗親 5, 296 주현 主縣 22, 24, 141 종친계 宗親階 114, 117, 121 주현의 병합 州縣의 倂合 149 종친부 宗親府 59,60,77,81 주희 朱熹 283, 304 종친불임이사 宗親不任以事 294 죽전 竹田 312 종품 從品 103,324 중군군후소 中軍軍候所 257 종학 宗學 69, 89, 279, 289, 294~296 중랑장 中郎將 222 종학교수관 宗學敎授官 295, 296 중부학당 中部學堂 291 총학박사 宗學博士 296 중사 中使 333 종학식략 宗學式略 294, 295 중소 中所 226 종헌관 終獻官 283, 284 중승 中永 58 좌랑 佐郎 중시 重試 325, 334, 335, 350 67 좌방 左坊 362 중앙 각사 中央各司 3 좌수 座首 중앙군 中央軍 6,7,32,33 31, 179 좌・우간의대부 左・右諫議大夫 51 중앙집권적 양반지배체재 中央集權的 좌・우산기상시 左・右散騎常侍 58 兩班支配體制 125, 좌우위 左右衛 199, 202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 中央集權的 좌위(용양위) 左衛(龍驤衛) 32 地方統治體制 126 중액 中額 308 《좌전》 《左傳》 285, 292 좌주문생 座主門生 318 《중용》 《中庸》 285, ,341 좌주문생제 座主門生制 317.321.339. 중위(의흥위) 中衛(義興衛) 349 중익 中翼 211 좌주 祭酒 288, 293 중익(병마)절제사 中翼(兵馬)節制使 죄인속공노비 罪人屬公奴婢 293 234, 235 주관 3공 周官 三公 65 중인 中人 23, 35, 36, 46, 47, 298, 299, 326, 357 주기론 主氣論 18 주돈이 周敦頤 304 중인층 中人層 48,49,50 중추부 中樞府 59,63,73,104,107, 주련대 駐蕃臺 282 《주례》 《周禮》 1,13,37 337 주부 主簿 293, 295 중추원 中樞院  $57 \sim 62, 70, 73, 246,$ 주세붕 周世鵬 315 249, 252, 357 285, 341 《주역》《周易》 즉위교서 卽位敎書 317, 339, 347 주읍 主邑 166 즉일방방 卽日放榜 287 주자가례 朱子家禮 292 증광별시 增廣別試 334, , 335 주자 성리학 朱子性理學 17 증광시 增廣試 320, 3281342, 350, 363 주자소 鑄字所 292 증광전시 增廣殿試 831,332 주자학 朱子學 280, 304, 315, 317, 318, 증석 曾哲 283 339 증손여씨향약 增損呂氏鄉約 194 주진 主鎭 8,33,236 지리엄 地理業 357

지리학 地理學 363 지방군 地方軍 6,33 지방역학원 地方譯學院 300 지방의 地方醫 365 지방장관 地方長官 30 지배신분 支配身分 46,47,49 지역촌 地域村 143,144 지의 地衣 290 지장위전 紙匠位田 156 지주-전호제 地主-佃戶制 14,37 집사교생 執事校生 305,309 지평 持平 58 지・현자포 地・玄字砲 264 직강 直講  $288, 289, 294 \sim 296$ 직계아문 直啓衙門 60,65,101 직부 直赴 286, 333, 351 직부생 直赴生 328,334 직부 회시생 直赴 回試生 334 직숙소 直宿所 232 직역 職役 48 직전 職田 298 직전법 職田法 39 직촌 直村 143, 144, 165, 167 직촌화 直村化 4 직학 直學 288 진 鎭 33,206 진관체제 鎭管體制 6, 8, 33, 34, 130, 213,  $233 \sim 236, 244$ 진군 鎭軍 206 진대곡 賑貸穀 276 진덕박사 進德博士 288 진무 鎭撫 251 진무소 鎭撫所 248, 252 진법체제 陣法體制 220 진봉리 進捧吏 155 진사 進士 35, 36, 284, 306, 307, 318~ 321, 341, 343, 345~347, 367 진사과(시) 進士科(試) 35,317,319,  $321,339 \sim 341$ 진산 鎭山 179 진유 眞儒 336

진의 혁파 鎭의 革罷 139 진주 晋州 169 진천뢰 震天雷 264 진평(수양)대군 유 晋平(首陽)大君 瑈 295 진현시 進賢試 38, 335, 350, 351 질려포 蒺藜砲 264 질(려)포통 蒺(藜)砲筒 집강 執綱 307 집의 執義 58 집현전 集賢殿 2,58~60.63 집현전관 集賢殿官 289 집현전 녹관 集賢殿 祿官 296

#### [ㅊ]

차장고 遮帳庫 282 찰방 察訪 173,300 참내 參內→참상(관) 參上(官) 참상(관) 參上(官) 4, 21, 36, 135, 335 참시관 參試官 351 참외(관) 參外(官)→참하(관) 參下 (官) 참외 문관 參外文官 306 참판 參判 58 참하(관) 參下(官) 4,21,33,289,319, 325 창고전 倉庫田 38 창방의 唱榜儀 334 창부 倉部 361 창사 倉史 158 창성 昌城 359 창원 昌原 149 창정 倉正 156, 157 창주 倡註 280 채전 菜田 293 채전 彩典 362 책(문) 策(問) 330, 331, 340

처 處 138, 141, 142

초제 醮祭 19,93 처치사 處置使 207 척간패 擲奸牌 226, 227 초직 超職 9,322 적신정치 戚臣政治 14,17 총제 摠制 249 천구 賤口 53 천명 天命 15 《총통등록》 《銃筒謄錄》 265~267 천문학 天文學 299, 363, 367 총통완구 銃筒碗口 267 천민 賤民 47,54 총통위 銃筒衛 205, 215, 266 천(민)신분 賤(民)身分 45,51,63 최무선 崔茂宣 262,263 최충 崔沖 293 천서 賤庶 314 최치원 崔致遠 283,304 천역 부담자 賤役 負擔者 53,53 천예 賤隷 53 최해산 崔海山 263, 364 천우위 千牛衛 199,205 《추관지》 《秋官志》 360 천인 賤人 45, 46, 297 추도기 秋到記 333 철신포 鐵信砲 207 춘당대시 春塘臺試 292, 320, 328, 331, 첨설 添設 99 335, 342 첨절제사 <br/>
<br/> 춘시 春試 328 236, 237 첨총제 僉摠制 58, 249 《춘추》 《春秋》 285,341 첩고 善鼓 231 춘추관 春秋館 24,68,60,69,87,88 첩종 疊鐘 232 춘추년고 春秋年考 285 청금록 靑衿錄 304, 305, 307~310. 춘추중월부시 春秋仲月賦詩 336 출신 出身 343 346 청남 淸南 330 출육 出六 324 청로대 淸路隊 221 출입번장 出入番將 227 충량과(시) 忠良科(試) 328, 331, 청북 淸北 330 청요직 淸要職 120 335 충무순금사 忠武巡禁司 204 청주 淸州 129, 134, 300 충무위 忠武衛 32, 74, 95, 215, 216, 체아록 遞兒祿 221 체아직 遞兒職 23,68,100,101,104,107, 232 109, 111, 214, 298, 323, 366 충순위 忠順衛 213, 215~217, 219, 체임 遞任 304 227, 319, 357 《초사》 《楚辭》 302 충순호위사 忠順扈衛司 262 초시 初試 36, 327, 331, 349, 351, 363 충용사위 忠勇四衛 201 초입사로 初入仕路 9,322 충용위 忠勇衛 220 초입사자 初入仕者 48 충의위 忠義衛 49, 112, 213, 215, 216, 초자 超資 9,322 217, 219, 227, 319 초장 初場 340, 341 충익부 忠翊府 67,81 초장 강경 初場講經 317 충익사 忠翊司 81

충장위 忠壯衛 태평소 太平簫 112 357 충좌시위사 忠佐侍衛司 202 태학 太學 279, 319 충좌위 忠佐衛 32, 74, 95, 215, 216, 《태학지》《太學志》 287 232 토관 土官 154, 184 충찬위 忠贊衛 112, 213, 215, 217, 227, 토병 土兵 157 319 토성 土姓 183 충철위 衝鐵衛 221 토성사족 土姓士族 5, 152, 153 충호위 忠扈衛 96, 262 토성이민 土姓吏民 5, 127 충훈부(사) 忠勳府(司) 60,78 토성품관 土姓品官 186 취라치 吹螺赤 토역과 討逆科 106, 112, 257 331 취재 取才 26, 345, 349 토호 土豪 301 치인지학 治人之學 17 통通 285, 333 친군위 親軍衛 112, 213, 217, 218 《통감》 《通監》 285, 292, 302 친림과 親臨科 330 통독 通讀 286, 328, 333, 334, 342 친림석전 親臨釋奠 283 통례문(원) 通禮門(院) 58, 69, 89, 친시 親試 292, 335 103 통문관 通文館 칠석제 七夕製 331 359 7시관 七試官 통소기 通宵旗 335 229 70제자 七十弟子 280 통정대부 좌・우사간 通政大夫 左・右 7재 七齋 319 司諫 58 7통 2략자 七通二略者 337 통제영 統制營 359 통주 統主 취장고 沈藏庫 85 143 칭척칭간자 稱尺稱干者 52, 53 통진계전 通進啓箋 통치이데올로기 統治理念 [≡] 통행첩 발급 通行帖發給 355 퇴계 退溪→이황 李滉 투호례 投壺禮 304

타사노비 他司奴婢 290 타위 打圍 231 탁영시 擢英試 328, 335 탐화(랑) 探花(郎) 326 탕평과 蕩平科 331 탕평비 蕩平碑 282 태복감 太卜監 361 태봉 泰封 359 태사국 太史局 361 태의감 太醫監 360 태일산 太一算 348 태일전 太一殿 93 태종 17년 과거법 太宗 十七年 科學法 318

#### [ㅎ]

365

투화인 投化人

파방 罷榜 336, 338 파수군 把守軍 231 파적위 破敵衛  $110, 213, 216 \sim 218$ 판관 判官 30, 175 판병조사 判兵曹事 258 판사 判事 247 판사제 判事制 68 판서 判書 58 판적사 版籍司 68

8도 八道 30, 161 8도체제 八道體制 4,125,126,128, 129, 132, 135, 160, 170, 176 8위 八衛 200 팔전총통 八箭銃筒 267 팔조호구법 八祖戶口法 184 팽배 彭排 112, 213, 216, 217, 219 평민 平民 51, 321 평시서 平市署 68,84,85 폐문 閉門 230 폐현의 분포 廢縣의 分布 138 포진 鋪陳 290 품계 品階 20, 324 풍저창 豊儲倉 57,68,84,290 풍패향 豊沛鄕 184 풍해도 豊海道 129 풍헌 風憲 309 피지배신분 被支配身分 46,47

#### [8]

하론 河論 357 하액 下額 308 하재 下齋 282, 344 하회동 河回洞 196 학계 學契 316 학관 學官 287, 289 학관순제 學官旬製 285 학관일강 學官日講 285, 287, 293 학교사목 學校事目 316 학교제도 學校制度 9, 318, 321 학당 學堂  $9,290 \sim 293,321$ 학당노비 學堂奴婢 293 학령 學令 302 학록 學錄 288 학벌 學閥 339 학사 學舍 303 학생 學生 299, 367 학유 學諭 학장 學長 306, 307

학전 學田 38, 289, 293, 310, 311 학정 學正 281, 288 한관 閑官 302 《한문》《韓文》 302 한량 閑良 52, 351, 352 한량관 閑良官 22,38,305 한량관리 閑良官吏 210 한량품관 閑良品官 26 한리과 漢吏科 337 한성부 漢城府  $29, 59, 60, 72, 75 \sim 77,$ 86, 101, 160, 169, 178, 327, 337 한성시 漢城試 284, 327, 341 한양부 漢陽府 75, 86 한양천도 漢陽遷都 129,130 한어과 漢語科 363 한어도감 漢語都監 359 한옹 韓雍 139 한직 寒職 306 한품서용 限品敍用 23, 48 한학 漢學 50, 299, 363, 367 한학교수 漢學敎授 함흥 咸興 306, 359 합제 合製 342 합좌기관 合坐機關 해미 海美 149 해운판관 海運判官 176 해주 海州 129, 168, 174, 239, 359 해평현향교기문 海平縣鄉校記文 139 행대감찰 行臺監察 173 행수법(제도) 行守法(制度) 21, 171 행수직 行守職 120 행순 行巡 227 행영체제 行營體制 177 행재소 行在所 329 행정촌 行政村 144 행직 行職 120 행학 幸學 284 향 香 290 향 郷 138,141~143

향관 鄕貫 152

향관청 享官廳 282 향음주례 鄕飮酒禮 304 향교 鄕校 9, 34, 35, 52, 139, 279, 292, 향임 鄕任 309 296, 300~312, 316, 321, 344, 347, 348 향전 鄕戰 305 향교 교관 鄕校敎官 304, 305, 307 향청 香廳 282 향교 교도 鄕校敎導 향청 鄕廳 305 31, 188 향교 교육 鄕校敎育 301, 307 향청의 임원 鄕廳의 任員 179 향교노비 鄕校奴婢 311, 312 향촌공동체 鄕村共同體 195 향교노비신공 鄕校奴婢身貢 310 향촌사회 鄕村社會 190,314,315 향교생도 鄕校生徒 향촌 재지세력 鄕村在地勢力 301, 303 향교위전 鄕校位田 향촌 지배세력 鄕村支配勢力 156 14 향교재정 鄕校財政 312 향통사 鄕通事 359 향교전 鄕校田 310.312 향헌 鄕憲 194 향교제향 鄕校祭享 향호 鄕戶 304 154 향권 鄕權 305 허직 虛職 99, 100, 109 헌 軒 313 향규 鄕規 191, 192, 193 향내 鄕內 192 헌관 獻官 283, 984 향도 香徒 189, 195 헌납간쟁 獻納諫諍 향도회 香徒會 195 헌부 憲府 25 향리 鄕吏 혁거사찰노비 革去寺刹奴婢 293  $47, 124, 137, 145, 151 \sim 158,$ 182, 183, 192, 299, 365 현감 縣監 137 향리 복식 鄕吏 服飾  $150 \sim 158$ 현관 顯官 48, 51, 289, 299 향리안 鄕吏案 155 현관 腎關 279 향리의 면역・종사 郷吏의 免役・從仕 현량과(시) 賢良科(試) 14, 328, 335 현물녹봉제 現物祿俸制 39 향리의 직제개편 鄕吏의 職制改編 138, 139, 165 현사 縣司 현직자 顯職者 156 37, 39 향리 입사로의 제한 鄕吏 入仕路의 制 형이상의 리 形而上의 理 14 限 156 형이하의 기 形而下의 氣 14 향망 鄕望 188, 191 형조 刑曹 28, 60, 67, 70, 72, 75, 360 향반 鄕班 182 형조 속아문 刑曹屬衙門 향사당 鄕射堂 187, 192, 193 혜민고국 惠民庫局 360 향사례 鄕射禮 304 혜민서(국) 惠民署(局) 69, 91, 360 향선생 鄕先生 313 호군 護軍 222, 228 향・소・부곡 郷・所・部曲 141~ 호군청 護軍廳 226 143 호・보제도 戸・保制度 214 향시 鄕試 35, 384, 327, 341, 349, 363 호분순위사 虎賁巡衛司 202 향실 香室 호분위 虎賁衛 281 32, 74, 95, 315, 216, 향안 鄕案  $191 \sim 193, 304, 309$ 232 향약 鄕約 31, 34, 156, 191, 194, 195 호수 戶首 211, 212 향약의 조직 鄕約의 組織 14 호아사 虎牙司

호역 戶役 환안제 還安祭 302 304 호용순위사 虎勇巡衛司 202 환자곡 還上穀 272, 274 호익순위사 虎翼巡衛司 202 활인서(원) 活人署(院) 69,91 호장 戶長 황감시 黃柑試 292, 320, 342, 344 156, 157 호정 戶正 황감제 黃柑製 328, 332, 334 158 황주 黃州 호조 戶曹 28, 67, 68, 290 129, 168, 243, 360 호조 속아문 戶曹屬衛門 82 황현 黃玹 341 호패법 號牌法 150, 213 회강 會講 329, 331 홀치 忽赤 회계사 會計司 68 200 홍건적 紅巾賊 313 회사 繪史 2財 홍무례제 洪武禮制 283 회시 會試 327 홍문관 弘文館 24, 29, 60, 69, 72, 86, 회양 淮陽 147 103, 325, 337 《효경》 《孝經》 292, 301 홍패 紅牌 328,364 효령대군 孝寧大君 193 화령부 和寧府 148 후위(충무위) 後衛(忠武衛) 화리 花利 310 훈구파 勳舊派 14,125 훈도 訓導 149, 293, 300, 307 화약감조청 火藥監造廳 263 화약장 火藥匠 263 훈도관 訓導官 292,306 화엄사상 華嚴思想 18 훈련관 訓鍊騶 57, 97, 256~258, 347 화차 火車 264, 269 훈련원 訓鍊院 69, 97, 104, 112, 262, 화초 火韒 265 325, 349, 356 화통군 火焔軍 263 《훈민정음》 《訓民正音》 358 화통도감 火桶都監 262,263 훈석 訓釋 285 화포 火砲 훈신세력 勳臣勢力 3 264 화포방사군 火砲放射軍 265 휼양전 恤養田 38, 39 화포전 火砲箭 265 홍신궁 興新宮 85 화학 畵學 296, 297, 361, 362 흥위위 興威衛 199

# 집 필 자

개	[o	존	회
	I.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1.	정치사상의 기반이	존	희
2.	통치구조이	존	회
3.	경제구조이	존	호
	사회신분구조 ·····이		
	Ⅱ. 중앙 정치구조		
1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한	츳	회
	관직과 관계한		
۵.		O	-
	Ⅲ. 지방 통치체제		
1.	지방 통치체제의 특징이	수	건
2.	8도체제의 확립이	수	건
3.	군현제의 정비이	수	건
	행정구역과 행정체계이		
	지방자치적 기구이		
		•	
	Ⅳ. 군사조직		
1.	초기 군사제도의 정비	문	섭
	5위체제의 확립과 중앙군제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		
	군령·군정기관의 정비 ···································		
	군비의 확충		
٥.		-	П

## V.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1.	관	학이	성	무
2.	사	하-	성	무
3.	과거	제의 정비와 운영이	성	무
4.	과거	의 종류이	성	무

# 한 국 사

23

##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1994년 9월 5일 인쇄 정부간행물심의필
1994년 9월 10일 발행 (No. 93-14-7-7)
발 행 국 사 편 찬 위 원 회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6
인 쇄 탐 구 당 문 화 사
서울 용산구 서계동 260-1
전화 730-8670